

2024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지표 및 정의서

2023. 12.

보건복지부 ·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목 차

제1장.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개요	3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의 법적 근거	4
2. 평가 목적 및 활용	4
3. 평가 대상	5
제2장.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방법	6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방법	7
2. 기초푸드뱅크·마켓 지역별 분류	9
제3장. 운영주체별 평가지표 및 정의서	11
1. 운영주체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총괄요약표	13
2. 기초푸드뱅크·마켓 평가지표 및 정의서	14
2.1 기초푸드뱅크·마켓 - 평가현황표	14
2.2 기초푸드뱅크·마켓 - 평가지표	15
2.3 기초푸드뱅크·마켓 - 지표 정의서	17
3.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지표 및 정의서	51
3.1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 평가현황표	51
3.2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 평가지표	52
3.3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 지표 정의서	54
4.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지표	84
4.1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 평가현황표	84
4.2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 평가지표	85
4.3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 지표 정의서	87

제1장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개요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의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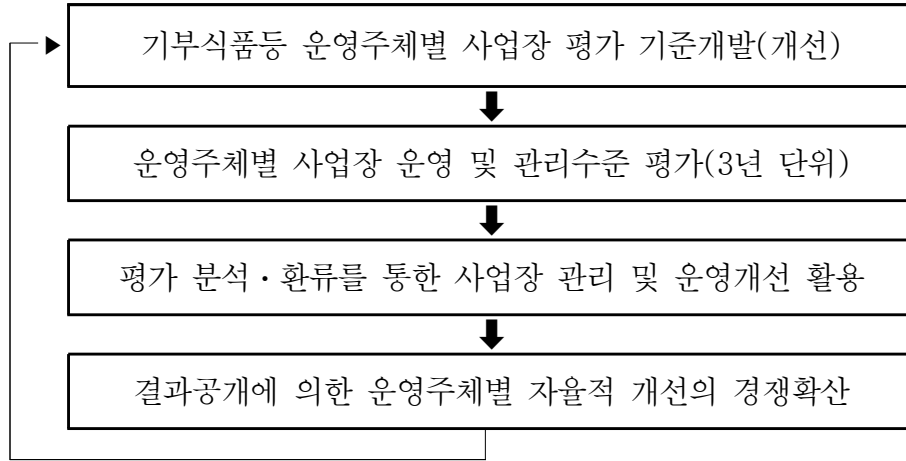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의 운영·관리 평가는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에 의거 시행됨

<표-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의 법적 근거

구분	법령 내용
법률 제 9 조 2 (사업장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등의 기부활성화와 안전성을 제고를 위하여 제3조 신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시설·장비·인력 등의 안전관리 수준과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확보 수준 등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사업장 평가 기준, 평가방법 등 필요사항은 대통령령 정함('16.2)
시행령 7 조 3 (사업장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 2 제1항 의거 사업장을 3년마다 평가를 실시 ② 제1항의 사업장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복지부장관 고시 1. 시설 .장비의 안전관리 2. 인력 현황 3.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4.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③ 제1항의 평가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 서면평가와 방문평가 방법 실시 ④ 규정사항외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평가 목적 및 활용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민간사회안전망으로의 기능과 역할 제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주체별(전국기부식품등 지원센터,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장 대상의 정기적인 평가시행과 그 결과 공개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속발전 체계를 강화하는데 있음



<그림-1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의 선순환 체계

3 평가 대상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대상은 2023.12.31. 이전에 신고·지정 사업장으로 2024년 평가시점 내 운영 중인 사업장

<표-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대상 유형

구분	평가	주요 역할 및 기능	비고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법률 3조 2항, 대통령령 시설요건 구비에 따라 지정된 신고사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며 전국기부식품등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등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선정된 전국지원센터는 기부식품등 사업전반의 계획과 모집, 전국사업장 전담관리를 함	보건복지부 지정 센터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법률 3조 2항, 대통령령 시설요건 구비에 따라 지정된 신고사업자 중 광역시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며 광역기부식품등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등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광역지역 내 기부식품등 사업활성화 관할 지역내 기초사업장 대상의 효과적 모집 및 배분 업무역할을 수행	광역시·도 지정 센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기초푸드뱅크	식품등 기부받은 물품을 대상자에게 직접 제공	시군구 신고사업장 (임의,당연)
	기초푸드마켓	식품등 기부받은 물품을 대상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 선택	

제2장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방법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방법

1.1 평가 일반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방식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됨
 - 서면평가는 운영주체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실적을 자체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현장평가는 운영주체별 자체평가 제출자료의 사실여부 및 증빙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평가단이 방문하여 자료를 검토·평가함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방법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성된 가운데 정성지표의 경우 등급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함. 기초푸드뱅크·마켓의 사업성과 평가는 지역별 특성(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반영해 지역 그룹내 상대평가를 적용함
- 기부식품등 제공 통합사업장(푸드뱅크+마켓)의 경우 기초푸드마켓 평가지표로 평가함

1.2 정성평가 측정 방법

- 정성평가의 등급별(4단계) 평가배점 부여와 평가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음

구분	지표 내용
우수(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내용을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 ▪ 차별적 운영개선 또는 활동 노력의 결과로 높은 성과(또는 타 사업자의 모범, 우수활동 사례)가 있는 경우
양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등급의 해당 사항을 충족하나 일부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경우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경우
보통(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일반적 평가내용 수준 또는 활동을 하는 경우 ▪ 주어진 여건하에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을 달성한 경우
개선(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결여되거나 성과가 부족한 경우 ▪ 사업 활동 및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배점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1.3 정량평가 측정 방법

구분	지표 내용	비고	
기준준수 여부평가	- 법령 및 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해서 반드시 수행하거나 실행해야 하는 지표 적용	- 보관창고 유무 - 운반차량 유무 - 냉장/냉동고 유무(당연) - 인력(전담,보조) 유무 - 주3회 60인 이상 유무 - 지자체 현장점검 유무	
	구분	기준준수	미준수
	점수	만점	0점
기준준수 적합평가	- 법령 및 지침(보건복지부)에서 수행 권고가 되거나 현장 평가단의 평가점검표 등의 적합(충족) 또는 부적합(미충족) 평가지표 적용 현장 평가 결과 ----- 점검 지표상의 모든 항목 수	- 차량보유관리 - 인력관리 - 교육이수 - 냉장·냉동고 관리 - 식품창고 및 마켓매장 - 기부식품 위생관리	
목표부여 상향평가	- 전년도 보다 실적이 증진되었을 경우 성과가 높다고 인정하는 지표에 평가 적용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기초사업장별 적용 ----- 실적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최저목표	- 모집/접수 건수 증가율 - 기부자(처) 증가율 - 배분환가액 증가율 - 배분건수 증가율 - 개인이용자 증가율	
평균대비 실적평가	- 실적을 해당 유형의 평균 대비 어느 위치인가를 종합 고려해 평가하는 지표로서 절대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상대평가가 강조되는 지표 적용 * 실적성과(배분 환가액, 이용자 수의 경우 평균의 110% 기준적용은 평가지표의 상향지향성을 목적을 고려한 사항으로 평가 결과의 상위 25% - 30% 수준으로 최고 목표치를 설정하여 범주 이상의 실적도출 경우 만점을 부여 ----- 해당 사업장의 실적 ----- 유형별 평균 * 110%	- 3년평균 접수/배분환가액 - 3년평균 접수/배분 건수 - 3년평균 기부자/이용자 수	
목표대비 실적평가	- 주어진 목표를 100% 달성해야 성과가 높다고 인정하는 지표에 활용하며, 해당 사업장의 실적으로 대입하여 평가함 ----- 해당 사업장 실적 ----- 최고 실적(100%)	- 전년대비 접수/배분증가율 - 전년대비 접수/배분 건수 - 전년대비 기부자/이용자수	
그룹내 상대평가 (순위 비율구간 평가)	- 기초사업장의 경우 지역 특성 그룹(3개) 내 상대평가를 하며 이 경우 해당 그룹 내 전체 접수 순위 비율 구간(%)별 점수를 부여 * 예: 상위 기준) 20% 이내(가중치 접수 * 1.0%) 21% - 40% 이내(가중치 접수 * 0.75% ...)	- 실적성과 지역 그룹별 평가	
가감점	- 법적 기준 평가지표 내 기준이상의 우수 성과(활동을 보인 경우 전체적 사업장 활동을 상향화를 위한 지표 적용 *법적 기준 내 지표 가감점 *현장 평가 시점 기준 폐업, 철거 등 제공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장 평가 제외(예, 마켓-독립매장 無)	*가점(현장기준):지표별(+1)점 -창고면적, 차량, 냉장/냉동고, 전담인력, 권장교육이수 *감점: -기간내 무상배분 미이행 시 최종점수의 (-)5점 -기간 내 부패/행정조치 시 최종점수의 (-)10점	

2 기초푸드뱅크·마켓 지역별 분류

구분	A그룹(대도시)		B그룹(중소도시)		C그룹(농산어촌)	
	특별시도, 자치시도(단위: 구, 동)		일반시(단위: 동)		농산어촌(단위: 군, 읍, 면(리))	
기초푸드 뱅크·마켓	서울	25개 구	경기	고양시/광명시/광주시/구리시/ 군포시/김포시/남양주시/ 동두천시/부천시/성남시/ 수원시/시흥시/안산시/ 안성시/안양시/여주시/ 오산시/용인시/의왕시/의정부시/ 이천시/파주시/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경기	가평군/안성시/양주시(리)/ 양평군/여주시(리)/ 연천군/용인시(면)
	부산	15개 구(기장군 별도)	강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 속초시/원주시/춘천시/ 태백시	강원	고성군/양구군/양양군/영월군/ 인제군/정선군/철원군/평창군/ 홍천군/화천군/횡성군
	대구	6개 구(달성군 별도)	충북	제천시/청주시/충주시	충북	괴산군/단양군/보은군/ 영동군/옥천군/음성군/ 증평군/진천군(2)
	인천	8개 구(강화군 별도)	충남	계룡시/공주시/논산시/ 당진시/보령시/서산시/ 아산시/천안시	충남	금산군/부여군/서천군/예산군/ 청양군/태안군/홍성군
	광주	5개 구	전남	광양시/나주시/목포시/순천시/ 여주시	전남	강진군/고흥군/곡성군/구례군/ 담양군/무안군/보성군/신안군/ 영광군/영암군/완도군/장성군/ 장흥군/진도군/함평군/해남군/ 화순군
	대전	5개 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남원시/ 익산시/전주시/정읍시	전북	고창군/무주군/부안군/순창군/ 완주군/임실군/장수군/진안군
	울산	4개 구(울준군 별도)	경북	경산시/경주시/구미시/김천시/ 문경시/상주시/안동시/영주시/ 영천시/포항시	경북	울주군/의성군/영덕군/ 청도군/칠곡군
	세종	-	경남	거제시/김해시/밀양시/사천시/ 양산시/진주시/창원시/ 통영시	경남	거창군/고성군/남해군/ 산청군/창녕군/하동군/ 합안군/함양군/합천군
	제주	-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세종	조치원읍	

제3장 운영주체별 평가지표 및 정의서



1 운영주체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총괄요약표

영역	평가지표		지원센터		제공사업장		비고 (가점)
			전국	광역시	뱅크	마켓	
I.법적기준 /공통 (30~34점)	A-1. 시설/장비	지정 신고관리 *당연미전환 -3점	2	1	1	1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5	5	5/6(임의)	5/6(임의)	+1
		지원센터:업무시설/마켓:매장시설	2	2	-	2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4	4	4/5(임의)	4/5(임의)	+1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2	2	2/3(임의)	2/3(임의)	+1
	A-2. 인적자원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8	6	4/1(임의)	4/1(임의)	+1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	3	3	3	
		교육이수	1	3	4	4	+1
	A-3. 제공활동 및 지자체 점검	근무여건	6	4	5	5	
		제공기준 준수 *미준수 -5점	-	-	2	2	
배분이행(주3회, 60인 이상)		-	-	3	1	FMS 자료	
	지자체 현장점검 *행정처분 -10점	-	-	1	1		
	소계	30	30	34	34	+5	
II.운영성과 /공통 (40~46점)	B-1. 경영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4	4	3	3	
		사업 교류협력 및 홍보(전국:사업장지원)	3	3	4	4	
		운영위원회	3	3	4	4	
	B-2. 위생/안전	시설,장비,기자재 위생관리	2	2	3	3	
		식품등 위생관리(배분기한포함)	5	6	6	6	
		식품사고 관리(전국:안전관리포함)	3	1	1	1	
	B-3. 모집/배분 (이관)	기부자(처) 관리	4	4	2	2	
		기부식품등 배분(조정,이관)	4	4	6	6	
		광역시:사업장점검, 기초:이용자 관리	-	3	6	6	
	B-4. 행정관리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4	4	4	4	
		행정문서 관리	3	2	2	2	
		정보공개 관리	2	1	1	1	
		예산관리	3	3	3	3	
지자체 지원		-	-	1	1		
	소계	40	40	46	46	-	
III.사업성과 /공통 (20~30점)	C-1. 접수실적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0/0/7	2/1/1	2/1/1	2/1/1	FMS자료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	1/1/1	1/1/1	1/1/1	
		기부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0/0/3	1/1/1	1/1/1	1/1/1	
	C-2. 배분(이관)실적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0/0/7	2/2/2	2/1/1	2/1/1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0/0/3	2/1/1	1/1/1	1/1/1	
		이용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	-	1/1/1	1/1/1	
	C-3. 운영성과	운영지원 만족도(기초→광역시평가)	-	5	-	-	
		행정지원 만족도(전국→광역시평가)	-	3	-	-	
		운영지원 만족도(광역시→전국평가)	3	-	-	-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평가	2	-	-	-	
		전국지원센터 고유역할 및 활동	5	-	-	-	
광역시지원센터 역할임무(교육운영지원)	-	2	-	-			
	소 계	30	30	20	20		
	총 계	100점/+5점(-18점)					

주) 평가지표 중 'FMS자료' 는 전산수치 자료 평가임

2 기초푸드뱅크·마켓 평가지표 및 정의서

2.1 기초푸드뱅크·마켓 - 평가현황표

영역	평가지표		기초푸드뱅크				기초푸드마켓			
			지표수	정량	정성	가감점	지표수	정량	정성	가감점
I.법적기준 (34점)	A-1. 시설/장비	사업장 신고 ≒당연미전환-3점	(1)	1	-	-3	(1)	1	-	-3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6)	5/6*	-	+1	(6)	5/6*	-	+1
		푸드마켓 시설 및 장비	-	-	-		(3)	2	-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4)	4/5*	-	+1	(4)	4/5*	-	+1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2)	2/3*	-	+1	(2)	2/3*	-	+1
	A-2. 인적자원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2)	4/1*	-	+1	(2)	4/1*	-	+1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2)	3	-		(2)	3	-	
		교육이수	(2)	4	-	+1	(2)	4	-	+1
		근무여건	(3)	5	-		(3)	5	-	
	A-3. 제공활동 및 지자체 점검	제공기준 준수 *미준수 -5점	(1)	2	-	-5	(1)	2	-	-5
		배분이행(주3회, 60인 이상)	(1)	3	-		(1)	1	-	
지자체 현장점검*행정처분 -10		(1)	1	-	-10	(1)	1	-	-10	
소계			34점		+5점/ -18점		34점		+5점/ -18점	
II.운영성과 (46점)	B-1. 경영관리	사업계획 수립	(2)	3	-		(2)	3	-	
		사업 교류협력 및 홍보	(2)	4	-		(2)	4	-	
		운영위원회	(2)	4	-		(2)	4	-	
	B-2. 위생/안전	시설,장비,기자재 위생관리	(1)	3	-		(1)	3	-	
		식품등 위생관리(배분기한포함)	(2)	6	-		(2)	6	-	
		식품사고 관리	(1)	1	-		(1)	1	-	
	B-3. 모집/배분	기부자(처) 관리	(1)	-	2		(1)	-	2	
		배분/이용 관리	(2)	-	6		(2)	-	6	
		이용자 관리(개인,단체)	(2)	2	4		(2)	2	4	
	B-4. 행정관리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2)	4	-		(2)	4	-	
		행정문서 관리	(1)	2	-		(1)	2	-	
		정보공개 관리	(1)	1	-		(1)	1	-	
		예산관리	(2)	3	-		(2)	3	-	
		지자체 지원	(1)	1	-		(1)	1	-	
소계			34점	12점	-		34점	12점	-	
III.사업성과 (20점)	C-1. 접수실적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3)	4	-		(3)	4	-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3)	3	-		(3)	3	-	
		기부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3)	3	-		(3)	3	-	
	C-2. 배분(이관)실적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3)	4	-		(3)	4	-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3)	3	-		(3)	3	-	
		이용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3)	3	-		(3)	3	-	
	소계			20점				20점		
총계			100점/+5점(-18점)				100점/+5점(-18점)			

주) *표시는 임의사업장/ 사업성과는 지역별 그룹 내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 적용

2.2 기초푸드뱅크·마켓 -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평가지표	배점		가감점	세부 지표명	
			정량	정성			
A. 법적기준 (34점)	A-1. 시설/장비	1. 사업장 신고	1		미전환 -3	A-1-1-1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신고 유무
		2.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3/4*		+1	A-1-2-1	○ 보관창고 면적
			2			A-1-2-2	○ 보관창고 보유
						A-1-2-3	○ 보관창고 사용 현황
						A-1-2-4	○ 보관창고 시건장치 구비
						A-1-2-5	○ 창고 내 물품과 바닥 이격 거리
						A-1-2-6	○ 창고 내부 및 주위 위생/청결 유지
		3. 푸드마켓 시설 및 장비	마켓2			A-1-3-1	○ 독립(단독) 매장 보유 및 관리
						A-1-3-2	○ 시설/장비의 보유 및 관리
						A-1-3-3	○ 장애인 편의시설 보유
		4.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0.5			A-1-4-1	○ 운반차량 소유 명의
			2/3*		+1	A-1-4-2	○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1			A-1-4-4	○ 차량 냉장/냉동 성능
			0.5			A-1-4-4	○ 차량 도색기준 준수
		5.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1/2*		+1	A-1-5-1	○ 냉장/냉동시설 보유
	1				A-1-5-2	○ 냉장/냉동시설 성능	
	A-2. 인적자원	6. 전담인력 보유 및 관리	3/0*		+1	A-2-6-1	○ 전담 인력 보유
			1			A-2-6-2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유
		7.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2			A-2-7-1	○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1			A-2-7-2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유
		8. 교육이수	4			A-2-8-1	○ 필수교육 수료
				+1	A-2-8-2	○ 권장교육 수료	
9. 근무여건		3			A-2-9-1	○ 전담인력 인건비 수준	
		1			A-2-9-2	○ 복리후생제도	
		1			A-2-9-3	○ 대체인력 확보	
A-3. 제공활동 및 지자체 점검	10. 제공기준 준수	2		제공 미준수 -5	A-3-10-1	○ 제공 기준 준수(100분 80이상)	
	11. 배분이행	뱅크3 마켓1			A-3-11-1	○ 주 3회 60인 이상 제공기준 준수	
	12. 지자체 현장점검	1		행정처 분 -10	A-3-12-1	○ 지자체 현장점검	
B. 운영성과 (46점)	B-1. 경영관리	13. 사업계획 및 운영관리	2			B-1-13-1	○ 사업 계획 수립
			1			B-1-13-2	○ 사업운영 관리
		14. 사업 교류협력 및 홍보	3			B-1-14-1	○ 지역사회 연계활동(교류협력)
			1			B-1-14-2	○ 기부식품등 사업 홍보
		15. 운영위원회	2			B-1-15-1	○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2			B-1-15-2	○ 운영(자문)위원회 활동 및 관리

대분류	중분류	평가지표	배점		가감점	세부 지표명	
			정량	정성			
B. 운영성과 (46점)	B-2. 위생/안전	16.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3			B-2-16-1 ○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17. 식품등 위생관리 (배분기한포함)	5			B-2-17-1 ○ 기부식품등 위생/안전관리	
			1			B-2-17-2 ○ 기부식품등 배분기한 준수	
		18. 식품사고 관리	1			B-2-18-1 ○ 식품사고 대처관리	
	B-3. 모집/배분	19. 기부자(처)관리		2		B-3-19-1 ○ 기부자(처) 관리의 적정성	
		20. 배분 및 이용 관리		3		B-3-20-1 ○ 배분 및 이용 관리의 적정성	
				3		B-3-20-2 ○ 배분 및 이용 관리의 공정성	
		21. 이용자 관리 (개인, 단체)	2	3		B-3-21-1 ○ 이용자 선정 및 관리의 적정성	
			1		B-3-21-2 ○ 단체/시설 이용관리의 적정성		
	B-4. 행정관리	22. 기부물품관리 시스템(FMS) 활용	2			B-4-22-1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및 관리적절성	
			2			B-4-22-2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능력	
		23. 행정문서 관리	2			B-4-23-1 ○ 행정문서 관리 적정성	
		24. 정보공개 관리	1			B-4-24-1 ○ 정보공개 관리	
		25. 예산관리	1			B-4-25-1 ○ 예산의 편성(수립)	
			2			B-4-25-2 ○ 예산의 집행	
	26. 지자체 지원	1			B-4-26-1 ○ 지자체 지원관리		
	C. 사업성과 (20점)	C-1. 접수실적	27. 접수 환가액	2			C-1-27-1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접수 환가액
				1			C-1-27-2 ○ '20년 부터 '23년 기부식품등 접수 환가액 증가율 (전년대비 3년치)
1						C-1-27-3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접수 환가액	
28. 접수 건수			1			C-1-28-1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접수 건수	
			1			C-1-28-2 ○ '20년 부터 '23년 기부식품등 접수 건수 증가율 (전년대비 3년치)	
			1			C-1-28-3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접수 건수	
29. 기부자(처) 수		1			C-1-29-1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수		
		1			C-1-29-2 ○ '20년 부터 '23년기부식품등 기부자(처) 수 증가율 (전년대비 3년치)		
		1			C-1-29-3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수		
C-2. 배분실적		30. 배분 환가액	2			C-2-30-1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배분(제공) 환가액	
			1			C-2-30-2 ○ '20년 부터 '23년 기부식품등 배분(제공) 환가액 증가율 (전년대비 3년치)	
			1			C-2-30-3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배분(제공) 환가액	
	31. 배분 건수	1			C-2-31-1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배분(제공) 건수		
		1			C-2-31-2 ○ '20년 부터 '23년 기부식품등 배분(제공) 건수 증가율 (전년대비 3년치)		
		1			C-2-31-3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배분(제공) 건수		
32. 이용자 수	1			C-2-32-1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이용자 수			
	1			C-2-32-2 ○ '20년 부터 '23년 기부식품등 이용 자 수 증가율 (전년대비 3년치)			
	1			C-2-32-3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이용자 수			
총 계			88점	12점		100점(+5/-18점)	

2.3 기초푸드뱅크·마켓 - 지표 정의서

구분	A-1. 법적기준 - 시설/장비				속 성	정량
			뱅크	마켓	배 점	1점(감점 3)
			당 연	임 의		
			○ ○	○ ○		
지표명 (지표번호)	A-1-1. 사업장 신고	A-1-1-1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신고 유무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푸드뱅크·마켓 신고 유무 및 당연사업장 전환의 적절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A-1-1-1	<p>○ 기초푸드뱅크·마켓 신고 유무 및 당연사업장 전환의 적정성</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사업자의 사업자 신고필증 유무 및 기재 내용확인을 통해 평가 (신고필증 앞면 내용과 사업장 실제 일치 여부(법인명, 기관명, 주소, 신고유형 확인), 후면 변경사항 시 관련 내용 적정 여부 확인) 임의사업장의 경우 당연사업장 요건 해당 여부 확인(해당연도별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장부가액 기준 3억 이상 여부 확인) <p>※ 당연사업장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연신고 대상 사업장은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당연신고 대상임을 통보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확정된 당연신고 대상 사업장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를 통해 시장·군수 구청장에 통보 신고한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 및 사업장 명칭이 표기된 현판을 설치하여 푸드뱅크·마켓임을 명시 당연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관리감독 실시 임의신고 사업자가 전년도 기부식품등의 장부가액 3억 원 이상을 제공한 경우 당연신고로 변경이 필요하며, 당연신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배점기준	A-1-1-1 (1점) / 감점 3	<p>(1점) A-1-1-1 지표가 부합한 경우</p> <p>(감점-3점) A-1-1-1 지표가 부합하지 않은 경우(임의사업장의 경우 당연사업장 대상 여부 확인 : 3개년)</p>				
증빙자료 (예시)	A-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 신고필증(법률 시행규칙-별지 2호서식, 신설'17.2.2)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사업장 실적 자료, 사업자 신고필증(신고의 종류 기재사항 확인) 				

구분	A-1. 법적기준 - 시설/장비			뱅크		마켓		속 성	정 량
				당 연	임 의	당 연	임 의	배 점	
				○	○	○	○		
지표명 (지표번호)	A-1-2.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A-1-2-1	○ 보관창고 면적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보관창고의 보유 및 관리 상태를 평가함 								
평가내용	A-1-2-1	<p>○ 보관창고 면적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고바닥 면적이 16.5㎡이상 인가를 확인함(임의사업장은 면적에 관계없이 보유 여부만 확인)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 이외 설치 가능하며, 당연사업장의 보관창고 면적은 건축물대장에 창고로 표기 및 면적 기재(미등록 경우 실제 면적 측정을 통해 파악/임의 사업장은 면적제한 규정이 없어 보관창고 보유 유무만 확인) 복수의 보관창고를 사용하는 경우 전체면적의 합을 평가대상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A-1-2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의 모든 평가항목에 적용되는 대상임. 당연사업장에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보관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벽 등으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고, 각각의 면적에 대해 별도로 평가하며, 불법 가건물은 보관창고로 인정하지 않음(조립식 창고 및 컨테이너 등 가건물 형태의 창고라도 건축물로 허가가 난 상황이면 인정함) 							
배점기준	A-1-2-1 (당연 3점, 임의 4점) / 가점 1	당연사업장(3점 + 가점 1점) (3점) 평가대상 기간(3년) 내 모두 기준 충족 시 (2점) 평가대상 기간 중 최근 2개 년 기준 충족 시 (1점) 평가대상 기간 중 최근 1개 년 기준 충족 시 (0점) 평가대상 기간(3년) 내 모두 기준 미 충족 시 (가점 1점) 기준 면적의 2배(33㎡) 이상 보유 시			임의사업장(4점 + 가점 1점) (4점) 평가대상 기간(3년) 내 모두 기준 충족 시 (2점) 평가대상 기간 중 최근 2개 년 기준 충족 시 (1점) 평가대상 기간 중 최근 1개 년 기준 충족 시 (0점) 평가대상 기간(3년) 내 모두 기준 미 충족 시 (가점 1점) 기준 면적(16.5㎡) 이상 보유 시				
증빙자료 (예시)	A-1-2-1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도면, 관련 증빙 공문, 화재보험증권 등으로 내용 확인							

구분	A-1. 법적기준 - 시설/장비				속 성	정량
	뱅크		마켓		배 점	2점
	당 연	임 의	당 연	임 의		
지표명 (지표번호)	A-1-2.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A-1-2-2 A-1-2-3 A-1-2-4 A-1-2-5 A-1-2-6	○ 보관창고 보유 ○ 보관창고 사용 현황 ○ 보관창고 시건장치 구비 ○ 보관창고 내 물품과 바닥과의 이격거리 ○ 보관창고 내부 및 주위 위생/청결 유지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보관창고의 보유 및 관리 상태를 평가함 					
평가내용	A-1-2-2	○ 보관창고 보유(소유/임차) 【해설】 - 보관창고는 사업장 명의의 소유 및 임차의 경우만 인정함(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갖춘 경우만 인정하며, 지자체 소유로 무상임대 형태의 경우 관련 공문을 보유해야 인정함)				
	A-1-2-3	○ 보관창고 사용 현황(단독 사용 및 겸용사용 시 구획 분리 여부) 【해설】 - 보관창고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관련 용도로만 사용 시 인정하고(개인 또는 타 사업관련 식품/물품보관 시 겸용으로 판단하되, 보관용기, 청소도구 및 관련 장비 보관은 인정함), 겸용사용(매장/사무실 및 개인/사업관련)시 식품 등 안전 관리를 위해 구획을 분리해야 함(고정벽체, 파티션, 별도 출입구 설치 등)				
	A-1-2-4	○ 보관창고 시건장치 구비 【해설】 - 보관창고의 시건장치 설치를 통한 출입통제 관리가 가능해야 함				
	A-1-2-5	○ 보관창고 내 물품과 바닥과의 이격거리 【해설】 - 식품과 비식품은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교차오염 및 습기로 인한 변질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을 벽과 바닥으로부터 15cm(공산품은 10c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하여야 함. / 15cm에는 파렛트 자체 높이도 포함됨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및 기부생활용품 관리 요령 근거				
	A-1-2-6	○ 보관창고 내부 및 주위 위생/청결 유지 【해설】 - 보관창고 내 방습/방서 등에 필요한 환기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창고 주변에 오염 환경이나 기피시설이 없어야 함(보관창고의 반경 30m 이내에 쓰레기소각장, 쓰레기집하장,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하수처리장, 화장장, 축사 등의 시설 없어야 함 *주민기피시설법제도및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배점기준	A-1-2-2 ~ A-1-2-6 (2점)	A-2-2에서 A-2-6의 5개 지표 별 기준 충족 시 각 0.4점(총 2점)				
증빙자료 (예시)	A-1-2-2 ~ A-1-2-6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도면, 관련 증빙 공문, 화재보험증권 등으로 내용 확인				

구분	A-1. 법적기준 - 시설/장비		마켓	속 성	정량	
			당 연	입 의	배 점	2점
		○	○			
지표명 (지표번호)	A-1-3. 푸드마켓 시설 및 장비	A-1-3-1 A-1-3-2 A-1-3-3	○ 독립(단독) 매장 보유 및 관리 ○ 시설/장비의 보유 및 관리 ○ 장애인 편의시설 보유		평가 적용	평가 시점
지표근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기초푸드뱅크·마켓의 매장, 시설 구비 및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A-1-3-1	○ 독립(단독) 매장 보유 및 관리 【해설】 - 푸드마켓 매장이 사업장 명의의 소유 및 임차의 형태로 운영주체 시설과는 독립되어 운영되는지를 평가하며, 지자체 소유로 무상임대 형태의 경우 관련 공문을 보유해야 인정함 ※ 푸드마켓 -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아 결식 위기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이 방문을 통해 필요한 식품 등을 선택토록 기부식품등을 진열·배치하는 사업장 - 개인이용자의 접근성 강화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지역 내 편의점 형태로 매장을 설치·운영 - 매장과 설비(식품등진열대, 냉장·냉동진열장, 컴퓨터, 바코드스캐너 등)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A-1-3-2	○ 시설/장비의 보유 및 관리 【해설】 - 매장 내 시설 및 장비(식품등 진열대, 냉장·냉동진열장, 컴퓨터, 바코드스캐너 등)를 보유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함				
	A-1-3-3	○ 장애인 편의시설 보유 【해설】 - 푸드마켓(통합매장 포함) 매장 출입에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경사로(탈부착식 포함)나 엘리베이터를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가를 확인함 ※ 출입, 이용할 수 있는데 제한이 없는지(회전반경 등) / 가벼운 턱 등은 제외				
배점기준	A-1-3-1 (1점)	(1점) 독립(단독) 매장을 보유한 시설인 경우[고정된 벽체] (0.5점) 겸용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구획분리가 된 경우[자바라, 커튼, 파티션] (0점) 구획분리가 되지 않은 겸용 매장이거나 창고형태의 시설 또는 불법 시설물인 경우				
	A-1-3-2 (0.5점)	(0.5점) 식품등 진열대, 냉장·냉동진열장, 컴퓨터, 바코드스캐너 모두 보유 및 모두 정상 작동하는 경우 (0점) 식품등 진열대, 냉장·냉동진열장, 컴퓨터, 바코드스캐너 중 한 가지 이상 미보유 및 한 가지 이상 미작동하는 경우				
	A-1-3-3 (0.5점)	(0.5점) 장애인이 출입가능 하도록 시설 보유 시(출입구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0점) 장애인이 출입가능 하도록 시설 미보유 시(출입구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증빙자료 (예시)	A-1-3-1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도면, 관련 증빙 공문				
	A-1-3-2	현장 확인(사진), 작동확인				
	A-1-3-3	현장 확인(사진)				

구분	A-1. 법적기준 - 시설/장비				배 점		정량
					속 성		4점(가점 1) /임의 5점 (가점 1)
					당 연	마 케	
				○	○	○	○
지표명 (지표번호)	A-1-4.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A-1-4-1 A-1-4-2 A-1-4-3 A-1-4-4	○ 운반차량 소유 명의 ○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 차량 냉동/냉장 성능 ○ 차량 도색기준 준수		평가 적용	평가 시점	
지표근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기초푸드뱅크마켓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를 평가함						
평가내용	A-1-4-1	○ 운반차량 소유 명의 【해설】 - 운반차량이 제공사업장 운영법인이나 제공사업주 명의인가를 확인하며, 지자체 소유로 무상임대 형태의 경우 관련 공문을 보유해야 인정함 ※ 운반차량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법인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명의일 것 법인 또는 제공사업 명의를 아닌 경우 A-1-4 지표는 0점 처리					
	A-1-4-1	○ 운반차량 보유 【해설】 -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식육 등의 액체(피 등)가 흘러나올 경우 이를 밖으로 배출하여 냄새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가를 확인함 - 상기 해당사항 여부를 파악하고, 복수 차량으로 가점을 획득한 경우 모든 해당 차량이 A-1-4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의 모든 평가항목에 적용되는 대상임 ※ 운반차량 -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함 - 적재고는 식육 액체(피 등)가 흘러나올 경우 이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냄새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A-1-4-2	○ 차량 냉동/냉장 성능 【해설】 - 운반차량이 성능 기준(냉동은 -18℃ 이하, 냉장은 10℃ 이하)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시간(10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온도 확인), 별도의 온도 확인 장치가 없는 구형 차량의 경우는 온도계 구비도 확인함. 단,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 미설치경우도 인정됨 ※ -냉동은 -18℃ 이하, 냉장은 10℃ 이하 동영상으로 증빙(차량 확인 가능)					
	A-1-4-3	○ 차량 도색기준 준수 【해설】 - 운반차량이 도색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전·후·좌·우 등 4면 모두 준수해야 함) ※ 운반차량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통일성과 대국민 홍보를 위해 푸드뱅크·마켓 심벌마크, 대표번호 등 연락처, 캐릭터 등이 삽입된 내용으로 도색해야 함 * 일부 도색, 랩핑이 어려운 모서리, 전면 마크만 제외 인정					
배점기준	A-1-4-1 (0.5점)	(0.5점) 기준에 부합 시 (0점) 기준에 미 부합 시					
	A-1-4-2 (당연 2점, 임의3점)/ 가점 1	당연사업장(2점 + 가점 1점) (2점) 3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 시 (1점) 3가지 기준 중 한 가지 미 부합 시 (0점) 3가지 기준 모두 미 부합 시 (가점 1점) 운반차량이 2대 이상이며, 모두 3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 시		임의사업장(3점 + 가점 1점) (3점) 3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 시 (1.5점) 3가지 기준 중 한 가지 미 부합 시 (0점) 3가지 기준 모두 미 부합 시 (가점 1점) 운반차량이 2대 이상이며, 모두 3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 시			
	A-1-4-3 (1점)	(1점) 기준에 부합 시 (0점) 기준에 미 부합 시					
	A-1-4-4 (0.5점)	(0.5점) 기준에 부합 시 (0점) 기준에 미 부합 시					
	증빙자료 (예시)	A-1-4-1	차량등록증, 관련 증빙 공문 등				
	A-1-4-2	현장 확인(사진, 동영상)					
	A-1-4-3	차량 냉동/냉장 성능 현장 확인					
	A-1-4-4	차량 확인(사진, 동영상)					

구분	A-1. 법적기준 - 시설/장비				뱅크	마켓	속 성	정량	
					당 연	임 의			당 연
					○	○	○	○	배 점
지표명 (지표번호)	A-1-5. 냉장/냉동 시설 보유 및 관리	A-1-5-1	○ 냉장/냉동시설 보유			평가 적용	평가 시점		
	A-1-5-2	○ 냉장/냉동시설 성능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냉장 및 냉동고 보유 및 기능 정상 여부를 평가함 								
평가내용	A-1-5-1	<p>○ 냉장/냉동시설 보유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L 이상의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구비하고 있는가를 확인함(임의사업장은 용량에 관계없이 냉장 또는 냉동고 시설 보유여부만 확인) - 당연사업장은 해당 시설을 기준 용량(1,000L)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복수의 냉장/냉동시설을 보유한 경우 전체용량의 합을 평가대상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A-1-5-1 ~ A-1-5-2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의 모든 평가항목에 적용되는 대상임 - 임의사업장은 보유여부만 확인하며(냉장고 유형은 일반가정용에 관계없이 사업장 전용 사용 경우에 한함),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냉장/냉동시설 미보유 시에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함 - 해당 냉장/냉동시설 내부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외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유로 인정되지 않음(타 사업 및 개인 물품 보관 등) <p>※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p>					평가 적용	평가 시점	
	A-1-5-2	<p>○ 냉장/냉동시설 성능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장/냉동시설 성능 기준(냉동 -18℃ 이하, 냉장 10℃ 이하)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시간(10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온도 확인),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냉장/냉동시설 미보유 시에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함 							
배점기준	A-1-5-1 (당연 1점, 임의 2점)/ 가점 1	<p>당연사업장(1점 + 가점 1점)</p> <p>(1점) 기준 이상 냉장 또는 냉동시설 보유 시</p> <p>(0점) 기준 이상 냉장 또는 냉동시설 모두 미보유 시</p> <p>(가점 1점) 당연사업장은 냉장/냉동시설 모두 1,500L 이상 보유시</p>			<p>임의사업장(2점 + 가점 1점)</p> <p>(2점) 냉장 또는 냉동시설 보유 시</p> <p>(0점) 냉장 또는 냉동시설 모두 미보유 시</p> <p>(가점 1점) 냉장/냉동시설 모두 1,000L 이상 보유시</p>			평가 적용	평가 시점
	A-1-5-2 (1점)	<p>(1점) 보유 냉장/냉동시설 성능 모두 기준에 부합 시</p> <p>(0점) 보유 냉장/냉동시설 성능 중 하나 이상 기준에 미 부합 시</p> <p>※ 복수의 시설 또는 보유용량으로 가점이 적용된 시설은 모두 평가에 포함됨</p>							
증빙자료 (예시)	A-1-5-1 A-1-5-2	비품대장, 구매확인서(모델명, 규격 등 사양표기), 양도증명서, 관련 증빙 자료 등							

구분	A.2. 법적기준 - 인적자원				속 성	정량
	뱅크		마켓		배 점	
	당 연	임 의	당 연	임 의		
						4점(가점 1) /임의 가점 1
지표명 (지표번호)	A-2-6. 전담인력 보유 및 관리	A-2-6-1	○ 전담 인력 보유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A-2-6-2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유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인력 확보 및 관리를 평가함 					
평가내용	A-2-6-1	○ 전담 인력 보유 【해설】 - 전담인력은 정규직 또는 계약직 모두 포함하며 예산항목상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에 대한 인건비 확보가 되어 실 지급 되는지를 확인(계약직 경우 업무분장 표에 명시된 업무를 주 40시간 이상 근무 & 4대 보험 가입 & 1년 이상 계약 인 경우), 운영자가 전담총괄 또는 운영주체 내 관리자 등 직원이 겸직형태로 전담 시는 미인정됨 - 전담인력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인력들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업무 수행비용의 합이 100% 이상이어야 인정됨(업무분장표 상의 업무 비율) -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 공문에 역할 및 인건비가 포함되어야 하고, 보조금을 안 받는 경우에는 총회자료집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인정됨 ※ 임의 사업장에서 당연사업장으로 전환 때에는 사업장 전환 전까지는 임의사업장의 기준, 전환 이후는 당연사업장의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며 배점은 당연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A-2-6-2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유 【해설】 - 전담 인력별 재직기간 중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가를 확인함 ※ 재직(근무)기간 중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유란 근무기간이 2021. 12.1. ~ 2023. 6.30. 까지 근무 때에는 21년, 22년, 23년 총 3개를 보유하는 것이 아닌 2021.12.1. ~ 2022.11.30./1개, 2022.12.1. ~ 2023.6.30. /1개 총 2개를 보유 때에는 인정 재직기간 중 보유하면 인정함.				
배점기준	A-2-6-1 (당연 3점, 임의 0점) /가점 1	당연사업장(3점 + 가점 1점) (3점) 3개년 모두 전담인력 1인 보유 시 (2점) 2개년 전담인력 1인 보유 시 (1점) 1개년 전담인력 1인 보유 시 (0점) 3개년 모두 전담인력 미보유 시 (가점 1점) 3개년 모두 전담인력 2인 이상 보유 시		임의사업장(가점 1점) (가점 1점) 3개년 모두 전담인력 1인 이상 보유 시		
	A-2-6-2 (1점)	(1점) 전담인력 모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유 시 (0점) 전담인력 중 1인 이상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비 보유(미확인 포함) 시 ※ 가점 획득 인력도 모두 평가 대상에 포함됨				
증빙자료 (예시)	A-2-6-1 A-2-6-2	인건비 지급명세서, 지자체 공문, 4대보험 납부 내역, 계약서, 업무분장표, 직원 인터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구분	A-2. 법적기준 - 인적자원				배 점		정량		
					은행			마켓	
					당연	임의		당연	임의
				○	○	○	○	3점	
지표명 (지표번호)	A-2-7.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A-2-7-1	○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A-2-7-2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유						
지표근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보조인력(자원봉사자 포함)의 확보 및 관리를 평가함								
평가내용	A-2-7-1	<p>○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인력은 사회복지요원 등 3개월 이상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전담 및 담당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한정하고, 자원봉사자는 평균 주 10시간 이상을 3개월 이상 전담 및 담당직원의 업무를 보조한 자로 한정하여 평가함 - 사회복지요원은 지방병무청 등 관리주체의 공문 또는 사업장 내부공문에 의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배치계획 등 기부식품제공사업 보조업무가 명시되었는지를 확인함(사회복지요원의 경우 기존 복무자의 소집해제 후 후임 복무자의 배치 중간의 공백은 있는 것으로 판단) -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VMS,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포털과 같이 봉사 인증 필수, 자체 자원봉사원 자료 확인을 통해 자원봉사 인력 활용여부를 확인함 <p>※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인력에는 사회복지요원, 공공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 자원봉사자 등 기부식품등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추가인력 모두 포함되며, 관리주체의 공문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내부공문에 의한 배치계획 등에 기부식품제공사업 보조업무가 명시되었는지 여부 * 지자체에서 과건하는 인력 등 포함 - 자원봉사자는 평균 주 10시간이상 전담 및 담당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VMS,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포털과 같이 봉사 인증 필수) * 임의사업장은 전담인력 1인이 있을 경우 보조인력 1인 이상 보유로 인정하며 측정은 연단위로 함 					평가내용		
	A-2-7-2	<p>○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유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보조인력에 대하여 근무기간 전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가를 확인함 ※ 재직(근무 등)기간 중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유란 근무기간이 2021. 12.1. ~ 2023. 6.30. 까지 근무 때에는 21년, 22년, 23년 총 3개를 보유하는 것이 아닌 2021.12.1. ~ 2022.11.30./1개, 2022.12.1. ~ 2023.6.30./1개 총 2개를 보유 때에는 인정 재직기간 중 보유하면 인정함. 							
배점기준	A-2-7-1 (2점)	(2점)	<p>당연</p> <p>3개년 모두 보조인력 2인 이상 보유 시 - 평균 주 10시간 이상(3개월 이상) 근무자로 보조인력 구성 시 총 근무시간이 매년 1,040시간 이상인 경우(10시간 X 52주 X 2인)</p>		<p>임의</p> <p>3개년 모두 보조인력 1인 이상 보유 시 - 평균 주 10시간 이상(3개월 이상) 근무자로 보조인력 구성 시 총 근무시간이 매년 520시간 이상인 경우(10시간 X 52주 X 1인)</p>		배점기준		
	A-2-7-2 (1점)	(1점)	<p>(1점) 2개년 모두 보조인력 2인 이상 보유 시</p> <p>(0점) 위 기준 이외 해당 시</p>		<p>2개년 모두 보조인력 1인 이상 보유 시</p> <p>위 기준 이외 해당 시</p>				
	A-2-7-2 (1점)	(1점)	평가대상 보조인력에 대하여 근무기간 전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유 시						
	A-2-7-2 (0점)	(0점)	평가대상 보조인력에 대하여 근무기간 전체 중 1인 이상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비 보유(미확인 포함) 시						
증빙자료 (예시)	A-2-7-1	보조인력 관련 공문, 자원봉사 관련 각종 포털이나 시스템, 사회복지포털, 보조업무 명시자료(업무분장표), 직원 인터뷰, 보조인력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구분	A-2. 법적기준 - 인적자원				속 성	정량
	뱅크		마켓		배 점	4점(가점 1)
	당 연	임 의	당 연	임 의		
		○	○	○	○	
지표명 (지표번호)	A-2-8. 교육이수	A-2-8-1	○ 필수교육 수료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A-2-8-2	○ 권장교육 수료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인력 필수교육 수료 및 권장교육 수료를 평가함 					
평가내용	A-2-8-1	<p>○ 필수교육 수료</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전담인력 및 3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보조인력의 3개년간 필수교육(식품위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교육, 개인정보교육, 자살예방교육) 수료여부를 평가함 보조인력의 경우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교육은 제외하며, 교육수료 여부 확인은 기초푸드뱅크·마켓 교육수료 명단과 해당연도별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교육수료 명단을 비교하여 평가함 종사인력의 변동에 관계없이 인원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 전담인력 평가적용기간 : 2021.1.1.~2023.12.31. ※ 보조인력 평가적용기간 : 2021.1.1.~2023.12.31. 				
	A-2-8-2	<p>○ 권장교육 수료</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장교육은 업무수행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직무능력 향상 및 정보화 교육을 포함하여 외부전문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초빙 교육 및 외부 세미나/워크숍 참석 포함)의 수료증, 수료확인서, 확인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확인함 ※ 전담인력 평가적용기간 : 2021.1.1.~2023.12.31. ※ 보조인력 평가적용기간 : 2021.1.1.~2023.12.31. 				
배점기준	A-2-8-1 (4점)	<p>(4점) [전담]3개년간 인력(전담) 모두 전체 필수교육 수료 시 - 3점</p> <p>[보조]3개년간 인력(보조) 모두 전체 필수교육 수료 시 - 1점</p> <p>(3점) [전담]3개년간 인력(전담) 모두 전체 필수교육 중 1개 이상 미수료 시 - 2.25점</p> <p>[보조]3개년간 인력(보조) 모두 전체 필수교육 중 1개 이상 미수료 시 - 0.75점</p> <p>(2점) [전담]3개년간 인력(전담) 모두 전체 필수교육 중 2개 이상 미수료 시 - 1.5점</p> <p>[보조]3개년간 인력(보조) 모두 전체 필수교육 중 2개 이상 미수료 시 - 0.5 점</p> <p>(1점) [전담]3개년간 인력(전담) 모두 전체 필수교육 중 3개 이상 미수료 시 - 0.75점</p> <p>[보조]3개년간 인력(보조) 모두 전체 필수교육 중 3개 이상 미수료 시 - 0.25점</p> <p>(0점) 위 기준 이외 해당 시</p> <p>*임의사업장 보조인력의 경우는 점수를 통합하여 운영함.</p>				
	A-2-8-2 (가점 1)	(1점) 평가 적용기간(`21~`23년) 인력(전담/보조) 모두가 권장교육과정을 1개 이상 수료 시				
증빙자료 (예시)	A-2-8-1 A-2-8-2	교육훈련 수료증, 수료 확인증, 수료대장, 확인 공문 등				

구분	A-2. 법적기준 - 인적자원				속 성	정량
	뱅크		마켓		배 점	5점
	당 연	임 의	당 연	임 의		
		○	○	○	○	
지표명 (지표번호)	A-2-9. 근무여건	A-2-9-1	○ 전담인력 인건비 수준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A-2-9-2	○ 복리후생제도			
		A-2-9-3	○ 대체인력 확보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근무환경을 평가함 					
평가내용	A-2-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직원 인건비 수준 【해설】 - 연도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자료를 통해 해당 연도별 인건비 지급 자료를 확인함(전담인력은 정규직 또는 계약직 형태를 모두 포함하고, 사업장의 예산부족 등으로 인한 인건비와 4대보험이 별도 재원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인정함) 				
	A-2-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리후생제도 【해설】 - 전담인력 대상 복리후생 제도를 1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가를 확인함 - 인센티브, 복지포인트, 외부수상 추천, 시간외 수당 추가지급, 직급수당, 장기근속 수당, 문화프로그램 등의 관련 제도나 프로그램 운영을 확인함 - 단순 회식은 포함되지 않고, 워크숍이나 외부교육은 제외됨(권장교육 수료에서 평가됨) - 단, 소통프로그램, 체육활동, 지역탐방, 문화체험(공연 등) 등이 포함된 워크숍 인정(권장교육 점수 인정시, 복리후생제도 점수 불인정) 				
	A-2-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인력 확보 【해설】 - 전담인력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통해 전담직원의 휴가, 경조사 등의 상황발생시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가를 평가함(업무분장표 등 확인) 				
배점기준	A-2-9-1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점) 3개년도 모두 전담인력 모두 가이드라인 준수 시 (2점) 2개년도 전담직원 모두 가이드라인 준수 또는 3개년도 모두 가이드라인 90% 이상 준수 시 (1점) 1개년도 전담직원 모두 가이드라인 준수 또는 3개년도 모두 가이드라인 80% 이상 준수 시 (0점) 위 기준 이외 해당 시 				
	A-2-9-2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점) 평가적용 기간 내 1개 이상 복리후생 제도나 프로그램 운영 시 (0점) 위 기준 이외 해당 시 				
	A-2-9-3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점) 대체인력 활용을 통한 휴가, 경조사 등에도 업무수행 가능 시 (0점) 위 기준 이외 해당 시 				
증빙자료 (예시)	A-2-9-1	직원 급여(인건비) 명세서, 급여대장, 복리후생제도 규정이나 지침, 지원 내역서, 직원 인터뷰 등 등				
	A-2-9-2					
	A-2-9-3					

구분	A-3. 법적기준 - 제공활동 및 지자체 점검				속 성	정량
	뱅크		마켓		배 점	
	당 연	입 의	당 연	입 의		
						2점(감점 5)
지표명 (지표번호)	A-3-10. 제공기준 준수	A-3-10-1	○ 제공 기준 준수((100분의 80이상)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 및 제공이행 관리 수준을 평가함 					
평가내용	A-3-10-1	<p>○ 제공 기준 준수(100분의 80이상)</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기준(제공 금지사항)을 준수하고,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에게 제공하는지를 확인함(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서 금액기준으로 평가함) <p>※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법 제2조제5호, 시행령 제2조의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고,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20 미만은 동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사용 가능하나, 「식품등 1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직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지급, 정치·종교적 사용, 바자회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나누어주는 행위 등) 기초푸드뱅크·마켓의 운영주체가 개최하는 바자회·행사, 정치·종교적 목적을 위한 행사 및 종교 기관·단체 등에는 기부물품 제공 금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부터 비용·실비 등을 받는 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 금지 다만, 기부자가 배분대상을 지정기부시 또는 급히 배분해야 할 대규모의 신선식품 기부 시에는 예외인정 				
배점기준	A-3-10-1 (2점) /감점 5	<p>(2점) 3개년도(모두) 기준 이상 제공 시</p> <p>(0점) 기준 미 준수 시</p> <p>(감점 5) 제공 기준 1회 이상 미 준수 시 종합점수에서 감점</p>				
증빙자료 (예시)	A-3-10-1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자료, 지자체 현장점검 공문, 직원인터뷰 등				

구분	A-3. 법적기준 - 제공활동 및 지자체 점검			뱅크		마켓		속 성	정량
				당 연	임 의	당 연	임 의	배 점	뱅크 3점 마켓 1점
				○	○	○	○		
지표명 (지표번호)	A-3-11. 배분이행	A-3-11-1	○ 주 3회 60인 이상 제공기준 준수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 및 제공이행 관리 수준을 평가함 								
평가내용	A-3-11-1	<p>○ 주 3회 60인 이상 제공기준 준수</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자료(산출방법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통계-기부물품 통계자료-기부물품제공통계 메뉴에서 '제공일자' 1일 단위로 산출)를 활용하여 해당연도별 평가기준 일자의 1일 단위로 산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주 단위로 확인함 ※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근무일이 3일 미만인 주는 제외 사회복지시설·단체에 제공한 경우 각 시설·단체는 1인으로 인정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각 사업장별 제공 실적을 매월 확인하여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통보하고, 각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법적 제공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 실시 							
배점기준	A-3-11-1 뱅크(3점) 마켓(1점)	푸드 뱅크	(3점) 3개년도 모두 100% 준수 시 (0점) 기준 미준수 시					푸드 마켓	(1점) 3개년도 모두 100% 준수 시 (0점) 기준 미준수 시
증빙자료 (예시)	A-3-11-1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자료, 지자체 현장점검 공문, 직원 인터뷰 등							

구분	A-3. 법적기준 - 제공활동 및 지자체 점검				배 점	정량
	뱅크		마켓		배 점	정량
	당연	입의	당연	입의		
						1점(감점 10)
지표명 (지표번호)	A-3-12. 지자체 현장점검	A-3-12-1	○ 지자체 현장점검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의 관할 사업장 현장점검 이행 정도를 평가함 					
평가내용	A-3-12-1	<p>○ 지자체 현장점검</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시·군·구) 담당 부서가 식품위생 담당부서 등과의 협조를 통해 기부식품의 모집·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위생상태 및 보조금 운영 점검을 정기적 및 수시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함('21년~'23년 1회 이상) <p>※ 국가 등의 지원(법 제7조)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는 식품등 기부의 활성화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지원 및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내 사업을 추진하고, 활성화를 위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지방비 등을 확보하여 인건비, 운영 장비, 공공요금·차량유지비 등 경비 지원) 지원센터 및 신고사업자에게 인건비·경비·장비 등을 지원하고, 사업실적 등 평가를 통하여 계속 또는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 지자체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투명성 확보 및 식품등 안전관리, 공정성 제고, 시설·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기초푸드뱅크·마켓 위생지도 점검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의 식품위생교육 및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시설 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배점기준	A-3-12-1 (1점) (감점10점)	<p>(1점) 3개년도 사업장 현장점검 이행 시</p> <p>(0.7점) 2개년도 사업장 현장점검 이행 시</p> <p>(0.4점) 1개년도 사업장 현장점검 이행 시</p> <p>(0점) 3개년 모두 현장점검 미 이행 시</p> <p>(감점 10점) 평가대상 기간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부패 등 심각한 사항으로 1회 이상 시정명령,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종합점수에서 감점(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규정)</p>				
증빙자료 (예시)	A-3-12-1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자료, 지자체 현장점검 공문, 직원인터뷰 등				

구분	B-1. 운영성과 - 경영관리				뱅크		마켓		속 성	정 량
					당 연	임 의	당 연	임 의		
					○	○	○	○	배 점	3점
지표명 (지표번호)	B-1-13. 사업계획 및 운영 관리	B-1-13-1	○ 사업 계획 수립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B-1-13-2	○ 사업운영 관리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여부 및 활용관리 수준 등을 평가함 									
평가내용	B-1-13-1	○ 사업 계획 수립 여부 【해설】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에 제시된 사업계획서의(아래내용 참조) 내용이 기초푸드뱅크·마켓의 연도별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인함(서식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내용 포함 여부 확인)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계획서(예시) ① 기관소개 : 설립목적, 주요사업, 조직체계 ② 사업의 필요성(사업의 당위성 및 운영의지 기술) ③ 설치·운영사업 계획 - 사업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현황(최근 3년) - 식품·생활필수품 기부업체 및 이용자 발굴 및 관리계획 - 사업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 및 상담계획 - 사업장 설치 위치(이용자 접근가능성) 및 시설·장비 현황 - 사업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단체와의 사업연계 및 구축 계획 - 사업운영 인력에 따른 업무분장 계획(담당인력 등 자원봉사자) -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추진일정 - 기대효과 ④ 사업예산 계획 ⑤ 기타 사업지역 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B-1-13-2	○ 사업운영 관리 【해설】 - 수립된 사업(운영)계획 내용이 실행가능하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었고, 사업기간 중 진도 및 성과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함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결과보고서 등 (항목) ① 설치·운영사업 계획 대비 성과 ② 사업예산 계획 대비 사용 * 정부·지자체 보고자료, 수입·지출결의서, 분기별 결과보고 등								
배점기준	B-1-13-1 (2점)	2점 예시된 항목의 5가지 항목을 포함 1.6점 예시된 항목의 4가지 항목을 포함 1.2점 예시된 항목의 3가지 항목을 포함 0.8점 예시된 항목의 2가지 항목을 포함 0.4점 예시된 항목의 1가지 항목을 포함 0점 사업계획 미수립								
	B-1-13-2 (1점)	1점 예시된 항목의 2가지 항목을 포함 0.5점 예시된 항목의 1가지 항목을 포함 0점 결과보고(지자체 보고 등) 미작성 *배점: 3개년을 평균으로 계산함 예시: (21년+22년+23년)/3								
증빙자료 (예시)	B-1-13-1	정량평가								
	B-1-13-2	정기회의, 점검회의, 관련 보고자료, 결재서류 등								

구분	B-1. 운영성과 - 경영관리				뱅크	마켓	속 성	정량
					당 연	임 의		
					○	○	배 점	4점
지표명 (지표번호)	B-1-14. 사업 교류 협력 및 홍보	B-1-14-1	○ 지역사회 연계활동(교류협력)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B-1-14-2	○ 기부식품등 사업 홍보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자원관리 네트워크 체계 구축 여부 및 활동 수준, 기부식품등 홍보활동 실적 등을 평가함 							
평가내용	B-1-14-1	<p>○ 지역사회 연계활동(교류협력)</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 차원에서 아래에 예시된 바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함(일회성 및 홍보성 행사는 사업홍보에서 별도로 평가함) <p>※ 지역사회 연계활동(교류협력) 예시</p> <p>① 지자체와의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시·군·구·읍·면·동사무소)와의 정기적/부정기적 회의 등을 통해 사업관리 (이용자 추천, 사업 확대 등)와 사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가? 지자체 회의 자료, 공문 등을 통해 정기/부정기적 사업공유 및 관련 활동자료 등을 확인 <p>② 자체 활동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사업계획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지역 기업/기관과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가? 사업계획서 또는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관련 활동자료 등을 확인함 <p>※ 공문, 계획, 결과보고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만 인정</p>						
	B-1-14-2	<p>○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홍보</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홍보를 위해 자체적인(지자체 지원 포함) 활동이나 전국·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연계한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실행 내용을 확인함 <p>※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홍보자료 인정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매체, 홍보물, 현수막 등 홍보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며, 언론보도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횟수로 여러 차례 보도되었거나 내용을 동일하나 매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건으로 인정되지 않음 기초푸드뱅크·마켓 또는 타 기초푸드뱅크·마켓과 함께 연계한 홍보의 경우 명칭 포함된 경우 사업장 실적 인정 동일한 캠페인은 년 1회만 인정하고,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인쇄물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은 해당기간에 수행되었다는 증빙(내부문서, 사진자료, 발송내역서 등) 내용은 동일하지만 홍보활동 주체나 주관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홍보활동으로 인정되며, 동일한 내용을 홍보방법을 달리하여 시행할 경우 별건으로 인정됨 SNS 홍보의 경우에는 홍보의 내용이 반드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어야 하고, 개인 계정을 활용하거나 단순 댓글 수준의 내용은 인정되지 않음. 						
배점기준	B-1-14-1 (3점)	우수(3점) 예시된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매년 4가지 이상 수행 시 양호(2점) 예시된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매년 3가지 이상 수행 시 보통(1점) 예시된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매년 2가지 이상 수행 시 미흡(0점) 예시된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매년 1가지 이하 수행 시						
	B-1-14-2 (1점)	(1점) 자체적인 홍보물(팸플렛, 전단지,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포함하여 전체 활동실적 10건 이상일 때 (0.5점) 자체적인 홍보물을 포함하여 전체 활동실적이 6건 이상일 때 (0점) 자체적인 홍보물을 포함하여 전체 활동실적이 5건 이하일 때						
증빙자료 (예시)	B-1-14-1	지역사회 연계활동(교류협력) 관련 자료 : 협력사업 계획서, 업무협약서, 협력회의 참석관련 문서, 의견수렴 및 환류관련 문서 등)						
	B-1-14-2	해당 실적자료 확인(문서, 사진 등)						

구분	B-1. 운영성과 - 경영관리				속 성	정 량
	뱅크		마켓		배 점	4점
	당 연	임 의	당 연	임 의		
				○ ○	○ ○	
지표명 (지표번호)	B-1-15. 운영위원회	B-1-15-1	○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B-1-15-2	○ 운영(자문)위원회 활동 및 관리			
지표근거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운영관리 활동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B-1-15-1	<p>○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내실화, 운영 투명성 확보, 교육 등을 위한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함 <p>※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은 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내실화, 운영 투명성 확보,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 3인 이상(23년 5인구성)의 구성시 인정되며,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명칭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과 관련되어 운영할 경우 인정되며, 시설 등의 운영주체의 다른 사업의 운영위원회와 중복으로 구성되는 것은 인정되나, 별도의 안건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문서(결과보고서 등)를 제시해야 함 <p>※ 운영(자문/실무)위원회 구성 항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운영(자문/실무)위원회를 설치 했는지 운영위원회 계획 등 내부 기안 확인함. ② 운영(자문/실무)위원회 구성이 다양하게 되었는지 확인함. (21년, 22년 3인 / 23년 5인) <p>※ 한 개 분야의 전문가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예외(예시 구성인이 기부처, 이용자, 학계 등 한 개 분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미준수로 판단)</p>				
	B-1-15-2	<p>○ 운영(자문)위원회 활동 및 관리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내실화, 운영 투명성 확보, 교육 등을 위한 운영(자문)위원회가 아래에 예시된 바와 같이 적절하게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가를 평가함 <p>※ 운영(자문)위원회 활동 및 관리 항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운영(자문)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활동)했는지 확인함. ② 운영(자문)위원회 지침 및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 지침이나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를 운영위원회 규정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함 ③ 운영(자문)위원회의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문)위원회가 운영(자문)위원회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해당되는 사항이 회의 내용이나 안건(사업계획, 예산계획, 교육계획 등)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운영회의록 및 관련자료 등을 통해 확인함 ④ 운영(자문)위원회 결과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제 사업에 반영되었거나 반영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함 				
배점기준	B-1-15-1 (2점)	(2점) 항목 내용을 매년 2가지 이상 수행 시 (1점) 항목 내용을 매년 1가지 이상 수행 시 (0점) 항목 을 수행하지 않을 시				
	B-1-15-2 (2점)	(2점) 항목 내용을 매년 4가지 이상 수행 시 (1.5점) 항목 내용을 매년 3가지 이상 수행 시 (1.0점) 항목 내용을 매년 2가지 이상 수행 시 (0.5점) 항목 내용을 매년 1가지 이상 수행 시 (0점) 항목 내용을 수행하지 않을 시				
	*배점: 3개년을 평균으로 계산함 예시: (21년+22년+23년)/3					
증빙자료 (예시)	B-1-15-1 B-1-15-2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참여자 명단, 계획서, 결과보고서, 회의록 등				

구분	B-2. 운영성과 - 위생/안전			뱅크	마켓	속 성	정량	
				당 연	임 의			당 연
				○	○	○	○	배 점
지표명 (지표번호)	B-2-16.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B-2-16-1	○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및 평가시점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의 위생보관 및 안전성 확보관리 등을 평가함 							
평가내용	B-2-16-1	<p>○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p> <p>【해설】</p> <p>- 기부식품등 제공사업과 관련된 보관창고, 매장, 운반차량, 냉동·냉장시설 등 시설, 장비, 기자재 등에 대하여 지자체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실제 현장에서 관련 시설, 장비, 기자재 등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함(먼지, 환기여부, 냄새, 곰팡이 등 육안으로 확인하여 평가함)</p> <p>* 점검항목</p> <p>① 매장, 기자재, 운반차량, 냉동·냉장 시설 등의 위생점검 표를 갖추고 있는가? ※ 통합 또는 각각의 위생점검이 표시 된 점검표가 있는지 확인</p> <p>② 매일 장비, 기자재, 위생점검표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 매일, 매주 등 주기적으로 청소 등 위생관리를 위한 활동을 하는지 확인</p> <p>③ 시설, 장비, 기자재 등의 상태가 육안(곰팡이, 녹, 냄새 등)으로 사용 가능하고 청결한 상태인가?</p>						
배점기준	B-2-16-1 (3점)	<p>(3점) 항목 내용 중 3가지 이상 준수</p> <p>(2점) 항목 내용 중 2가지 이상 준수</p> <p>(1점) 항목 내용 중 1가지 이상 준수</p> <p>(0점) 미 준수</p>						
	*배점: 3개년을 평균으로 계산함 예시: (21년+22년+23년)/3							
증빙자료 (예시)	B-2-16-1	현장점검(보관창고, 매장, 운반차량, 냉동·냉장시설 등), 위생 점검일지, 점검표, 지자체 관련 공문 및 결과자료, 직원인터뷰						

구분	B-2. 운영성과 - 위생/안전			뱅크	마켓	속 성	정량		
				당 연	임 의	당 연	임 의	배 점	6점
				○	○	○	○		
지표명 (지표번호)	B-2-17. 식품등 위생관리	B-2-17-1	○ 기부식품등 위생/안전관리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및 평가시점		
		B-2-17-2	○ 기부식품등 배분기한 준수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의 위생보관 및 안전성 확보관리 등을 평가함 								
평가내용	B-2-17-1	○ 기부식품등 위생·안전 관리 【해설】 - 아래의 3가지 현황을 확인함 ① 표시관리 적정성 : 보관·진열중인 식품/생활용품의 명칭, 내용, 배분기한 등의 표시관리가 적정한가를 확인함(보관중인 식품 3개와 생활용품 2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표시관리 현황을 확인함) * 기부식품 등이 없는 경우 사진 등 증빙 ② 구분관리 적정성 : 보관·진열중인 식품/생활용품은 유형별, 배분기한별(배분기한 임박 상품의 별도 구분 등)로 적절하게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함 * 기부식품 보관장소에서 구분관리 ③ 이용자 안내 적정성 : 제공물품의 특성(배분기한 임박 등), 보관 및 취식방법, 배분기한, 판매 및 교환금지, 무상제공 등의 안내를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과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는가를 확인함 ※ 실제 샘플을 보유하도록 안내 물건이 없으면 사진, 동영상, 관리 계획안 증빙 자료 필요							
	B-2-17-2	○ 기부식품등 배분기한 준수 【해설】 - 보관·진열중인 식품/생활용품의 배분기한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함(보관·진열중인 3개와 생활용품 2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배분기한 준수 및 변색/부패 여부를 확인함) ※ 현장에 물품이 없는 경우 FMS상 기부물품을 무작위로 확인하여 배분기한을 준수하는 지 확인 ※ 현장에 물건이 있으면 FMS상에 식품 1개 생활용품 1개							
배점기준	B-2-17-1 (5점)	(5점) 현장 확인 항목 중 3가지 준수 (3점) 현장 확인 항목 중 2가지 준수 (1점) 현장 확인 항목 중 1가지 준수 (0점) 미준수							
	B-2-17-2 (1점)	(1점) 현장 무작위 배분기한 5개 모두 배분기한 준수 시 (0점) 현장 무작위 5개 점검 시 배분기간 경과가 1건 이상 확인 시 또는 변색/상함/부패 1건 이상 확인 시							
증빙자료 (예시)	B-2-17-1	현장 확인 및 시스템 확인, 관련자료 및 서류, 직원인터뷰							
	B-2-17-2	현장 및 시스템 확인							

구분	B-2. 운영성과 - 위생/안전				속 성	정량
	뱅크		마켓		배 점	1점
	당 연	임 의	당 연	임 의		
		○	○	○	○	
지표명 (지표번호)	B-2-18. 식품사고 관리	B-2-18-1	○ 식품사고 대처관리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수준 등을 평가함 					
평가내용	B-2-18-1	<p>○ 식품사고 대처관리</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사고 발생 시 지침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응방법(지침, 매뉴얼 등)을 갖추고 있고, 관련된 비상연락망(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이 비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함 (실제사례가 있을 경우 지침에 부합한 대응 여부 확인) <p>※ 기부생활용품 이용 사고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생활용품 이용과 관련한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는 관할 보건소 및 시·군·구청에 즉시 보고 시·군·구 담당자는 기부생활용품 이용 관련 사고를 조사하여 사고 경위, 피해 상황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에 우선 보고 시·군·구 담당자 및 사업자는 조치계획에 따라 기부생활용품 이용 관련 사고에 대해 조치하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에 신속히 보고 				
배점기준	B-2-18-1 (1점)	<p>(1점) 식품사고 시 대응방법 및 비상연락망 보유 및 비치 시</p> <p>(0점) 대응방법이나 비상연락망 미보유 및 미비치 시 또는 평가 대상기간 내 지침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으로 행정조치 등을 받은 경우</p>				
증빙자료 (예시)	B-2-18-1	사고발생 보고 자료(공문 등), 비상연락망				

구분	B-3. 운영성과 - 모집/배분			뱅크		마켓		속 성	정성
				당 연	임 의	당 연	임 의	배 점	2점
				○	○	○	○		
지표명 (지표번호)	B-3-19. 기부자(처) 관리	B-3-19-1	○ 기부자(처) 관리의 적정성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관련 기부자(처)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B-3-19-1	<p>○ 기부자(처) 관리의 적정성</p> <p>【해설】</p> <p>- 아래의 3가지 현황을 확인함</p> <p>① 관리계획서 보유 : 기부자(처) 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가를 확인함</p> <p>※기부자(처) 발굴·관리·제외 등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 보고서 등</p> <p>② 관리계획 실행 : 기부자(처) 관리계획에 근거한 관리의 실행여부 및 정도와 실제 실행사례(기부협약, 감사서신, 시상 및 수상추천, 기부자 관리카드 등)을 확인함</p> <p>③ 의견수렴 제도 : 기부자(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만족도 조사, 운영위원회, 공문 회신 등)나 절차가 있는가를 확인함</p>							
배점기준	B-3-19-1 (2점)	<p>우수(2점) 관리계획서 보유, 관리계획 실행, 의견수렴 제도가 모두 양호한 경우</p> <p>보통(1점) 관리계획서 보유, 관리계획 실행, 의견수렴 제도 중 1가지 이상이 미흡한 경우</p> <p>미흡(0점) 관리계획서 보유, 관리계획 실행, 의견수렴 제도 모두 미흡한 경우</p>							
증빙자료 (예시)	B-3-19-1	해당 실적자료(문서, 사진 등)							

구분	B-3. 운영성과 - 모집/배분				속 성	정성	
	뱅크		마켓		배 점	6점	
	당 연	임 의	당 연	임 의			
			○	○			
지표명 (지표번호)	B-3-20. 배분 및 이용관리	B-3-20-1	○ 배분 및 이용관리의 적정성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B-3-20-2	○ 배분 및 이용관리의 공정성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배분 및 이용관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B-3-20-1	<p>○ 배분 및 이용관리의 적정성</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배분/이용관리의 적정성 및 공정성 평가를 위해 아래의 3가지 현황을 확인함 ① 배분/이용 관리 계획 : 기부식품등 배분(이용) 관리계획서나 관련 자료의 보유여부 및 내용을 확인함(이용자 및 지역특성 반영한 적정 배분계획 등) ② 관리계획 실행 : 기부식품등 배분(이용) 관리계획에 근거한 관리의 실행여부 및 정도를 확인함 ③ 의견수렴 제도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나 절차가 있는가를 확인함(간담회,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의견조사 등) 					
	B-3-20-2	<p>○ 배분 및 이용관리의 공정성</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 기간 설정·운영 및 이용자 변경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 배분·이용관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가를 확인함 <p>※ 기부식품등 제공 기간 설정·운영 및 이용자 변경(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9개월, 1년 등)로 제공 기간을 설정해 기부식품등을 제공. 다만 상담을 통하여 기부식품등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 제공 기간 연장과 관련한 상담자료 등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지자체 등으로부터 연장신청 시 '이용대상자 지원연장 요청서(문서, 확인서)'로 같음 시설·단체에 불가피하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 단위로 교체하며, 개인이용자로의 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 					
배점기준	B-3-20-1 (3점)	<p>우수(3점) 배분/이용 관리 계획, 관리계획 실행, 의견수렴 제도 등의 수행이 모두 양호한 경우</p> <p>양호(2점) 배분/이용 관리 계획, 관리계획 실행, 의견수렴 제도 중 한 가지가 미흡한 경우</p> <p>보통(1점) 배분/이용 관리 계획, 관리계획 실행, 의견수렴 제도 중 두 가지가 미흡한 경우</p> <p>미흡(0점) 배분/이용 관리 계획, 관리계획 실행, 의견수렴 제도 등의 수행이 모두 미흡한 경우</p>					
	B-3-20-2 (3점)	<p>우수(3점) 제공 기간 설정·운영, 이용자 변경 등 배분/이용관리의 공정성이 양호하고 관련 자료를 잘 갖춘 경우</p> <p>양호(2점) 제공 기간 설정·운영, 이용자 변경 등 배분/이용관리의 공정성이 양호하나 관련 자료를 잘 갖추지 못한 경우</p> <p>보통(1점) 제공 기간 제공 기간 설정·운영 및 이용자 변경 중 하나가 미흡함</p> <p>미흡(0점) 제공 기간 제공 기간 설정·운영 및 이용자 변경이 모두 미흡한 경우</p>					
증빙자료 (예시)	B-3-20-1	<p>배분(이용) 관리계획서 및 실행내역 문서, 의견수렴 관련 자료 및 실적(문서, 사진 등), 이용자별 이용 실적 자료, 상담자료, 지자체 공문 등</p>					
	B-3-20-2						

구분	B-3. 운영성과 - 모집/배분				뱅크	마켓	속 성	정성	정량
					당 연	입 의			
					○	○	○	○	배 점
지표명 (지표번호)	B-3-21. 이용자 관리 (개인, 단체)	B-3-21-1	○ 이용자 선정 및 관리의 적정성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이용자, 단체시설)의 적정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B-3-21-1	<p>○ 이용자 선정 및 관리의 적정성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정한 이용자 선정 및 관리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2가지 현황을 확인함 ① 이용자 선정 및 관리 현황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대상자를 지자체 보유정보를 활용하여 협의 후 선정하고 지침에 의거 주기적으로 교체하는가의 여부, 이용신청서 및 이용자 관리대장의 보유 여부, 그리고 장부상의 이용자에게 실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함(지자체에서 대상자 정보 중 필수항목을 이관 받은 경우 이용신청서 미보유 인정) ② 개인이용자 우선 지원 지침 준수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식품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 등 '개인이용자 우선 지원'과 관련된 지침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함 <p>※ 이용자 선정 : 개인이용자 우선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식품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라 함은 ①긴급지원대상자, ②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가·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③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④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함(각종 조사결과 반영, 상담 실시 등) 이용대상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를 받아 보관 다만 지자체 상황을 감안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에게 제공 가능(가족구성원수·경제활동·학비 등 감안, 상담실시) 							
배점기준	B-3-21-1 (5점)	이용자 선정 및 관리	지원 지침 준수						
			제공 금액기준 지원 기준		제공 인원 수 기준				
		우수 3점	1점	개인 이용자 60% 이상 지원	1점	개인 이용자 60% 이상 지원			
		보통 1.5점	0.7점	개인 이용자 60% 미만 50% 이상 지원	0.7점	개인 이용자 60% 미만 50% 이상 지원			
		미흡 0점	0.4점	개인 이용자 50% 미만 40% 이상 지원	0.4점	개인 이용자 50% 미만 40% 이상 지원			
			0점	개인 이용자 40% 미만 지원	0점	개인 이용자 40% 미만 지원			
증빙자료 (예시)	B-3-21-1	이용신청서, 관리대장, 지자체 협의선정 관련자료(공문 등)							

구분	B-3. 운영성과 - 모집/배분			뱅크		마켓		속 성	정성
				당 연	임 의	당 연	임 의		
				○	○	-	-	배 점	1점
지표명 (지표번호)	B-3-21. 이용자 관리 (개인, 단체)	B-3-21-2	○ 단체/시설 이용관리의 적정성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이용자, 단체시설)의 적정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B-3-21-2	<p>○ 단체/시설 이용관리의 적정성</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내 시설/단체 이용자를 적정하게 파악하고 구분하여 관리하며, 지침에 맞게 배분하고 있는가를 확인함 <p>※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부터 비용·실비 등을 받는 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 금지 다만, 기부자가 배분대상을 지정하는 지정기부시 또는 유통기한 임박식품이 대량으로 기부된 경우, 급히 배분해야 할 대규모의 시선식품 기부 시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 지자체의 확인을 통하여 정부지원이 미흡하고, 식품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에는 제공 가능 시설·단체에 기부식품을 제공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시설·단체에 균형 있게 배분 사업장(푸드뱅크·마켓)의 운영주체가 개최하는 바자회·행사, 정치·종교적 목적을 위한 행사 및 종교기관·단체 등에는 기부물품 제공 금지 <p>* 마켓은 개인이용자 100% 지원 시 1점을 준다.</p>							
배점기준	B-3-21-2 (뱅크 1점)	<p>우수(1점) 단체/시설 이용자 관리가 우수하고 배분 지침을 준수함</p> <p>보통(0.5점) 단체/시설 이용자 관리나 배분 지침 준수 중 한 가지가 미흡함</p> <p>미흡(0점) 단체/시설 이용자 관리나 배분 지침 준수가 모두 미흡함</p>							
증빙자료 (예시)	B-3-21-2	단체/시설 이용자 관리대장, 배부내역 등							

구분	B-4. 운영성과 - 행정관리				뱅크	마켓	속 성	정 량
					당 연	임 의		
					○	○	○	○
지표명 (지표번호)	B-4-22.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활용	B-4-22-1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및 관리 적절성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B-4-22-2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능력						
지표근거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및 관리수준을 평가함							
평가내용	B-4-22-1	<p>○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및 관리 적절성</p> <p>【해설】</p> <p>-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및 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2가지 현황을 확인함</p> <p>①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발급 영수증 증빙관리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를 활용한 영수증 증빙을 적절하게 발급 및 관리(기부식품등 접수 및 배분, 이용자 정보입력 등)하고 있는지를 확인함(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 영수증 미발급 경우에는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접수 기부내역 관리시 인정) (샘플 3개를 선정하여 평가)</p> <p>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시스템과 실제 접수 및 배분현황 비교(샘플 3개를 선정하여 평가)</p>						
	B-4-22-2	<p>○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능력</p> <p>【해설】</p> <p>- 전담직원이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FMS입력 자료/정보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고 오류가 없는지를 직접 시연 및 인터뷰를 통해 확인함(접수, 배분, 기부자, 이용자 각 1개씩 총 4개 샘플을 선정하여 평가)하여 평가함</p>						
배점기준	B-4-22-1 (2점)	(2점) 평가 항목중 2가지 이상 준수 (1점) 평가 항목중 1가지 이상 준수 (0점) 평가 항목 미준수						
	B-4-22-2 (2점)	(2점) 예시상황에 대한 4개 샘플 추출 확인 및 인터뷰를 통한 직무이해 적합 시 (0점) 잘 모르거나 틀리는 경우(1개라도 접수, 배분, 기부자 및 이용자 정보누락 또는 오류 시)						
증빙자료 (예시)	B-4-22-1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증빙영수증, 등록관리 자료현황, 접수대장, 배분대장 등						
	B-4-22-2	직원 인터뷰 및 4개 현장 샘플 확인						

구분	B-4. 운영성과 - 행정관리				속 성	정량
	은행		마켓		배 점	2점
	당 연	임 의	당 연	임 의		
지표명 (지표번호)	B-4-23. 행정문서 관리	B-4-23-1	○ 행정문서 관리 적정성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문서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B-4-23-1	<p>○ 행정문서 관리 적정성</p> <p>【해설】 3가지 현황을 확인함</p> <p>① 문서관리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모집 및 제공에 관한 내용이 문서유형별로 모두 작성 및 보관·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함(기부식품 접수문서대장, 기부식품 배분문서내역, 기부자 관리내역, 이용자 문서 수발신 대장 등 보유해야 하는 문서들의 파일철이 되어 있는가?, 문서가 연도별로 잘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는가?)</p> <p>② 관련 문서철 보관관리 : 관련 장부 등을 보관하는 장소 또는 가구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주요 개인정보자료 등의 비밀 보안이 필요한 문서 등을 위한 시건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함.</p> <p>③ 전산 문서에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문서들은 보안(비밀번호, 폐기 등)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함.</p>				
배점기준	B-4-23-1 (2점)	<p>(2점) 평가 항목중 3가지 이상 준수</p> <p>(1.4점) 평가 항목중 2가지 이상 준수</p> <p>(0.7점) 평가 항목중 1가지 이상 준수</p> <p>(0점) 미준수</p>				
증빙자료 (예시)	B-4-23-1	기부식품등 접수 및 배분 관련 자료, 기부자 및 이용자 관련 자료 등				

구분	B-4. 운영성과 - 행정관리			뱅크	마켓	속 성	정 량
				당 연	임 의		
				○	○	○	○
지표명 (지표번호)	B-4-24. 정보공개 관리	B-4-24-1	○ 정보공개 관리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정보 공개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B-4-24-1	<p>○ 정보공개 관리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정보(접수, 배분, 기부자, 이용자 등)를 홈페이지(자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자체 포함)이나 자료를 통해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가를 확인함(1개 이상 정보공개 경로 보유여부) * 다음연도 3월까지 입력 기준 예시) 21년 3월은 20년도 정보 입력 					
배점기준	B-4-24-1 (1점)	<p>(1점) 사업장의 정보를 홈페이지(사업장, 운영주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등)를 통해 상시 공지 시</p> <p>(0점) 현장 확인 시 공개가 되지 않거나 확인이 안 되는 경우</p>					
증빙자료 (예시)	B-4-24-1	홈페이지 관련 자료 공개 내용					

구분	B-4. 운영성과 - 행정관리				속 성	정량
	뱅크		마켓		배 점	3점
	당 연	임 의	당 연	임 의		
		○ ○	○ ○			
지표명 (지표번호)	B-4-25. 예산관리	B-4-25-1 ○ 예산의 편성(수립)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B-4-25-2 ○ 예산의 집행				
지표근거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 연도별 예산관련 장부관리가 이루어지며, 적절한 예산관리를 하고 있는지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B-4-25-1	○ 예산의 편성(수립) 【해설】 - 예산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현황을 확인함 ① 연 단위 예산계획 : 연도별 예산 관련 운영계획(예산확보, 운용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를 확인함 - (예산서 보유 여부 / 교부신청, 정산보고 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규정한 재무회계 기준에 부합하게 편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10조				
	B-4-25-2	○ 예산의 집행 회계 집행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규정한 재무회계 기준에 부합하게 회계관리가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함 ① 회계처리 증빙서류 관리 : 회계처리(결산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함(연도별, 예산항목별 등 (수입결의서, 지출결의 증빙이 잘 되어있는가를 확인함)) ② 통장과 지출에 대한 증빙이 일치여부를 확인함. * 오프라인 통장정리 된 것을 증빙 우선으로 한다. (잔액증빙 등 확인) ※ 지자체 지원(전액, 일부) 및 자부담 예산이나 회계처리를 포함하여 평가함				
배점기준	B-4-25-1 (1점)	1점 예산서(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보유 시				
		0점 예산서(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미 보유 시				
	B-4-25-2 (2점)	2점 평가항목 중 2가지 이상 준수 시				
		0점 평가항목 중 1개 이상 미 준수 시				
증빙자료 (예시)	B-4-25-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예산계획,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관련 자료				

구분	B-4. 운영성과 - 행정관리				속 성	정량
	뱅크		마켓		배 점	1점
	당 연	임 의	당 연	임 의		
		○	○	○	○	
지표명 (지표번호)	B-4-26. 지자체 지원	B-4-26-1	○ 지자체 지원관리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푸드뱅크·마켓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활동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 여부와 사업지원의 수준을 평가함 					
평가내용	B-4-26-1	<p>○ 기부식품등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 여부</p> <p>【해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관한 지자체의 관심과 활동수준을 조례제정 여부를 통해 확인함</p> <p>※ 지자체 관련 조례제정 여부는 법적강제 이행사항이 아니나 지자체의 기부식품등 지역 내 사업참여와 관심, 지원 등의 중요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로 관련 조례제정 여부만을 기준으로 평가(지자체 관련사업 기안문, 시행문 등이 있더라도 미인정)</p> <p>○ 신고사업장 지자체 인건비 지원 여부</p> <p>【해설】 지자체에서 관할 사업장별 전담직원의 인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담직원 1인의 인건비 100% 지원 여부</p>				
배점기준	B-4-26-1 (1점)	지자체 관련 조례 여부		지자체 인건비 지원 여부		
		(0.5점) 있음(평가시점)	(0점) 없음(평가시점)	(0.5점) 인건비 100% 지원 시(해당연도 모두)	(0점) 지원 없거나 100% 미만 지원 또는 2개년도 이하 100% 지원 시	
증빙자료 (예시)	B-4-26-1	지자체 관련 조례자료, 지자체 지원인건비 자료				

구분	C-1. 사업성과 - 접수실적				배 점	정량
	뱅크		마켓		배 점	정량
	당 연	임 의	당 연	임 의		
						4점
지표명 (지표번호)	C-1-27. 접수 환가액	C-1-27-1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접수 환가액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C-1-27-2	○ '20년 부터 '23년 기부식품등 접수 환가액 증가율			
		C-1-27-3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접수 환가액			
지표근거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 기부식품등 접수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 평균)을 평가함					
평가내용	C-1-27-1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접수 환가액(평균대비 실적평가 100% : 2023년) 【해설】 - 기부 받은 식품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하고,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등록 접수환가액(전국/광역 및 타 사업장 이관 기부식품등은 불포함 - 중복 실적 배제)				
	C-1-27-2	○ '20년 부터 '23년도 기부식품등 접수 환가액 증가율(목표부여 상향평가 100%)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20년 부터 '23년(매년 전년대비) 기부식품 접수량을 비교 (센터/타 이관 제외)				
	C-1-27-3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접수 환가액(평균대비 실적평가 100%)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최근 3년간 평균 기부식품 환가액을 비교 (타 센터/사업장 이관 제외)				
배점기준	C-1-27-1 (2점)	○ 뱅크/마켓 지역별 특성그룹(3개 지역군)별 상대평가 - 당해연도 평가대상의 자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총 장부가액) / 지역 그룹유형 내 전체 기부식품 접수 환가액 평균 * 110%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이하 사업실적 공통사항 : 사업장 신고 3년 미만 경우 별도 산식적용)				
	C-1-27-2 (1점)	○ 각 뱅크/마켓별 절대평가 - (실적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최저목표) 산식: (20년대비 21년 비율(최대1점) + 21년대비 22년 비율(최대1점) + 22년 대비 23년 비율(최대1점)) / 3년 * 1점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				
	C-1-27-3 (1점)	○ 뱅크/마켓 지역별 특성그룹(3개 지역군)별 상대평가 -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장 접수환가액 / 유형 내 3년 접수환가액 평균 * 110%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				
증빙자료 (예시)	C-1-27-1 C-1-27-2 C-1-27-3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사업장별 관련DATA 자료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 기부물품 관리 → 기부물품 접수관리)				

구분	C-1. 사업성과 - 접수실적				뱅크	마켓	속 성	정량
					당 연	임 의		
					○	○	○	○
지표명 (지표번호)	C-1-28. 접수 건수	C-1-28-1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접수 건수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C-1-28-2	○ '20년 부터 '23년 기부식품등 접수 건수 증가율						
	C-1-28-3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접수 건수						
지표근거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 기부식품등 접수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 평균)를 평가함							
평가내용	C-1-28-1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접수 건수(평균대비 실적평가 100% : 2023년) 【해설】 - 기부 받은 식품을 건수를 파악하여 사업장의 활동수준을 파악하며,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등록 접수건수(전국,광역) 및 타 사업장 이관 기부식품등은 불포함- 중복 실적 배제)						
	C-1-28-2	○ '20년 부터 '23년도 기부식품등 접수 건수 증가율(목표부여 상향평가 100%)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20년 부터 '23년(매년 전년대비) 기부식품 접수량을 비교(타 센터/사업장 이관 제외)						
	C-1-28-3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접수 건수(평균대비 실적평가 100%)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사업장의 3년간 자체 접수건수를 비교(센터/타 이관 제외)						
배점기준	C-1-28-1 (1점)	○ 뱅크/마켓 지역별 특성그룹(3개 지역군)별 상대평가 - 당해연도 평가대상의 자체 기부식품 접수 건수(총 장부가액) / 지역 그룹유형 내 전체 기부식품 접수 건수의 평균 * 110%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이하 사업실적 공통사항 : 사업장 신고 3년 미만 경우 별도 산식 적용)						
	C-1-28-2 (1점)	○ 각 뱅크/마켓별 절대평가 - (실적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최저목표) 산식: (20년대비 21년 비율(최대1점) + 21년대비 22년 비율(최대1점) + 22년 대비 23년 비율(최대1점)) / 3년 * 1점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						
	C-1-28-3 (1점)	○ 뱅크/마켓 지역별 특성그룹(3개 지역군)별 상대평가 -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장 접수건수 / 유형 내 3년 접수건수 평균 * 110%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						
증빙자료 (예시)	C-1-28-1 C-1-28-2 C-1-28-3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사업장별 관련DATA 자료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 기부물품 관리 → 기부물품 접수관리)						

구분	C-1. 사업성과 - 접수실적				뱅크	마켓	속 성	정량		
					당 연	임 의	당 연	임 의	배 점	3점
					○	○	○	○		
지표명 (지표번호)	C-1-29. 기부자 (처) 수	C-1-29-1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수	C-1-29-2	○ '20년 부터 '23년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수 증가율	C-1-29-3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수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 평균)를 평가함 									
평가내용	C-1-2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수(평균대비 실적평가 100% : 2023년) 【해설】 - 사업장의 기부자(처) 수를 파악하여 사업장의 안정적 활동수준을 파악함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C-1-2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부터 '23년도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수 증가율(목표부여 상황평가 100%)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20년 부터 '23년(매년 전년대비) 기부자(처) 수를 비교 								
	C-1-2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수(평균대비 실적평가 100%)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사업장의 3년간 기부자(처)를 비교 								
배점기준	C-1-29-1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뱅크/마켓 지역별 특성그룹(3개 지역군)별 상대평가 - 당해연도 평가대상의 사업장의 기부자(처) 수 / 지역 그룹유형 내 기부자(처)수 평균 * 110%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이하 사업실적 공통사항 : 사업장 신고 3년 미만 경우 별도 산식적용)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C-1-29-2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뱅크/마켓별 절대평가 - (실적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최저목표) 산식: (20년대비 21년 비율(최대1점) + 21년대비 22년 비율(최대1점) + 22년 대비 23년 비율(최대1점)) / 3년 * 1점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 								
	C-1-29-3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뱅크/마켓 지역별 특성그룹(3개 지역군)별 상대평가 -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장 기부자(처)수 / 유형 내 3년 기부자(처) 수 평균 * 110%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 								
증빙자료 (예시)	C-1-29-1 C-1-29-2 C-1-2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사업장별 관련DATA 자료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 기부물품 관리 → 기부물품 접수관리) 								

구분	C-2. 사업성과 - 배분실적				뱅크	마켓	속 성	정 량
					당 연	임 의		
					○	○	○	○
지표명 (지표번호)	C-2-30. 배분 환가액	C-2-30-1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배분(제공) 환가액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C-2-30-2	○ '20년 부터 '23년 기부식품등 배분(제공) 환가액 증가율						
	C-2-30-3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배분(제공) 환가액						
지표근거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 기부식품등 배분(제공)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 평균)을 평가함							
평가내용	C-2-30-1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배분(제공) 환가액(평균대비 실적평가 100% : 2023년)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당해연도 기부식품 배분(제공) 환가액을 파악(개인,단체,이관 구분)						
	C-2-30-2	○ '20년 부터 '23년도 기부식품등 배분(제공) 환가액 증가율(목표부여 상향평가 100%)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20년 부터 '23년(매년 전년대비) 기부식품 배분(제공) 환가액을 파악						
	C-2-30-3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배분(제공) 환가액(평균대비 실적평가 100%)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3년간의 기부식품 배분(제공) 환가액을 파악						
배점기준	C-2-30-1 (2점)	○ 뱅크/마켓 지역별 특성그룹(3개 지역군)별 상대평가 - (해당 사업장의 개인/단체/이관배분 환가액 * 개인(60%), 단체(30%), 이관(10%)) / 지역 그룹유형 내 배분환가액 평균* 110%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이하 사업실적 공통사항 : 사업장 신고 3년 미만 경우 별도 산식적용)						
	C-2-30-2 (1점)	○ 각 뱅크/마켓별 절대평가 - (실적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최저목표) 산식: (20년대비 21년 비율(최대1점) + 21년대비 22년 비율(최대1점) + 22년 대비 23년 비율(최대1점)) / 3년 * 1점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						
	C-2-30-3 (1점)	○ 뱅크/마켓 지역별 특성그룹(3개 지역군)별 상대평가 -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장 배분환가액 / 유형 내 3년 배분환가액 평균 * 110%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						
증빙자료 (예시)	C-2-30-1 C-2-30-2 C-2-30-3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사업장별 관련DATA 자료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 기부물품 관리 → 기부물품 제공현황)						

구분	C-2. 사업성과 - 배분실적				뱅크	마켓	속 성	정 량
					당 연	임 의		
					○	○	○	○
지표명 (지표번호)	C-2-31. 배분 건수	C-2-31-1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배분(제공) 건수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C-2-31-2	○ '20년 부터 '23년 기부식품등 배분(제공) 건수 증가율						
	C-2-31-3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배분(제공) 건수						
지표근거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 기부식품등 배분(제공)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 평균)를 평가함							
평가내용	C-2-31-1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배분(제공) 건수(평균대비 실적평가 100% : 2023년)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당해연도 기부식품 배분(제공) 건수를 파악						
	C-2-31-2	○ '20년 부터 '23년도 기부식품등 배분(제공) 건수 증가율(목표부여 상향평가 100%)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20년 부터 '23년(매년 전년대비) 기부식품 배분(제공) 환가액을 파악						
	C-2-31-3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배분(제공) 건수(평균대비 실적평가 100%)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3년간의 기부식품 배분(제공) 환가액을 파악						
배점기준	C-2-31-1 (1점)	○ 뱅크/마켓 지역별 특성그룹(3개 지역군)별 상대평가 - 해당 사업장의 배분건수 / 지역 그룹유형 내 배분환가액 평균* 110%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이하 사업실적 공통사항 : 사업장 신고 3년 미만 경우 별도 산식적용)						
	C-2-31-2 (1점)	○ 각 뱅크/마켓별 절대평가 - (실적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최저목표) 산식: (20년대비 21년 비율(최대1점) + 21년대비 22년 비율(최대1점) + 22년대비 23년 비율(최대1점)) / 3년 * 1점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						
	C-2-31-3 (1점)	○ 뱅크/마켓 지역별 특성그룹(3개 지역군)별 상대평가 -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장 배분(제공)건수 / 유형 내 3년 배분(제공)건수 평균 * 110%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						
증빙자료 (예시)	C-2-31-1 C-2-31-2 C-2-31-3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사업장별 관련 DATA 자료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 기부물품 관리 → 기부물품 제공현황)						

구분	C-2. 사업성과 - 배분실적				속 성	정량
	뱅크		마켓		배 점	3점
	당 연	임 의	당 연	임 의		
지표명 (지표번호)	C-2-32. 이용자 수	C-2-32-1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이용자 수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C-2-32-2	○ '20년 부터 '23년 기부식품등 이용자 수 증가율			
		C-2-32-3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이용자 수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이용자 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 평균)를 평가함 					
평가내용	C-2-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이용자 수(평균대비 실적평가 100% : 2023년, 개인/단체)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당해연도 기부식품 개인/단체 이용자 수 파악(가중치 : 개인 90%, 단체 10%) 				
	C-2-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부터 '23년도 기부식품등 이용자 수 증가율(목표부여 상황평가 100%, 개인/단체)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20년 부터 '23년(매년 전년대비) 배분 개인/단체 이용자의 전년대비 당해년 증가율 파악(가중치 : 개인 90%, 단체 10%) 				
	C-2-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이용자 수(평균대비 실적평가 100% : 개인/단체)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3년간의 기부식품 배분(제공) 개인/단체 이용자 현황 파악(가중치 : 개인 90%, 단체 10%) 				
배점기준	C-2-32-1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뱅크/마켓 지역별 특성그룹(3개 지역군)별 상대평가 - 해당 사업장의 개인이용자 수 / 지역 그룹유형 내 개인이용자 수 평균 * 110%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이하 사업실적 공통사항 : 사업장 신고 3년 미만 경우 별도 산식적용) 				
	C-2-32-2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뱅크/마켓별 절대평가 - (실적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최저목표) 산식: (20년대비 21년 비율(최대1점) + 21년대비 22년 비율(최대1점) + 22년 대비 23년 비율(최대1점)) / 3년 * 1점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 				
	C-2-32-3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뱅크/마켓 지역별 특성그룹(3개 지역군)별 상대평가 -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장 개인이용자 수 / 유형 내 3년 개인이용자 수 평균 * 110%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 				
증빙자료 (예시)	C-2-32-1 C-2-32-2 C-2-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사업장별 관련DATA 자료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 기부물품 관리 → 기부물품 제공현황) 				

3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지표 및 정의서

3.1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 평가현황표

영역	평가지표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표수	정량	정성	가점
I.법적기준 (30점)	A-1. 시설/장비	지원센터 신고	(1)	1	-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6)	5	-	+1
		업무시설	(1)	-	2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4)	4	-	+1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2)	2	-	+1
	A-2. 인적자원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2)	6	-	+1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2)	3	-	
		교육이수	(2)	3	-	+1
		근무여건	(2)	4	-	
	소계			28	2	+5
II.운영성과 (40점)	B-1. 경영관리	사업계획 및 운영관리	(2)	2	2	
		사업 교류협력 활동	(1)	3	-	
		운영위원회	(2)	3	-	
	B-2. 위생/안전	시설,장비,기자재 위생관리	(1)	2	-	
		식품등 위생관리(배분기한포함)	(2)	6	-	
		식품사고 관리	(1)	1	-	
	B-3. 모집/이관	기부자(처) 관리	(1)	-	4	
		기부식품등 이관 관리	(1)	-	4	
		사업장점검	(2)	3	-	
	B-4. 행정관리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2)	4	-	
		행정문서 관리	(1)	2	-	
		정보공개 관리	(1)	1	-	
			예산관리	(1)	3	-
소계			30	10		
III.사업성과 (30점)	C-1. 접수실적	환가액(당해연도,전년대비,3년평균)	(3)	4	-	
		건수(당해연도,전년대비,3년평균)	(3)	3	-	
		기부자(당해연도,전년대비,3년평균)	(3)	3	-	
	C-2. 배분(이관)실적	환가액(당해연도,전년대비,3년평균)	(3)	6	-	
		건수(당해연도,전년대비,3년평균)	(3)	4	-	
	C-3. 운영성과	운영지원 만족도(기초→광역평가)	(1)	-	5	
		행정지원 만족도(전국→광역평가)	(1)	-	3	
		광역지원센터 역할임무(교육운영지원)	(1)	-	2	
	소 계			20	10	
총 계			100점/+5점			

주) C-1, C-2의 실적성과 평가는 ' FMS 전산자료 수치 활용 '

3.2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평가지표	배점		가감점	세부 지표명	
			정량	정성			
A. 법적 기준 (30점) ±5	A-1. 시설/장비	1. 지원센터 신고	1			A-1-1-1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신고	
		2.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3		+1	A-1-2-1 ○ 보관창고 면적	
			2				A-1-2-2 ○ 보관창고 보유
							A-1-2-3 ○ 보관창고 사용 현황
							A-1-2-4 ○ 보관창고 시건장치 구비
							A-1-2-5 ○ 창고 내 물품과 바닥과의 이격거리
							A-1-2-6 ○ 창고 내부 및 주위 위생/청결 유지
		3. 업무시설		2		A-1-3-1 ○ 업무(조정, 배분 등)공간/시설 보유	
		4.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0.5			A-1-4-1 ○ 운반차량 소유 명의	
			2		+1	A-1-4-2 ○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1				A-1-4-3 ○ 차량 냉장/냉동 성능		
	0.5				A-1-4-4 ○ 차량 도색기준 준수		
	5.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1		+1	A-1-5-1 ○ 냉장/냉동시설 보유		
		1			A-1-5-2 ○ 냉장/냉동시설 성능		
	A-2. 인적자원	6. 전담인력 보유 및 관리	4		+1	A-1-6-1 ○ 전담 인력 보유	
			2			A-1-6-2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유	
		7.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2			A-1-7-1 ○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1			A-1-7-2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유	
		8. 교육이수	3			A-1-8-1 ○ 필수교육 수료	
					+1	A-1-8-2 ○ 권장교육 수료	
9. 근무여건		2			A-1-9-1 ○ 전담인력 인건비 수준		
	2			A-1-9-2 ○ 근무 여건			
B. 운영성과 (40점)	B-1. 경영관리	10. 사업계획 및 운영관리	2			B-1-10-1 ○ 사업 계획 수립	
				2		B-1-10-2 ○ 사업 운영·관리	
		11. 사업 교류협력 활동	3			B-1-11-1 ○ 지역사회 연계활동(교류협력)	
	12. 운영위원회	1			B-1-12-1 ○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2			B-1-12-2 ○ 운영(자문)위원회 활동 및 관리		
	B-2. 위생/안전	13.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2			B-2-13-1 ○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14. 식품등 위생 관리(배분기한포함)	5			B-2-14-1 ○ 기부식품등 위생/안전관리	
1					B-2-14-2 ○ 기부식품등 배분기한 준수		
15. 식품사고 관리	1			B-2-15-1 ○ 식품사고 대처관리			

대분류	중분류	평가지표	배점		가감점	세부 지표명		
			정량	정성				
B. 운영성과 (40점)	B-3. 모집/이관	16. 기부자(처) 관리		4		B-3-16-1	○ 기부자(처) 관리의 적정성	
		17. 기부식품등 이관 관리		4		B-3-17-1	○ 이관 관리의 적정성 및 공정성	
		18. 사업장점검 기초 푸드뱅크 ·마켓 관리	1			B-3-18-1	○ 기초푸드뱅크·마켓 변동 현황 관리 및 보고	
	2				B-3-18-2	○ 기초푸드뱅크·마켓 점검 및 관리		
	B-4. 행정관리	19.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 활용	2			B-4-19-1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및 관리 적절성	
			2			B-4-19-2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능력	
		20. 행정문서 관리	2			B-4-20-1	○ 행정문서 관리 적정성	
		21. 정보공개 관리	1			B-4-21-1	○ 정보공개 관리	
		22. 예산관리	1			B-4-22-1	○ 예산의 편성(수립)	
	2				B-4-22-2	○ 예산의 집행		
	C. 사업성과 (30점)	C-1. 접수실적	23. 접수 환가액	2			C-1-23-1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접수 환가액
				1			C-1-23-2	○ 20년 부터 23년 기부식품등 접수 환가액 증가율
1						C-1-23-3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접수 환가액	
24. 접수 건수			1			C-1-24-1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접수 건수	
			1			C-1-24-2	○ 20년 부터 23년 기부식품등 접수 건수 증가율(전년대비 3년치)	
			1			C-1-24-3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접수 건수	
25. 기부자(처) 수		1			C-1-25-1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수		
		1			C-1-25-2	○ 20년 부터 23년 기부 식품등 기부자(처) 수 증가율(전년대비 3년치)		
		1			C-1-25-3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수		
C-2. 이관실적		26. 이관 환가액	2			C-2-26-1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이관 환가액	
			2			C-2-26-2	○ 20년 부터 23년 기부식품등 이관 환가액 증가율 (전년대비 3년치)	
			2			C-2-26-3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이관 환가액	
		27. 이관 건수	2			C-2-27-1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이관 건수	
			1			C-2-27-2	○ 20년 부터 23년 기부식품등 이관 건수 증가율 (전년대비 3년치)	
1				C-2-27-3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이관 건수			
C-3. 운영성과	28. 운영지원 만족도		5		C-3-28-1	○ 기초푸드뱅크·마켓 만족도		
	29. 행정지원 만족도		3		C-3-29-1	○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만족도		
	30. 광역지원센터 역할/업무		2		C-3-30-1	○ 교육운영 지원		
총계			78점	22점	+5점		100점/+5점	

3.3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 지표 정의서

구분	A-1. 법적기준 - 시설/장비			광역	속 성	정량
				○	배 점	1점
지표명 (지표번호)	A-1-1. 지원센터 신고	A-1-1-1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신고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 법 제3조(신고), 법 제3조2(지정), 시행령 제4조2(지정), 시행규칙 제3조2(지정신청서 등)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신고지정 유무, 사업장 보고관리(신규, 당연전환 관리)의 적정성 평가 					
평가내용	A-1-1-1	<p>○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유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사업장 지정 및 신고 관리가 적절한가?</p> <p>【해설】</p> <p>- 해당 시도지사 지정한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여부 확인(지정내용,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업장 명칭)과 광역관할 지자체 및 사업장 명칭 표기 현관설치 및 지원센터 명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기초푸드뱅크·마켓 신고증 보유 여부도 확인함)</p>				
배점기준	A-1-1-1 (1점)	<p>(1점)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및 신고 관리(신고증 보유)가 적절할 경우</p> <p>(0점)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및 신고 관리(신고증 보유)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p>				
증빙자료 (예시)	A-1-1-1	신고필증, 지정서, 현판, 공문(보고, 안내문 등), 전환대상 사업장 질의확인 등				

구분	A-1. 법적기준 - 시설/장비		광역	속 성	정량
			○	배 점	5점(가점 1)
지표명 (지표번호)	A-1-2.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A-1-2-1 ○ 보관창고 면적 A-1-2-2 ○ 보관창고 보유 A-1-2-3 ○ 보관창고 사용 현황 A-1-2-4 ○ 보관창고 시건장치 구비 A-1-2-5 ○ 보관창고 내 물품과 바닥과의 이격 거리 A-1-2-6 ○ 보관창고 내부 및 주위 위생/청결 유지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보관창고의 보유 및 관리 상태를 평가함 				
평가내용	A-1-2-1	○ 보관창고 면적 【해설】 - 창고바닥 면적이 33㎡이상 인가를 확인함 -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 이외 설치 가능하며, 보관창고 면적은 건축물대장에 창고로 표기 및 면적 기재 - 복수의 보관창고를 사용하는 경우 전체면적의 합을 평가대상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A-1-2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의 모든 평가항목에 적용되는 대상임. - 불법 가건물은 보관창고로 인정하지 않음(조립식 창고 및 컨테이너 등 가건물 형태의 창고라도 건축물로 허가가 난 상황이면 인정함)			
	A-1-2-2	○ 보관창고 보유(소유/임차) 【해설】 - 보관창고는 사업장 명의의 소유 및 임차의 경우만 인정함(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갖춘 경우만 인정하며, 지자체 소유로 무상임대 형태의 경우 관련 공문을 보유해야 인정함)			
	A-1-2-3	○ 보관창고 사용 현황(단독 사용 및 겸용사용 시 구획 분리 여부) 【해설】 - 보관창고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관련 용도로만 사용 시 인정하고(개인 또는 타 사업관련 식품/물품보관 시 겸용으로 판단하되, 보관용기, 청소도구 및 관련 장비 보관은 인정함), 겸용사용(매장/사무실 및 개인/사업관련)시 식품 등 안전관리를 위해 구획을 분리해야 함(고정벽체, 파티션, 별도 출입구 설치 등)			
	A-1-2-4	○ 보관창고 시건장치 구비 【해설】 - 보관창고의 시건장치 설치를 통한 출입통제 관리가 가능해야 함			
	A-1-2-5	○ 보관창고 내 물품과 바닥과의 이격거리 【해설】 - 식품과 비식품은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교차오염 및 습기로 인한 변질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을 벽과 바닥으로부터 15cm(공산품은 10c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하여야 함. / 15cm에는 파렛트 자체 높이도 포함됨 *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및 기부생활용품 관리 요령 근거			
	A-1-2-6	○ 보관창고 내부 및 주위 위생/청결 유지 【해설】 - 보관창고 내 방습/방서 등에 필요한 환기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창고 주변에 오염 환경이나 기피시설이 없어야 함(보관창고의 반경 30m 이내에 쓰레기소각장, 쓰레기집하장,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하수처리장, 화장장, 축사 등의 시설 없어야 함 *주민기피시설법제도및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배점기준	A-1-2-1 (3점) /가점 1	(3점) 평가대상 기간(3년) 내 모두 기준 충족 시 (0점) 평가대상 기간(3년) 내 모두 기준 미 충족 시 (가점 1점) 기준 면적의 2배(66㎡) 이상 보유 시			
	A-1-2-2 ~6(2점)	A-2-2에서 A-2-6의 5개 지표 별 기준 충족 시 각 0.4점(총 2점)			
증빙자료 (예시)	A-1-2-1 ~ A-1-2-6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도면, 관련 증빙 공문, 화재보험증권 등으로 내용 확인 등			

구분	A-1. 법적기준 - 시설/장비			광역	속 성	정성
				○	배 점	2점
지표명 (지표번호)	A-1-3. 업무시설	A-1-3-1	○ 업무(조정, 배분 등) 수행 공간/시설 보유	평가 적용	평가시점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인력의 기부식품등 조정·배분 등의 기본 업무수행 환경 보유 정도를 평가함 					
평가내용	A-1-3-1	<p>○ 업무(조정·배분 등) 수행 공간/시설 보유</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본업무(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등)를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의 업무수행 공간 확보 및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PC, 프린터, 전화기, 복사기, 인터넷 등) 및 비품(용지, 전산 소모품 등)이 적정하게 확보되어 업무수행에 불편함이 없는가를 확인함 				
배점기준	A-1-3-1 (2점)	<p>우수(2점) 업무수행에 적합하게 공간이나 시설을 갖추고 있다</p> <p>보통(1점) 공간이나 시설이 업무수행에 약간 불편하다</p> <p>미흡(0점) 공간이나 시설이 업무수행에 매우 불편하다</p>				
증빙자료 (예시)	A-1-3-1	<p>소유 - 건물등기부등본, 임차 - 임대차계약서, 정부(중앙, 지방) 및 공공기관 등의 무상임대 경우 관련 공문 또는 증빙서류 대체가능, 현장 확인(사진)</p>				

구분	A-1. 법적기준 - 시설/장비			광역	속 성	정량
				○	배 점	4점(가점 1)
지표명 (지표번호)	A-1-4.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A-1-4-1 A-1-4-2 A-1-4-3 A-1-4-4	○ 운반차량 소유 명의 ○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 차량 냉장/냉동 성능 ○ 차량 도색기준 준수		평가 적용	평가 시점
지표근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기부식품등 지원센터의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를 평가함					
평가내용	A-1-4-1	<p>○ 운반차량 소유 명의 【해설】 - 운반차량이 제공사업장 운영법인이나 제공사업주 명의인가를 확인하며, 지자체 소유로 무상임대 형태의 경우 관련 공문을 보유해야 인정함 * <u>운반차량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법인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명의일 것 법인 또는 제공사업주 명의가 아닌 경우 A-1-4 지표는 0점 처리</u></p>				
	A-1-4-1	<p>○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해설】 -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식육 등의 액체(피 등)가 흘러나올 경우 이를 밖으로 배출하여 냄새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가를 확인함 - 상기 해당사항 여부를 파악하고, 복수 차량으로 가점을 획득한 경우 모든 해당 차량이 A-1-4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의 모든 평가항목에 적용되는 대상임 * <u>운반차량</u> -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함 - 적재고는 식육 액체(피 등)가 흘러나올 경우 이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냄새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p>				
	A-1-4-2	<p>○ 차량 냉동/냉장 성능 【해설】 - 운반차량이 성능 기준(냉동은 -18℃ 이하, 냉장은 10℃ 이하)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시간(10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온도 확인), 별도의 온도 확인 장치가 없는 구형 차량의 경우는 온도계 구비도 확인함. 단,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 미 설치 경우도 인정됨 * <u>냉동은 -18℃ 이하, 냉장은 10℃ 이하 동영상으로 증빙(차량 확인 가능)</u></p>				
	A-1-4-3	<p>○ 차량 도색기준 준수 【해설】 - 운반차량이 도색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전·후·좌·우 등 4면 모두 준수해야 함) * <u>운반차량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통일성과 대국민 홍보를 위해 푸드뱅크·마켓 심벌마크, 대표번호 등 연락처, 캐릭터 등이 삽입된 내용으로 도색해야 함</u> * 일부 도색, 랩핑이 어려운 모서리, 전면 마크만 제외 인정</p>				
배점기준	A-1-4-1 (0.5점)	(0.5점) 기준에 부합 시 (0점) 기준에 미 부합 시				
	A-1-4-2 (2점/가점 1점)	(2점) 3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 시 (1점) 3가지 기준 중 한 가지 미 부합 시 (0점) 3가지 기준 모두 미 부합 시 (가점1점) 운반차량이 2대 이상이며, 모두 3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 시				
	A-1-4-3 (1점)	(1점) 기준에 부합 시 (0점) 기준에 미 부합 시				
	A-1-4-4 (0.5점)	(0.5점) 기준에 부합 시 (0점) 기준에 미 부합 시				
증빙자료 (예시)	A-1-4-1	차량등록증, 관련 증빙 공문 등				
	A-1-4-2	현장 확인(사진, 동영상)				
	A-1-4-3	차량 냉동/냉장 성능 현장 확인				
	A-1-4-4	차량 확인(사진, 동영상)				

구분	A-1. 법적기준 - 시설/장비			광역	속 성	정량
				○	배 점	2점(가점 1)
지표명 (지표번호)	A-1-5. 냉장/냉동 시설 보유 및 관리	A-1-5-1	○ 냉장/냉동시설 보유		평가 적용	평가지점
		A-1-5-2	○ 냉장/냉동시설 성능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냉장 및 냉동고 보유 및 기능정상 여부를 평가함 					
평가내용	A-1-5-1	<p>○ 냉장/냉동시설 보유</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L 이상의 냉장시설과 1,000L 이상의 냉동시설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가를 확인함 복수의 냉장/냉동시설을 보유한 경우 전체용량의 합을 평가대상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A-1-5-1 ~ A-1-5-2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의 모든 평가항목에 적용되는 대상임 해당 냉장/냉동시설 내부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외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유로 인정되지 않음(타 사업 및 개인 물품 보관 등) <p>※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p>				
	A-1-5-2	<p>○ 냉장/냉동시설 성능</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장/냉동시설 성능 기준(냉동 -18℃ 이하, 냉장 10℃ 이하)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시간(10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온도 확인),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냉장/냉동시설 미보유 시에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함 				
배점기준	A-1-5-1 (1점)/ 가점 1	<p>(1점) 기준 이상 냉장과 냉동시설 모두 보유 시</p> <p>(0점) 기준 이상 냉장 또는 냉동시설 미보유 시</p> <p>(가점 1점) 냉장/냉동시설의 합계 용량이 4,000L 이상 보유시</p>				
	A-1-5-2 (1점)	<p>(1점) 보유 냉장/냉동시설 성능 모두 기준에 부합 시</p> <p>(0점) 보유 냉장/냉동시설 성능 중 하나 이상 기준에 미 부합 시</p> <p>※ 복수의 시설 또는 보유용량으로 가점이 적용된 시설은 모두 평가에 포함됨</p>				
증빙자료 (예시)	A-1-5-1 A-1-5-2	비품대장, 구매확인서(모델명, 규격 등 사양표기), 양도증명서, 관련 증빙 자료 등				

구분	A-2. 법적기준 - 인적자원			광역	속 성	정량
				○	배 점	6점(가점 1)
지표명 (지표번호)	A-2-6. 전담인력 보유및관리	A-2-6-1	○ 전담 인력 보유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A-2-6-2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유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인력 확보 및 관리를 평가함 					
평가내용	A-2-6-1	<p>○ 전담 인력 보유</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인력은 정규직 또는 계약직 모두 포함하며 예산 항목상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인건비 확보가 되어 실 지급 되는지를 확인(계약직 경우 업무분장표에 명시된 업무를 주 40시간 이상 근무 & 4대 보험 가입 & 1년 이상 계약인 경우), 운영자가 전담총괄 또는 운영주체 내 관리자 등 직원이 겸직형태로 전담 시는 미 인정됨 전담인력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인력들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업무 수행비율의 합이 100% 이상이어야 인정됨(업무분장표 상의 업무 비율)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 공문에 역할 및 인건비가 포함되어야 하고, 보조금을 안 받는 경우에는 총회자료집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인정됨 				
	A-2-6-2	<p>○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유</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 인력별 재직기간 중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가를 확인함 ※ 재직(근무)기간 중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유란 근무기간이 2021. 12.1. ~ 2023. 6.30. 까지 근무 때에는 21년, 22년, 23년 총 3개를 보유하는 것이 아닌 2021.12.1. ~ 2022.11.30./1개, 2022.12.1. ~ 2023.6.30. /1개 총 2개를 보유 때에는 인정 재직기간 중 보유하면 인정함. 				
배점기준	A-2-6-1 (4점)/ 가점 1	<p>(4점) 3개년 모두 전담인력 2인 보유 시</p> <p>(2점) 2개년 전담인력 2인 보유 시</p> <p>(1점) 1개년 전담인력 2인 보유 시</p> <p>(0점) 3개년 모두 전담인력 2인 미보유 시</p> <p>(가점 1점) 3개년 모두 전담인력 3인 이상 보유 시</p>				
	A-2-6-2 (2점)	<p>(2점) 전담인력 모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보유 시</p> <p>(0점) 전담인력 중 1인 이상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비 보유(미확인 포함) 시</p> <p>※ 가점 획득 인력도 모두 평가 대상에 포함됨</p>				
증빙자료 (예시)	A-2-6-1	인건비 지급명세서, 지자체 공문, 4대보험 납부 내역, 계약서, 업무분장표, 직원 인터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A-2-6-2					

구분	A-2. 법적기준 - 인적자원			광역	속 성	정량
				○	배 점	3점
지표명 (지표번호)	A-2-7. 보조인력 보유및관리	A-2-7-1	○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A-2-7-2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유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인력(자원봉사자 포함)의 확보 및 관리를 평가함 					
평가내용	A-2-7-1	<p>○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인력은 사회복지요원 등 3개월 이상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전담 및 담당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한정하고, 자원봉사자는 평균 주 10시간 이상을 3개월 이상 전담 및 담당직원의 업무를 보조한 자로 한정하여 평가함 사회복지요원은 지방병무청 등 관리주체의 공문 또는 사업장 내부공문에 의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배치계획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보조업무가 명시되었는지를 확인함(사회복지요원의 경우 기존 복무자의 소집해제 후 후임 복무자의 배치 중간의 공백은 있는 것으로 판단)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VMS,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포털과 같이 봉사 인증 필수, 자체 자원봉사원 자료 확인을 통해 자원봉사 인력 활용여부를 확인함 *지자체에서 과건하는 인력 등 포함 <p>※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인력에는 사회복지요원, 공공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 자원봉사자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추가인력 모두 포함되며, 관리주체의 공문 또는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 내부공문에 의한 배치계획 등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보조업무가 명시되었는지 여부 자원봉사자는 평균 주 10시간이상 전담 및 담당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VMS,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포털과 같이 봉사 인증 필수) 				
	A-2-7-2	<p>○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유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 보조인력에 대하여 근무기간 전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유를 확인함 <p>※ 재직(근무 등)기간 중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유란 근무기간이 2021. 12.1. ~ 2023. 6.30. 까지 근무 때에는 21년, 22년, 23년 총 3개를 보유하는 것이 아닌 2021.12.1. ~ 2022.11.30./1개, 2022.12.1. ~ 2023.6.30./1개 총 2개를 보유 때에는 인정 재직기간 중 보유하면 인정함.</p>				
배점기준	A-2-7-1 (2점)	<p>(2점) 3개년 모두 보조인력 2인 이상 보유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 주 10시간 이상(3개월 이상) 근무자로 보조인력 구성 시 총 근무시간이 매년 1,040시간 이상인 경우(10시간 X 52주 X 2인) <p>(1점) 2개년 모두 보조인력 2인 이상 보유 시</p> <p>(0점) 위 기준 이외 해당 시</p>				
	A-2-7-2 (1점)	<p>(1점) 평가대상 보조인력에 대하여 근무기간 전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유 시</p> <p>평가대상 보조인력에 대하여 근무기간 전체 중 1인 이상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비 보유(미확인 포함) 시</p>				
증빙자료 (예시)	A-2-7-1 A-2-7-2	<p>보조인력 관련 공문, 자원봉사 관련 각종 포털이나 시스템, 사회복지포털, 보조업무 명시자료(업무분장표), 직원 인터뷰, 보조인력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p>				

구분	A-2. 법적기준 - 인적자원		광역	속 성	정량	
			○	배 점	3점(가점 1)	
지표명 (지표번호)	A-2-8. 교육이수	A-2-8-1	○ 필수교육 수료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A-2-8-2	○ 권장교육 수료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인력 필수교육 수료 및 권장교육 수료를 평가함 					
평가내용	A-2-8-1	<p>○ 필수교육 수료</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전담인력 및 3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보조인력의 3개년간 필수교육(식품위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교육, 개인정보교육, 자살예방교육) 수료여부를 평가함 보조인력의 경우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교육은 제외하며, 교육수료 여부 확인은 기초사업장 교육수료 명단과 해당연도별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교육수료 명단을 비교하여 평가함 종사인력의 변동에 관계없이 인원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p>※ 전담인력 평가적용기간 : 2021.1.1.~2023.12.31. ※ 보조인력 평가적용기간 : 2021.1.1.~2023.12.31.</p>				
	A-2-8-2	<p>○ 권장교육 수료</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장교육은 업무수행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직무능력 향상 및 정보화 교육을 포함하여 외부전문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초빙 교육 및 외부 세미나/워크숍 참석 포함)의 수료증, 수료확인서, 확인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확인함 <p>※ 전담인력 평가적용기간 : 2021.1.1.~2023.12.31. ※ 보조인력 평가적용기간 : 2021.1.1.~2023.12.31.</p>				
배점기준	A-2-8-1 (3점)	<p>(3점) [전담]3개년간 인력(전담) 모두 전체 필수교육 수료 시 - 2점 [보조]3개년간 인력(보조) 모두 전체 필수교육 수료 시 - 1점</p> <p>(2점) [전담]3개년간 인력(전담) 모두 전체 필수교육 중 1개 이상 미수료 시 - 1.4점 [보조]3개년간 인력(보조) 모두 전체 필수교육 중 1개 이상 미수료 시 - 0.6점</p> <p>(1점) [전담]3개년간 인력(전담) 모두 전체 필수교육 중 2개 이상 미수료 시 - 0.7점 [보조]3개년간 인력(보조) 모두 전체 필수교육 중 2개 이상 미수료 시 - 0.3 점</p> <p>(0점) 위 기준 이외 해당 시</p>				
	A-2-8-2 (가점 1)	(1점) 평가 적용기간(‘21~‘23년) 인력(전담/보조) 권장교육과정을 1개 이상 수료 시				
증빙자료 (예시)	A-2-8-1 A-2-8-2	교육훈련 수료증, 수료 확인증, 수료대장, 확인 공문 등				

구분	A-2. 법적기준 - 인적자원		광역	속 성	정량
			○	배 점	4점
지표명 (지표번호)	A-2-9. 근무여건	A-2-9-1 ○ 전담인력 인건비 수준 A-2-9-2 ○ 근무 여건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인력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근무환경을 평가함 				
평가내용	A-2-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직원 인건비 수준 【해설】 - 연도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자료를 통해 해당 연도별 인건비 지급 자료를 확인함(전담인력은 정규직 또는 계약직 형태를 모두 포함하고, 사업장의 예산부족 등으로 인한 인건비와 4대보험이 별도 재원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인정함) 			
	A-2-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 여건(복리후생제도, 대체인력 확보 등) 【해설】 - 전담인력 대상 복리후생 제도를 1개 이상 운영하고 있고, 전담인력에 대한 대체 인력 확보를 통해 전담직원의 휴가, 경조사 등의 상황발생 시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가를(업무분장표 등 확인) 확인함 - 인센티브, 복지포인트, 외부수상 추천, 시간외 수당 추가지급, 직급수당, 장기근속 수당, 문화프로그램 등의 관련 제도나 프로그램 운영을 확인함 - 단순 회식은 포함되지 않고, 워크숍이나 외부교육은 제외됨(권장교육 수료에서 평가됨) - 단, 소통프로그램, 체육활동, 지역탐방, 문화체험(공연 등) 등이 포함된 워크숍 인정 (권장교육 점수 인정시, 복리후생제도 점수 불인정) 			
배점기준	A-2-9-1 (2점)	(2점) 3개년도 전담인력 모두 가이드라인 준수 시 (1점) 2개년도 전담직원 모두 가이드라인 준수 또는 3개년도 모두 가이드라인 90% 이상 준수 시 (0점) 위 기준 이외 해당 시			
	A-2-9-2 (2점)	(2점) 평가적용 기간 내 대체인력 활용과 1개 이상 복리후생 제도나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 시 (1점) 평가적용 기간 내 대체인력 활용과 1개 이상 복리후생 제도나 프로그램 중 한가지를 운영하지 않을 시 (0점) 위 기준 이외 해당 시			
증빙자료 (예시)	A-2-9-1 A-2-9-2	직원 급여(인건비) 명세서, 급여대장, 복리후생제도 규정이나 지침, 지원 내역서, 직원 인터뷰 등 등			

구분	B-1. 운영성과 - 경영관리			광역	속 성	정량	정성
				○	배 점	2점	2점
지표명 (지표번호)	B-1-10. 사업계획 및 운영 관리	B-1-10-1	○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운영·관리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제공사업의 계획수립 여부 및 활용관리 수준을 평가함						
평가내용	B-1-10-1	○ 사업 계획 수립 【해설】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지침상의 사업계획서에 제시된(아래내용 참조) 내용이 사업장의 연도별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인함(서식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내용 포함 여부 확인)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계획서(예시) ① 기관소개 : 설립목적, 주요사업, 조직체계 ② 사업의 필요성(사업의 당위성 및 운영의지 기술) ③ 설치·운영사업 계획 - 사업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현황(최근 3년) - 식품·생활필수품 기부업체 및 이용자 발굴 및 관리계획 - 사업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 및 상담계획 - 사업장 설치 위치(이용자 접근가능성) 및 시설·장비 현황 - 사업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단체와의 사업연계 및 구축 계획 - 사업운영 인력에 따른 업무분장 계획(담당인력 등 자원봉사자) -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추진일정 - 기대효과 ④ 사업예산 계획 ⑤ 기타 사업지역 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B-1-10-2	○ 사업 운영·관리 - 사업(운영)계획 내용이 실행가능하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었고, 사업기간 중 진도 및 성과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함 ※ 정부·지자체 보고자료, 수입·지출결의서, 분기별 결과보고 등					
배점기준	B-1-10-1 (2점)	(2점) 예시 내용을 모두 포함한 연도별 사업(운영)계획 수립 시 (1점) 예시 내용 중 1가지 이하 미포함 (0점) 예시 내용 중 2가지 이상 미포함 *배점: 3개년을 평균으로 계산함 예시: (21년+22년+23년)/3					
	B-1-10-2 (2점)	우수(2점) 사업계획 대비 진도 및 성과관리를 양호하게 하고 있음(결산관리 제외) 보통(1점) 사업계획 대비 진도 및 성과관리를 하고 있음(결산관리 제외) 미흡(0점) 사업계획 대비 진도 및 성과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결산관리 제외)					
증빙자료 (예시)	B-1-10-1	사업계획서, 평가회의, 점검회의, 관련 보고자료, 결재서류 등					

구분	B-1. 운영성과 - 경영관리			광역	속 성	정량
				○	배 점	3점
지표명 (지표번호)	B-1-11. 사업 교류 협력 활동	B-1-11-1	○ 지역사회 연계활동(교류협력)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자원관리 네트워크 체계 구축 여부 및 활동실적 및 수준 등을 평가함 					
평가내용	B-1-11-1	<p>○ 지역사회 연계활동(교류협력)</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 차원에서 아래에 예시된 바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함(일회성 및 홍보성 행사는 사업홍보에서 별도로 평가함) <p>※ 지역사회 연계활동(교류협력) 예시</p> <p>① 지자체와의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시·군·구·읍·면·동사무소)와의 정기적/부정기적 회의 등을 통해 사업관리(이용자 추천, 사업 확대 등)와 사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가? - 지자체 회의 자료, 공문 등을 통해 정기적/부정기적 사업공유 및 관련 활동자료 등을 확인함 <p>② 자체 활동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사업계획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지역 기업/기관과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가? - 사업계획서 또는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관련 활동자료 등을 확인함 <p>※ 계획 또는 결과보고가 있는 예시만 인정</p>				
배점기준	B-1-11-1 (3점)	<p>(3점) 예시된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매년 4가지 이상 수행 시</p> <p>(2점) 예시된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매년 3가지 이상 수행 시</p> <p>(1점) 예시된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매년 2가지 이상 수행 시</p> <p>(0점) 예시된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매년 1가지 이하 수행 시</p>				
증빙자료 (예시)	B-1-11-1	지역사회 연계활동(교류협력) 관련 자료 : 협력사업 계획서, 업무협약서, 협력회의 참석관련 문서, 의견수렴 및 환류관련 문서 등)				

구분	B-1. 운영성과 - 경영관리			광역	속 성	정량
				○	배 점	3점
지표명 (지표번호)	B-1-12. 운영위원회	B-1-12-1	○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B-1-12-2	○ 운영(자문)위원회 활동 및 관리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운영관리 활동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B-1-12-1	<p>○ 운영(자문)위원회 구성</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내실화, 운영 투명성 확보, 교육 등을 위한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함 <p>※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은 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 내실화, 운영 투명성 확보,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3인 이상(23년 5인구성)의 구성시 인정되며,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명칭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과 관련되어 운영할 경우 인정되며, 시설 등의 운영주체의 다른 사업의 운영위원회와 중복으로 구성되는 것은 인정되나, 별도의 안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문서(결과보고서 등)를 제시해야 함 <p>※ 운영(자문/실무)위원회 구성 항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운영(자문/실무)위원회를 설치 했는지 운영위원회 계획 등 내부 기안 확인함. ② 운영(자문/실무)위원회 구성이 다양하게 되었는지 확인함. (21년, 22년 3인 / 23년 5인) <p>※ 한 개 분야의 전문가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예외(예시 구성인이 종교, 기부처, 이용자 등 한 개 분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미준수로 판단)</p>				
	B-1-12-2	<p>○ 운영(자문)위원회 활동 및 관리</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내실화, 운영 투명성 확보, 교육 등을 위한 운영(자문)위원회가 아래에 예시된 바와 같이 적절하게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가를 평가함 <p>※ 운영(자문)위원회 활동 및 관리 내용 항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운영(자문)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활동)했는지 확인함. ② 운영(자문)위원회 지침 및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 지침이나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를 운영위원회 규정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함 ③ 운영(자문)위원회의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문)위원회가 운영(자문)위원회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해당되는 사항이 회의 내용이나 안전(사업계획, 예산계획, 교육계획 등)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운영회의록 및 관련자료 등을 통해 확인함 ④ 운영(자문)위원회 결과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제 사업에 반영되었거나 반영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함 				
배점기준	B-1-12-1 (1점)	(1점) 항목 내용을 매년 2가지 이상 수행 시 (0.5점) 항목 내용을 매년 1가지 이상 수행 시 (0점) 항목 을 수행하지 않을 시				
	B-1-12-2 (2점)	(2점) 항목 내용을 매년 4가지 이상 수행 시 (1.5점) 항목 내용을 매년 3가지 이상 수행 시 (1.0점) 항목 내용을 매년 2가지 이상 수행 시 (0.5점) 항목 내용을 매년 1가지 이상 수행 시 (0점) 항목 내용을 수행하지 않을 시				
	*배점: 3개년을 평균으로 계산함 예시: (21년+22년+23년)/3					
증빙자료 (예시)	B-1-12-1 B-1-12-2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참여자 명단, 계획서, 결과보고서, 회의록 등				

구분	B-2. 운영성과 - 위생/안전			광역	속 성	정량
				○	배 점	2점
지표명 (지표번호)	B-2-13.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B-2-13-1	○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평가지점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위생점검관리 준수를 평가함 					
평가내용	B-2-13-1	<p>○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p> <p>【해설】</p> <p>- 기부식품등 제공사업과 관련된 보관창고, 매장, 운반차량, 냉동·냉장시설 등 시설, 장비, 기자재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실제 현장에서 관련 시설, 장비, 기자재 등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함(먼지, 환기여부, 냄새, 곰팡이 등 육안으로 확인하여 평가하고, 광역자치단체 위생 점검 시 규정위반 개선이행 조치 사례, 행정조치 사항 유무 확인)</p> <p>* 점검항목</p> <p>① 매장, 기자재, 운반차량, 냉동·냉장 시설 등의 위생점검 표를 갖추고 있는가? ※ 통합 또는 각각의 위생점검이 표시 된 점검표가 있는지 확인</p> <p>② 매일 장비, 기자재, 위생점검표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 매일, 매주 등 주기적으로 청소 등 위생관리를 위한 활동을 하는지 확인</p> <p>③ 시설, 장비, 기자재 등의 상태가 육안(곰팡이, 녹, 냄새 등)으로 사용 가능하고 청결한 상태인가?</p>				
배점기준	B-2-13-1 (2점)	<p>(2점) 항목 내용 중 3가지 이상 준수</p> <p>(1.4점) 항목 내용 중 2가지 이상 준수</p> <p>(0.7점) 항목 내용 중 1가지 이하 준수</p> <p>(0점) 미 준수</p> <p>*배점: 3개년을 평균으로 계산함 예시: (21년+22년+23년)/3</p>				
증빙자료	B-2-13-1	시설창고 점검표, 점검일지, 현장 사진				

구분	B-2. 운영성과 - 위생/안전			광역	속 성	정량
				○	배 점	6점
지표명 (지표번호)	B-2-14. 식품등 위생관리	B-2-14-1	○ 기부식품등 위생/안전관리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평가지점
		B-2-14-2	○ 기부식품등 배분기한 준수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등 보관관리 적정성, 배분기한 준수를 평가함 					
평가내용	B-2-14-1	<p>○ 기부식품등 위생/안전관리</p> <p>【해설】</p> <p>- 아래의 2가지 현황을 확인함</p> <p>① 표시관리 적정성 : 보관·진열중인 식품/생활용품의 명칭, 내용, 배분기한 등의 표시관리가 적정한가를 확인함(보관중인 식품 3개와 생활용품 2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표시관리 현황을 확인함)</p> <p>* 기부식품 등이 없는 경우 사진 등 증빙</p> <p>② 구분관리 적정성 : 보관·진열중인 식품/생활용품은 유형별, 배분기한별(배분기한 임박 상품의 별도 구분 등)로 적정하게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함</p> <p>* 기부식품 보관장소에서 구분관리</p> <p>※ 실제 샘플을 보유하도록 안내 물건이 없으면 사진, 동영상, 관리 계획안 증빙 자료 필요</p>				
	B-2-14-2	<p>○ 기부식품등 배분기한 준수</p> <p>【해설】</p> <p>- 보관중인 식품/생활용품의 배분기한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함(보관중인 식품 3개와 생활용품 2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배분기한 준수 및 변색/부패 여부를 확인함)</p> <p>* 현장에 물품이 없는 경우 FMS상 기부물품을 무작위로 확인하여 배분기한을 준수하는 지 확인</p> <p>※ 현장에 물건이 있으면 FMS상에 식품 1개 생활용품 1개</p>				
배점기준	B-2-14-1 (5점)	<p>(5점) 현장 확인 항목 중 2가지 준수</p> <p>(3점) 현장 확인 항목 중 1가지 준수</p> <p>(0점) 미준수</p>				
	B-2-14-2 (1점)	<p>(1점) 임의 추출 식품/생활용품 모두 배분기한 준수 시</p> <p>(0점) 임의 추출 식품/생활용품 중 1개라도 배분기한 경과 시 또는 부패/상함/변색 경우</p>				
증빙자료	B-2-14-1	현장사진, 관련서류, 직원인터뷰				
	B-2-14-2	표본 확인				

구분	B-2. 운영성과 - 위생/안전			광역	속 성	정량
				○	배 점	1점
지표명 (지표번호)	B-2-15. 식품사고 관리	B-2-15-1	○ 식품사고 대처관리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수준 등을 평가함 					
평가내용	B-2-15-1	<p>○ 식품사고 대처관리</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방법(지침, 매뉴얼 등)과 관련된 비상연락망(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을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함 지역 내 기초사업장의 식품사고 예방조치 활동과 사고발생 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대처활동 등의 적정성(사례 전달, 지자체 공동조사 참여 등)을 평가함 <p>※ 기부생활용품 이용사고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생활용품 이용과 관련한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는 관할 보건소 및 시·군·구청에 즉시 보고 시·군·구 담당자는 기부생활용품 이용 관련 사고를 조사하여 사고 경위, 피해 상황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에 우선 보고 시·군·구 담당자 및 사업자는 조치계획에 따라 기부생활용품 이용 관련 사고에 대해 조치하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에 신속히 보고 				
배점기준	B-2-15-1 (1점)	<p>(1점) 식품사고 시 대응방법 및 비상연락망 보유 및 비치 시</p> <p>(0점) 대응방법이나 비상연락망 미보유 및 미비치 시 또는 평가 대상기간 내 지침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으로 행정조치 등을 받은 경우</p>				
증빙자료	B-2-15-1	사고발생 보고 자료(공문 등), 비상연락망, 매뉴얼				

구분	B-3. 운영성과 - 모집/이관			광역	속 성	정성
				○	배 점	4점
지표명 (지표번호)	B-3-16. 기부자(처) 관리	B-3-16-1	○ 기부자(처) 관리의 적정성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 수급과 양질의 배분 활동을 위한 기부처(자) 발굴 계획 및 활동수준을 평가함 					
평가내용	B-3-16-1	<p>○ 기부자(처) 관리의 적정성</p> <p>【해설】</p> <p>- 아래의 3가지 현황을 확인함</p> <p>① 관리계획서 보유 : 기부자(처) 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가를 확인함</p> <p>※기부자(처) 발굴·관리·제외 등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 보고서 등</p> <p>② 관리계획 실행 : 기부자(처) 관리계획에 근거한 관리의 실행여부 및 정도와 실제 실행사례(기부협약, 감사서신, 시상 및 수상추천, 기부자(처) SNS 홍보, 지역언론사 보도자료 등)를 확인함</p> <p>③ 의견수렴 제도 : 기부자(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만족도 조사, 운영위원회, 공문 회신 등)나 절차가 있는가를 확인함</p>				
배점기준	B-3-16-1 (4점)	<p>우수(4점) 관리계획서 보유, 관리계획 실행, 의견수렴 제도가 모두 양호한 경우</p> <p>보통(2점) 관리계획서 보유, 관리계획 실행, 의견수렴 제도 중 1가지 이상이 미흡한 경우</p> <p>미흡(0점) 관리계획서 보유, 관리계획 실행, 의견수렴 제도 모두 미흡한 경우</p>				
증빙자료	B-3-16-1	해당 실적자료확인(문서, 사진 등)				

구분	B-3. 운영성과 - 모집/이관			광역	속 성	정성
				○	배 점	4점
지표명 (지표번호)	B-3-17. 이관 관리	B-3-17-1	○ 이관 관리의 적정성 및 공정성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이관 관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B-3-17-1	<p>○ 이관 관리의 적정성 및 공정성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장 이관 관련 연도별 계획서 유무와 해당 지역 내 사업장과 이용자를 고려한 이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를 확인함(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관할지역 상황에 따른 이관 계획 기준으로 평가) 계획된 기부식품등 이관의 적정하고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함 기초푸드뱅크·마켓 대상 이관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자체적인 제도, 절차 및 관련실적이 있는가를 확인함(기초푸드뱅크·마켓 간담회, 이용자 의견조사 등) <p>※ 관련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조정배분 계획 규모 준용(즉시배분, 정기배분, 지정기탁배분)을 기준으로 배분계획 수립(단, 긴급배분은 연간 배분계획 제외)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지역 내 당연 및 임의 신고사업장 구분, 기부식품등 이용대상자 수, 사업장 평가결과, 업무협력 정도(FMS 활용, 배분협력 등), 수도권/비수도권/농산어촌 등 지역여건 감안 조정/배분 배분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법 3조2에 따라 지정된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간의 협력 배분 2)법 2조5호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3)기타 기부자가 지정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용자 4)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배분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법11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분 진행 경우 2)다른 법령으로 인한 민형사상 처분대상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3)정치/종교적 사유, 수익추구, 공직선거법 위반 등 배분 제외필요 경우 4)사업자가 배분제외 요청 경우 5)FMS상 제공 실적이 1개월 이상 없는 사업장 중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사용 권고 이후에도 FMS 미사용 사업장(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각 사업장별 제공현황 매월말일 기준 확인하여 광역 통보) 6)FMS상 폐기량이 전체 기부량의 3%이상 사업장(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매월 말일기준으로 모집/제공/폐기현황을 확인해 광역 통보, 광역은 해당 사업장 현장 확인 실시) 7)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거부 등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배분제외 필요인정 경우 				
배점기준	B-3-17-1 (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4점) 이관 관리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양호한 경우 보통(2점) 이관 관리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일부 미흡한 경우 미흡(0점) 이관 관리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매우 미흡한 경우 				
증빙자료	B-3-17-1	해당 실적자료확인(문서, 사진 등)				

구분	B-3. 운영성과 - 모집/이관			광역	속 성	정량
				○	배 점	3점
지표명 (지표번호)	B-3-18. 사업장점검 기초푸드뱅크·마켓 관리	B-3-18-1	○ 기초푸드뱅크·마켓 변동 현황 관리 및 보고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B-3-18-2	○ 기초푸드뱅크·마켓 점검 및 관리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푸드뱅크·마켓의 변동 현황 관리 및 보고와 점검관리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B-3-18-1	<p>○ 기초푸드뱅크·마켓 변동 현황 관리 및 보고</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관할지역의 신규 및 폐업 기초푸드·뱅크에 대한 정보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적절하게 보고하고 있는가를 확인함 (평가적용기간 : 2021.1.1.-2023.12.31.)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서 통보된 관할지역의 당연 전환 사업장에 대한 신고 대상을 적절히 통보 또는 안내하고 있는가를 확인함 (평가적용기간 : 2021.1.1.-2023.12.31.) <p>※ 관련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사업자 신고 수리한 시군구 관할 지자체장은 해당사항을 관할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속히 보고, 신규 사업자는 동 사실을 지역지원센터를 통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보고 통보기한의 별도 기간은 없지만 전환대상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를 기준하며, 통보는 문서 또는 구두로 당연전환 안내절차 및 미전환시 불이익 등 관련 내용 안내필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전년도(1월~12월) 모집·제공 실적을 확정환(매년 2월말) 후 임의신고사업장 중 당연신고 대상 사업장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함 당연신고 대상 사업장은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당연신고 대상임을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당연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영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리감독 실시 				
	B-3-18-2	<p>○ 기초푸드뱅크·마켓 점검 및 관리</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지역 내 기초푸드뱅크·마켓 대상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식품등 위생 안전관리에 관한 활동을 지자체 공동 또는 자체 계획 등을 통해 정기 또는 수시 점검(방문, 전화 등)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매년 점검 및 관리 계획과 실행이 모두 있어야 함. <p>* 지자체와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신고한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 비치,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 작성·보관 및 기부식품등의 모집·제공결과 공개 여부, 식품 유통기한 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연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20년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고시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투명성 확보 및 식품등 안전관리)</p>				
배점기준	B-3-18-1 (1점)	<p>(1점) 2021년 2022년, 2023년 모두 전환 신고대상(폐업 보고 포함) 통보 시</p> <p>(0점) 2021년 2022년, 2023년 한 곳이라도 전환 신고대상(폐업 보고 포함)에 통보 하지 않을 시</p>				
	B-3-18-2 (2점)	<p>(2점) 3년간 연 1회 이상 기초푸드뱅크·마켓 점검 및 관리</p> <p>(1.4점) 2년간 연 1회 이상 기초푸드뱅크·마켓 점검 및 관리</p> <p>(0.7점) 1년간 연 1회 이상 기초푸드뱅크·마켓 점검 및 관리</p> <p>(0점) 기초푸드뱅크·마켓 점검 및 관리 미이행</p>				
증빙자료	B-3-18-1	지자체 공문, 관련자료				
	B-3-18-2	지자체 공문, 관련자료				

구분	B-4. 운영성과 - 행정관리			광역	속 성	정량
				○	배 점	4점
지표명 (지표번호)	B-4-19.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 활용	B-4-19-1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및 관리 적절성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B-4-19-2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능력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및 관리수준을 평가함 					
평가내용	B-4-19-1	<p>○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및 관리 적절성</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및 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2가지 현황을 확인함 ①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발급 영수증 증빙관리 : FMS를 활용한 영수증 증빙을 적절하게 발급 및 관리(기부식품등 접수 및 배분, 이용자 정보입력 등) 하고 있는지를 확인함(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 영수증 미발급 경우에는 FMS 접수 기부내역 관리시 인정) (샘플 3개를 선정하여 평가) 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과 실제 접수 및 배분현황 비교(샘플 3개를 선정하여 평가) 				
	B-4-19-2	<p>○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능력</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직원이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입력 자료/정보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고 오류가 없는지를 직접 시연 및 인터뷰를 통해 확인함(접수, 배분, 기부자, 이용자 각 1개씩 총 4개 샘플을 선정하여 평가)하여 평가함 				
배점기준	B-4-19-1 (2점)	<p>(2점) 평가 항목중 2가지 이상 준수</p> <p>(1점) 평가 항목중 1가지 이상 준수</p> <p>(0점) 평가 항목 미준수</p>				
	B-4-19-2 (2점)	<p>(2점) 예시상황에 대한 4개 샘플 추출 확인 및 인터뷰를 통한 직무이해 적합 시</p> <p>(0점) 잘 모르거나 틀리는 경우(1개라도 접수, 배분, 기부자 및 이용자 정보누락 또는 오류 시)</p>				
증빙자료 (예시)	B-4-19-1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증빙영수증, 등록관리 자료현황, 접수대장, 배분대장 등				
	B-4-19-2	직원 인터뷰 및 4개 현장 샘플 확인				

구분	B-4. 운영성과 - 행정관리			광역	속 성	정량
				○	배 점	2점
지표명 (지표번호)	B-4-20. 행정문서 관리	B-4-20-1	○ 행정문서 관리 적정성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문서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B-4-20-1	<p>○ 행정문서 관리 적정성</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문서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2가지 현황을 확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서관리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모집 및 제공에 관한 내용이 문서유형별로 모두 작성 및 보관·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함(기부식품 접수문서대장, 기부식품 배분문서내역, 기부자 관리내역, 이용자 문서 수발신 대장 등 보유해야 하는 문서들의 파일철이 되어 있는가?, 문서가 연도별로 잘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는가?) ② 관련 문서철 보관관리 : 관련 장부 등을 보관하는 장소 또는 가구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주요 개인정보자료 등의 비밀 보안이 필요한 문서 등을 위한 시건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함. ③ 전산 문서에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문서들은 보안(비밀번호, 폐기 등)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함. 				
배점기준	B-4-20-1 (2점)	<p>(2점) 평가 항목중 3가지 이상 준수</p> <p>(1.4점) 평가 항목중 2가지 이상 준수</p> <p>(0.7점) 평가 항목중 1가지 이상 준수</p> <p>(0점) 미준수</p>				
증빙자료 (예시)	B-4-20-1	기부식품등 이관 관련 자료, 기부자 및 이용자 관련 자료 등				

구분	B-4. 운영성과 - 행정관리			광역	속 성	정량
				○	배 점	1점
지표명 (지표번호)	B-4-21. 정보공개 관리	B-4-21-1	○ 정보공개 관리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정보 공개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B-4-21-1	<p>○ 정보공개 관리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정보(접수, 배분, 기부자, 이용자 등)를 홈페이지(자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자체 포함)이나 자료를 통해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가를 확인함(1개 이상 정보공개 경로 보유여부) 다음연도 3월까지 입력 기준 예시) 21년 3월은 20년도 정보 입력 				
배점기준	B-4-21-1 (1점)	<p>(1점) 사업장 정보를 홈페이지(운영주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자체 등)를 통해 상시 공지 시</p> <p>(0점) 현장 확인 시 공개가 되지 않거나 확인이 안 되는 경우</p>				
증빙자료 (예시)	B-4-21-1	홈페이지 관련 자료 공개 내용				

구분	B-4. 운영성과 - 행정관리		광역	속 성	정량
			○	배 점	3점
지표명 (지표번호)	B-4-22. 예산관리	B-4-22-1 ○ 예산의 편성(수립)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B-4-22-2 ○ 예산의 집행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별 예산관련 장부관리가 이루어지며, 적절한 예산관리를 하고 있는지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B-4-22-1	○ 예산의 편성(수립) 【해설】 - 예산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3가지 현황을 확인함 ① 연 단위 예산계획 : 연도별 예산 관련 운영계획(예산확보, 운용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를 확인함 - (예산서 보유 여부 / 교부신청, 정산보고) * 개인시설의 경우 예·결산서 및 수입지출 품의만 확인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규정한 재무회계 기준에 부합하게 편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10조			
	B-4-22-1	○ 예산의 집행 【해설】 회계 집행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규정한 재무회계 기준에 부합하게 회계관리가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함 ① 수입원과 지출원이 있는가를 확인함 (부득이한 경우(근로자가 1인 경우) 동일인) ② 회계처리 증빙서류 관리 : 회계처리(결산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함(연도별, 예산항목별 등 (수입결의서, 지출결의 증빙이 잘 되어있는가를 확인함) ③ 통장과 지출에 대한 증빙이 일치여부를 확인함. * 오프라인 통장정리 된 것을 증빙 우선으로 한다. (잔액증빙 등 확인) * 지자체 지원(전액, 일부) 및 자부담 예산이나 회계처리를 포함하여 평가함			
배점기준	B-4-25-1 (1점)	1점 예산서(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등) 보유 시 0점 예산서(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등) 미 보유 시			
	B-4-25-1 (2점)	2점 평가항목 중 3가지 이상 준수 시 0점 평가항목 중 1개 이상 미 준수 시			
증빙자료 (예시)	B-4-22-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예산계획,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관련 자료			

구분	C-1. 사업성과 - 접수실적			광역	속 성	정량
				○	배 점	4점
지표명 (지표번호)	C-1-23. 접수 환가액	C-1-23-1 C-1-23-2 C-1-23-3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접수 환가액 ○ '20년 부터 '23년 기부식품등 접수 환가액 증가율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접수 환가액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접수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 평균)을 평가함 					
평가내용	C-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접수 환가액 (평균대비 실적평가 100% : 2023년)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기부식품등 접수환가액을 비교(지원센터 간 이관 기부식품등은 불포함, 중복 실적 배제) 				
	C-1-2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부터 '23년 기부식품등 접수 환가액 증가율(목표부여 상향평가 100%)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20년 부터 '23년(매년 전년대비) 기부 식품 접수 환가액을 비교(지원센터간 이관 제외) 				
	C-1-2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접수 환가액(평균대비 실적평가 100%)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3년간의 기부식품등 접수 환가액을 비교 (지원센터간 이관 제외) 				
배점기준 (4점)	C-1-23-1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해당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부식품등 접수 환가액(총 장부가액) / 전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부식품등 접수 환가액 평균 * 110%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 (이하 사업실적 공통사항 : 사업장 신고 3년 미만 경우별도 산식적용) 				
	C-1-23-2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광역 (실적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최저목표) 산식: (20년대비 21년 비율(최대1점) + 21년대비 22년 비율(최대1점) + 22년 대비 23년 비율(최대1점)) / 3년 * 1점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 				
	C-1-23-3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해당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접수환가액 / 3년 전체 광역기부 식품등지원센터 접수환가액 평균 * 110%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 				
증빙자료	C-1-23-1 C-1-23-2 C-1-23-3	<p>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별 관련DATA 자료</p> <p>*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 기부물품 관리 → 기부물품 접수관리</p>				

구분	C-1. 사업성과 - 접수실적			광역	속 성	정량
				○	배 점	3점
지표명 (지표번호)	C-1-24. 접수 건수	C-1-24-1 C-1-24-2 C-1-24-3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접수 건수 ○ '20년 부터 '23년 기부식품등 접수 건수 증가율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접수 건수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접수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 평균)를 평가함 					
평가내용	C-1-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접수 건수(평균대비 실적평가 100% : 2023년)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기부식품등 접수 건수(지원센터간 이관 기부식품등은 불포함- 중복 실적 배제) 				
	C-1-2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부터 '23년도 기부식품등 접수 건수 증가율(목표부여 상향평가 100%)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한 20년 부터 '23년(매년 전년대비) 기부식품등 접수 건수의 증가율을 비교(타 이관 제외) 				
	C-1-2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접수 건수 (평균대비 실적평가 100%)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부식품등 접수건수의 3년간의 평균을 확인하여 평균 증가율 파악함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기부식품등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3년간 접수 건수를 비교(센터/타 이관 제외) 				
배점기준	C-1-24-1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해당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자체 기부식품등 접수 건수(총 장부 가액) / 전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기부식품등 접수 건수의 평균 * 110%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 (이하 사업실적 공통사항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3년 미만 경우별도 산식적용) 				
	C-1-24-2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광역 (실적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최저목표) 산식: (20년대비 21년 비율(최대1점) + 21년대비 22년 비율(최대1점) + 22년대비 23년 비율(최대1점)) / 3년 * 1점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 				
	C-1-24-3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해당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접수건수 / 3년 전체 광역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접수건수 평균 * 110%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 				
증빙자료	C-1-24-1 C-1-24-2 C-1-24-3	<p>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별 관련DATA 자료</p> <p>*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 기부물품 관리 → 기부물품 접수관리</p>				

구분	C-1. 사업성과 - 접수실적			광역	속 성	정량
				○	배 점	3점
지표명 (지표번호)	C-1-25. 기부자(처) 수	C-1-25-1 C-1-25-2 C-1-25-3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수 ○ '20년 부터 '23년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수 증가율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기부자(처)수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 평균)를 평가함 					
평가내용	C-1-2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기부자(처) 수(평균대비 실적평가 100% : 2023년) 【해설】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수를 파악하여 사업장의 안정적 활동수준을 파악함 				
	C-1-2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부터 '23년도 기부자(처) 수 증가율(목표부여 상향평가 100%)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20년 부터 '23년(매년 전년대비)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수 증가율을 비교 				
	C-1-2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평균 기부자(처) 수(평균대비 실적평가 100%)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3년간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수를 비교 				
배점기준	C-1-25-1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해당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사업장의 기부자(처) 수 / 전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부자(처)수 평균 * 110%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 (이하 사업실적 공통사항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3년 미만 경우별도 산식적용) 				
	C-1-25-2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광역 (실적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최저목표) 산식: (20년대비 21년 비율(최대1점) + 21년대비 22년 비율(최대1점) + 22년대비 23년 비율(최대1점)) / 3년 * 1점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 				
	C-1-25-3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해당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기부자(처)수 / 3년 전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기부자(처) 수 평균 * 110%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 				
증빙자료	C-1-25-1 C-1-25-2 C-1-2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별 관련DATA 자료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 기부물품 관리 → 기부물품 접수관리 				

구분	C-2. 사업성과 - 이관실적			광역	속 성	정량
				○	배 점	6점
지표명 (지표번호)	C-2-26. 이관 환가액	C-2-26-1 C-2-26-2 C-2-26-3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이관 환가액 ○ '20년 부터 '23년 기부식품등 이관 환가액 증가율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이관 환가액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이관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 평균)을 평가함 					
평가내용	C-2-2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이관 환가액 (평균대비 실적평가 100% : 2023년)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이관 환가액을 파악(자체, 기초사업장 구분) 				
	C-2-2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부터 '23년도 이관 환가액 증가율(목표부여 상향평가 100%)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20년 부터 '23년(매년 전년대비) 기부식품등 이관 환가액을 파악 				
	C-2-2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이관 환가액(평균대비 실적평가 100%)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3년간의 기부식품등 이관 환가액을 파악 				
배점기준	C-2-26-1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해당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이관 환가액 / 전체 광역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이관 환가액 평균 * 110%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 (이하 사업실적 공통사항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3년 미만 경우별도 산식적용) 				
	C-2-26-2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광역 (실적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최저목표) 산식: (20년대비 21년 비율(최대1점) + 21년대비 22년 비율(최대1점) + 22년대비 23년 비율(최대1점)) / 3년 * 1점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 				
	C-2-26-3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해당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이관 환가액 / 3년 전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이관 환가액 평균 * 110%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 				
증빙자료	C-2-26-1 C-2-26-2 C-2-26-3	<p>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사업장별 관련DATA 자료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 기부물품 관리 → 기부물품 제공현황</p>				

구분	C-2. 사업성과 - 이관실적			광역	속 성	정량
				○	배 점	4점
지표명 (지표번호)	C-2-27. 이관 건수	C-2-27-1 C-2-27-2 C-2-27-3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이관 건수 ○ '20년부터 '23년 기부식품등 이관 건수 증가율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이관 건수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이관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 평균)를 평가함 					
평가내용	C-2-2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이관 건수 (평균대비 실적평가 100% : 2023년)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당해연도 기부식품등 이관 건수를 파악 				
	C-2-2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부터 '23년도 이관 건수 증가율(목표부여 상향평가 100%)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20년 부터 '23년(매년 전년대비) 기부식품등 이관 건수를 파악 				
	C-2-2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이관 건수(평균대비 실적평가 100%) 【해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3년간의 기부식품등 이관 건수를 파악 				
배점기준	C-2-27-1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해당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이관 건수 / 전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이관 건수 평균 * 110%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 (이하 사업실적 공통사항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3년 미만 경우별도 산식적용) 				
	C-2-27-2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광역 (실적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최저목표) 산식: (20년대비 21년 비율(최대1점) + 21년대비 22년 비율(최대1점) + 22년대비 23년 비율(최대1점)) / 3년 * 1점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 				
	C-2-27-3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해당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이관 건수 / 3년 전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이관 건수 평균 * 110% ☞ 단, 평점이 100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기준 적용 				
증빙자료	C-2-27-1 C-2-27-2 C-2-27-3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별 관련 DATA 자료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 기부물품 관리 → 기부물품 제공현황				

구분	C-3. 사업성과 - 운영성과			광역	속 성	정성																																										
				○	배 점	5점																																										
지표명 (지표번호)	C-3-28. 운영지원 만족도	C-3-28-1	○ 기초푸드뱅크·마켓 만족도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원 및 협력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함 																																															
평가내용	C-3-28-1	<p>○ 관할 기초푸드뱅크·마켓 대상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만족도 평가 【해설】</p> <p>- 평가적용 기간 기준으로 기초푸드뱅크·마켓 담당자 1인이 지역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초사업장에 대한 지원활동과 노력정도에 대한 인지정도 및 체감만족도 수준을 5점 척도로 평가(5개 문항)</p>																																														
배점기준	C-3-28-1 (5점)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 지역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초사업장평가 운영지원 만족도(60%)</th> <th>매우 불만 족 (1점)</th> <th>불만 (2점)</th> <th>보통 (3점)</th> <th>만족 (4점)</th> <th>매우 만족 (5점)</th> </tr> </thead> <tbody> <tr> <td>문1. 정기적 지도점검 관리활동</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문2. 기초사업장 지원 노력(애로점, 문제점 등)</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문3.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직원 응대 친절성</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문4.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 관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문5.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전반적 만족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평점 =</td> <td colspan="5">기초사업장의 운영지원만족도 평균 5</td> </tr> </tbody> </table> <p>※ 상위 15% 하위 15% 점수 제외 소수점 이하 올림 처리</p>					해당 지역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초사업장평가 운영지원 만족도(60%)	매우 불만 족 (1점)	불만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	문1. 정기적 지도점검 관리활동						문2. 기초사업장 지원 노력(애로점, 문제점 등)						문3.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직원 응대 친절성						문4.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 관리						문5.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전반적 만족도						평점 =	기초사업장의 운영지원만족도 평균 5				
해당 지역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초사업장평가 운영지원 만족도(60%)	매우 불만 족 (1점)	불만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																																											
문1. 정기적 지도점검 관리활동																																																
문2. 기초사업장 지원 노력(애로점, 문제점 등)																																																
문3.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직원 응대 친절성																																																
문4.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 관리																																																
문5.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전반적 만족도																																																
평점 =	기초사업장의 운영지원만족도 평균 5																																															
증빙자료	C-3-28-1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구분	C-3. 사업성과 - 운영성과				광역	속 성	정성										
					○	배 점	3점										
지표명 (지표번호)	C-3-29. 행정지원 만족도	C-3-29-1	○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만족도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원 및 협력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함 																
평가내용	C-3-29-1	<p>○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한 업무지원 및 협력정도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적용 기간 기준으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담당자 2인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별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을 평가 															
배점기준	C-3-29-1 (3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매우 불만족 (1점)</th> <th>불만 (2점)</th> <th>보통 (3점)</th> <th>만족 (4점)</th> <th>매우 만족 (5점)</th> </tr> </thead> <tbody> <tr> <td>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업무지원 및 협력정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매우 불만족 (1점)	불만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업무지원 및 협력정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1점)	불만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업무지원 및 협력정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증빙자료	C-3-29-1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구분	C-3. 사업성과 - 운영성과			광역	속 성	정성
				○	배 점	2점
지표명 (지표번호)	C-3-30. 광역지원 센터 역할/임무	C-3-30-1	○ 교육운영 지원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교육운영 지원의 적정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C-3-30-1	<p>○ 교육운영 지원</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지역 내 기초푸드뱅크·마켓을 대상으로 교육 니즈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수교육 이외의 교육과정(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설하여 운영 하는가를 확인함 				
배점기준	C-3-30-1 (2점)	<p>(2점) 교육운영 지원이 양호한 경우</p> <p>(1점) 교육운영 지원이 약간 미흡한 경우</p> <p>(0점) 교육운영 지원이 매우 미흡한 경우</p>				
증빙자료	C-3-30-1	연간교육 계획서, 회의록, 교육실적, 워크숍 참석명단, 교육운영 프로그램 등				

4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지표 및 정의서

4.1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 평가현황표

영역	평가지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표수	정량	정성	가점
I.법적기준 /공통 (30점)+5	A-1. 시설/장비	지정 신고관리	(2)	1	1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6)	5	-	+1
		업무시설	(1)	-	2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4)	4	-	+1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2)	2	-	+1
	A-2. 인적자원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2)	8	-	+1
		교육이수	(2)	1		+1
		근무여건	(2)	6		
	소계			27	3	+5
II.운영성과 /공통 (40점)	B-1. 경영관리	사업계획 및 운영관리	(1)	-	4	
		사업장지원	(1)	-	3	
		운영위원회	(1)	-	3	
	B-2. 위생/안전	시설,장비,기자재 위생관리	(1)	-	2	
		식품등 위생관리(배분기한포함)	(2)	1	4	
		식품사고 관리(전국:안전관리포함)	(2)	-	3	
	B-3. 모집/이관	기부자(처) 관리	(1)	-	4	
		기부식품등 조정,이관	(1)	-	4	
	B-4. 행정관리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2)	2	2	
		행정문서 관리	(1)		3	
		정보공개 관리	(1)	2	-	
		예산관리	(1)	-	3	
	소계			5	35	-
III.사업성과 /공통 (30점)	C-1. 접수실적	환가액(직전3년 대비 최근3년 평균)	(1)	7	-	
		기부자(직전3년 대비 최근3년 평균)	(1)	3	-	
	C-2. 배분(이관)실적	환가액(직전3년 대비 최근3년 평균)	(1)	7	-	
		건수(직전3년 대비 최근3년 평균)	(1)	3	-	
	C-3. 운영성과	운영지원 만족도(광역→전국평가)	(1)	-	3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평가	(1)	-	2	
		전국지원센터 고유역할 및 활동	(4)	-	5	
소 계			20	10		
총 계			100점/+5점			

4.2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평가지표	배점		가감점	세부 지표명
			정량	정성		
A. 법적기준 (30점) +5	A-1. 시설/장비	1. 지정 신고관리	1			A-1-1-1 ○ 지정기준, 절차 등 준수
				1		A-1-1-2 ○ 사업장 변동(신규,당연전환) 관리
		2.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3		+1	A-1-2-1 ○ 보관창고 면적
						A-1-2-2 ○ 보관창고 보유
						A-1-2-3 ○ 보관창고 사용 현황
						A-1-2-4 ○ 보관창고 시건장치 구비
						A-1-2-5 ○ 창고 내 물품과 바닥과의 이격거리
						A-1-2-6 ○ 창고 내부 및 주위 위생/청결 유지
		3. 업무시설		2		A-1-3-1 ○ 업무(조정, 이관 등) 공간/시설 보유
		4.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0.5			A-1-4-1 ○ 운반차량 소유 명의
	2			+1	A-1-4-2 ○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1				A-1-4-3 ○ 차량 냉장/냉동 성능	
	0.5				A-1-4-4 ○ 차량 도색기준 준수	
	5.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1		+1	A-1-5-1 ○ 냉장/냉동시설 보유	
		1			A-1-5-2 ○ 냉장/냉동시설 성능	
	A-2. 인적자원	6. 전담인력 보유 및 관리	6		+1	A-1-6-1 ○ 전담 인력 보유
			2			A-1-6-2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유
		7. 교육이수	1			A-1-7-1 ○ 필수교육 수료
					+1	A-1-7-2 ○ 권장교육 수료
		8. 근무여건	3			A-1-8-1 ○ 전담인력 인건비 수준
3					A-1-8-2 ○ 근무 여건	
B. 운영성과 (40점)	B-1. 경영관리	9. 사업계획 및 운영관리		4		B-1-9-1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적절성
		10. 사업장지원		3		B-1-10-1 ○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성
		11. 운영위원회		3		B-1-11-1 ○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B-2. 위생/안전	12.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2		B-2-12-1 ○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13. 식품등 위생 관리(배분기한포함)		4		B-2-13-1 ○ 기부식품등 위생/안전 관리
			1			B-2-13-2 ○ 기부식품등 배분기한 준수
		14. 식품사고관리 (안전관리 포함)		1		B-2-14-1 ○ 식품사고 대처관리
	2			B-2-14-2 ○ 시설·설비 안전 관리		

대분류	중분류	평가지표	배점		가감점	평가내용	
			정량	정성			
B. 운영성과 (40점)	B-3. 모집/이관	15. 기부자(처) 관리		4		B-3-15-1 ○ 기부자(처) 관리의 적정성	
		16. 조정·이관 관리		4		B-3-16-1 ○ 이관 관리의 적정성 및 공정성	
	B-4. 행정관리	17.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 활용		2		B-4-17-1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관리의 적절성	
			2			B-4-17-2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능력	
		18. 행정문서 관리		3		B-4-18-1 ○ 행정문서 관리 적정성	
		19. 정보공개 관리	2			B-4-19-1 ○ 정보공개 관리 적정성	
		20. 예산관리		3		B-4-20-1 ○ 예산편성 및 관리의 적정성	
C. 사업성과 (30점)	C-1. 접수실적	21. 접수 환가액	7			C-1-21-1 ○ 직전 3년 평균 대비 최근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접수 환가액	
		22. 기부자(처) 수	3			C-1-22-1 ○ 직전 3년 평균 대비 최근 3년 평균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수	
	C-2. 이관실적	23. 이관 환가액	7			C-2-23-1 ○ 직전 3년 평균 대비 최근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이관 환가액	
		24. 이관 건수	3			C-2-24-1 ○ 직전 3년 평균 대비 최근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이관 건수	
	C-3. 운영성과	25. 운영지원 만족도		3		C-3-25-1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만족도	
		26.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평가		2		C-3-26-1 ○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평가	
		27. 전국지원센터 고유역할 및 활동		2			C-3-27-1 ○ 교육운영 관리
				1			C-3-27-2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구축·운영
			1			C-3-27-3 ○ 기부문화 확산 활동	
			1			C-3-27-4 ○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활동의 적정성	
총계			52점	48점	+5	100점/+5점	

4.3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 지표 정의서

구분	A-1. 법적기준 - 시설/장비		전국	속 성	정량	정성
			○	배 점	1점	1점
지표명 (지표번호)	A-1-1 지정 신고 관리	A-1-1-1 ○ 지정기준, 절차 등 준수 A-1-1-2 ○ 사업장 변동(신규, 당연전환) 관리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령」 제3조(신고), 법 제3조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시행령 제4조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시행규칙 제3조2(기부식품등 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사업장 변동(신규, 당연전환) 관리의 적정성 평가 					
평가내용	A-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절차 등 준수의 적정성 【해설】 -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시설·설비·인력에 관한 지정기준 충족 여부, 지정 절차 준수 여부 및 추가 조치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A-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변동(신규, 당연전환) 관리의 적정성 【해설】 - (신규사업장 지원)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통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보고된 신규사업자에 대한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계정 발급 등 신규사업자에 대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원이 적절했는가를 평가함 ※ 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규 사업자 신고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신규 사업자는 동 사실을 해당 지역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통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보고 【해설】 - (당연신고사업장 전환) 전년도(1월~12월) 모집·제공 실적을 확정(매년 2월말)후,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임의신고사업장 중 당연신고 대상 사업장을 파악,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통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절차에 따른 당연신고 전환대상 사업장에 대한 전환 관리를 평가함 ※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전년도(1월~12월) 모집·제공 실적을 확정(매년 2월말) 후 임의신고사업장 중 당연신고 대상 사업장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통보하고, 확정된 당연신고 대상 사업장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를 통해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배점기준	A-1-1-1 (1점)	(1점)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기준, 절차 등 준수 (0점)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기준, 절차 등 준수 미흡 시				
	A-1-1-2 (1점)	우수(1점) 사업장 파악 및 보고관리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통(0.5점) 사업장 파악 및 보고관리가 일부 누락되거나 소극적인 경우 미흡(0점) 사업장 파악 및 보고관리 활동이 미흡한 경우				
증빙자료 (예시)	A-1-1-1	신고확인증,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현판, 공문(보건복지부 지정 관련)				
	A-1-1-2	당연신고사업장 전환 관련 공문				

구분	A-1. 법적기준 - 시설/장비			전국	속 성	정량
				○	배 점	5점(가점 1점)
지표명 (지표번호)	A-1-2.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A-1-2-1 A-1-2-2 A-1-2-3 A-1-2-4 A-1-2-5 A-1-2-6	○ 보관창고 면적 ○ 보관창고 보유 ○ 보관창고 사용 현황 ○ 보관창고 시건장치 구비 ○ 보관창고 내 물품과 바닥과의 이격거리 ○ 보관창고 내부 및 주위 위생/청결 유지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보관창고의 보유 및 관리 상태를 평가함 					
평가내용	A-1-2-1	○ 보관창고 면적 【해설】 - 창고바닥 면적이 990㎡이상 인가를 확인함 -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 이외 설치 가능하며, 보관창고 면적은 건축물대장에 창고로 표기 및 면적 기재 - 복수의 보관창고를 사용하는 경우 전체면적의 합을 평가대상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A-1-2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의 모든 평가항목에 적용되는 대상임. - 불법 가건물은 보관창고로 인정하지 않음(조립식 창고 및 컨테이너 등 가건물 형태의 창고라도 건축물로 허가가 난 상황이면 인정함)				
	A-1-2-2	○ 보관창고 보유(소유/임차) 【해설】 - 보관창고는 사업장 명의의 소유 및 임차의 경우만 인정함(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갖춘 경우만 인정하며, 지자체 소유로 무상임대 형태의 경우 관련 공문을 보유해야 인정함)				
	A-1-2-3	○ 보관창고 사용 현황(단독 사용 및 겸용사용 시 구획 분리 여부) 【해설】 - 보관창고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관련 용도로만 사용 시 인정하고(개인 또는 타 사업관련 식품/물품보관 시 겸용으로 판단하되, 보관용기, 청소도구 및 관련 장비 보관은 인정함), 겸용사용(매장/사무실 및 개인/사업관련)시 식품 등 안전관리를 위해 구획을 분리해야 함(고정벽체, 파티션, 별도 출입구 설치 등)				
	A-1-2-4	○ 보관창고 시건장치 구비 【해설】 - 보관창고의 시건장치 설치를 통한 출입통제 관리가 가능해야 함				
	A-1-2-5	○ 보관창고 내 물품과 바닥과의 이격거리 【해설】 - 식품과 비식품은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교차오염 및 습기로 인한 변질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을 벽과 바닥으로부터 15cm(공산품은 10c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하여야 함. / 15cm에는 파렛트 자체 높이도 포함됨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및 기부생활용품 관리 요령 근거				
	A-1-2-6	○ 보관창고 내부 및 주위 위생/청결 유지 【해설】 - 보관창고 내 방습/방서 등에 필요한 환기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창고 주변에 오염 환경이나 기피시설이 없어야 함(보관창고의 반경 30m 이내에 쓰레기소각장, 쓰레기집하장,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하수처리장, 화장장, 축사 등의 시설 없어야함 * 주민기피시설법제도및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배점기준	A-1-2-1 (3점) (가점 1점)	(3점) 평가대상 기간(3년) 내 모두 기준 충족 시 (2점) 평가대상 기간 중 최근 2개 년 기준 충족 시 (1점) 평가대상 기간 중 최근 1개 년 기준 충족 시 (0점) 평가대상 기간(3년) 내 모두 기준 미 충족 시 (가점 1점) 기준 면적의 1.5배(1,485㎡) 이상 보유 시				
	A-1-2-2 ~ A-1-2-6 (2점)	A-2-2에서 A-2-6의 5개 지표 별 기준 충족 시 각 0.4점(총 2점)				
증빙자료 (예시)	A-1-2-1 ~ A-1-2-6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도면, 관련 증빙 공문, 화재보험증권 등으로 내용 확인				

구분	A-1. 법적기준 - 시설/장비			전국	속 성	정성
				○	배 점	2점
지표명 (지표번호)	A-1-3. 업무시설	A-1-3-1	○ 업무(조정, 배분 등) 수행 공간/시설 보유	평가 적용		당해연도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인력의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등 기본 업무수행 환경구비 정도를 평가함 					
평가내용	A-1-3-1	<p>○ 업무(조정·배분 등) 수행 공간/시설 보유</p> <p>【해설】</p> <p>-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본업무(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등)를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의 업무수행 공간 확보 및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PC, 프린터, 전화기, 복사기, 인터넷 등) 및 비품(용지, 전산 소모품 등)이 적정하게 확보되어 업무수행에 불편함이 없는가를 확인함</p>				
배점기준	A-1-3-1 (2점)	<p>우수(2점) 업무수행에 적합하게 공간이나 시설을 갖추고 있다</p> <p>보통(1점) 공간이나 시설이 업무수행에 약간 불편하다</p> <p>미흡(0점) 공간이나 시설이 업무수행에 매우 불편하다</p>				
증빙자료 (예시)	A-1-3-1	<p>소유 - 건물등기부등본, 임차 - 임대차계약서, 정부(중앙,지방) 및 공공기관 등의 무상임대 경우 관련 공문 또는 증빙서류 대체가능, 현장 확인(사진)</p>				

구분	A-1. 법적기준 - 시설/장비			전국	속 성	정량
				○	배 점	4점(가점 1점)
지표명 (지표번호)	A-1-4.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A-1-4-1 A-1-4-2 A-1-4-3 A-1-4-4	○ 운반차량 소유 명의 ○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 차량 냉장/냉동 성능 ○ 차량 도색기준 준수	평가 적용		평가 시점
지표근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를 평가함					
평가내용	A-1-4-1	○ 운반차량 소유 명의 【해설】 - 운반차량이 제공사업장 운영법인이나 제공사업주 명의인가를 확인하며, 지자체 소유로 무상임대 형태의 경우 관련 공문을 보유해야 인정함 ※ 운반차량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법인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명의일 것 법인 또는 제공사업주 명의를 가진 경우 A-1-4 지표는 0점 처리				
	A-1-4-1	○ 운반차량 보유 【해설】 -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식육 등의 액체(피 등)가 흘러나올 경우 이를 밖으로 배출하여 냄새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가를 확인함 - 상기 해당사항 여부를 파악하고, 복수 차량으로 가점을 획득한 경우 모든 해당 차량이 A-1-4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의 모든 평가항목에 적용되는 대상임 ※ 운반차량 -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함 - 적재고는 식육 액체(피 등)가 흘러나올 경우 이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냄새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A-1-4-2	○ 차량 냉동/냉장 성능 【해설】 - 운반차량이 성능 기준(냉동은 -18℃ 이하, 냉장은 10℃ 이하)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시간(10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온도 확인), 별도의 온도 확인 장치가 없는 구형 차량의 경우는 온도계 구비도 확인함. 단,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 미 설치경우도 인정됨 ※ -냉동은 -18℃ 이하, 냉장은 10℃ 이하 동영상으로 증빙(차량 확인 가능)				
	A-1-4-3	○ 차량 도색기준 준수 【해설】 - 운반차량이 도색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전·후·좌·우 등 4면 모두 준수해야 함) ※ 운반차량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통일성과 대국민 홍보를 위해 푸드뱅크·마켓 심벌마크, 대표번호 등 연락처, 캐릭터 등이 삽입된 내용으로 도색해야 함 * 일부 도색, 랩핑이 어려운 모서리, 전면 마크만 제외 인정				
배점기준	A-1-4-1 (0.5점)	(0.5점) 기준에 부합 시 (0점) 기준에 미 부합 시				
	A-1-4-2 (2점/가점 1점)	(2점) 3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 시 (1점) 3가지 기준 중 한 가지 미 부합 시 (0점) 3가지 기준 모두 미 부합 시 (가점1점) 운반차량이 2대 이상이며, 모두 3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 시				
	A-1-4-3 (1점)	(1점) 기준에 부합 시 (0점) 기준에 미 부합 시				
	A-1-4-4 (0.5점)	(0.5점) 기준에 부합 시 (0점) 기준에 미 부합 시				
증빙자료 (예시)	A-1-4-1	차량등록증, 관련 증빙 공문 등				
	A-1-4-2	현장 확인(사진, 동영상)				
	A-1-4-3	차량 냉동/냉장 성능 현장 확인				
	A-1-4-4	차량 확인(사진, 동영상)				

구분	A-1. 법적기준 - 시설/장비		전국	속 성	정량	
			○	배 점	2점(가점 1점)	
지표명 (지표번호)	A-1-5. 냉장/냉동 시설 보유 및 관리	A-1-5-1	○ 냉장/냉동시설 보유		평가 적용	평가시점
		A-1-5-2	○ 냉장/냉동시설 성능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냉장 및 냉동고 보유 및 기능정상 여부를 평가함 					
평가내용	A-1-5-1	<p>○ 냉장/냉동시설 보유</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0 L 이상의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구비하고 있는가를 확인함 복수의 냉장/냉동시설을 보유한 경우 전체용량의 합을 평가대상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A-1-5-1 ~ A-1-5-2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의 모든 평가항목에 적용되는 대상임 해당 냉장/냉동시설 내부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외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유로 인정되지 않음(타 사업 및 개인 물품 보관 등) <p>※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함</p>				
	A-1-5-2	<p>○ 냉장/냉동시설 성능</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장/냉동시설 성능 기준(냉동 -18℃ 이하, 냉장 10℃ 이하)에 부합하는지를 확인 (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시간(10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온도 확인) 				
배점기준	A-1-5-1 (1점) (가점 1점)	<p>(1점) 기준 이상 냉장 또는 냉동시설 보유 시</p> <p>(0점) 기준 이상 냉장 또는 냉동시설 모두 미보유 시</p> <p>(가점 1점) 냉장/냉동시설의 합계 용량이 12,000 L 이상 보유시</p>				
	A-1-5-2 (1점)	<p>(1점) 보유 냉장/냉동시설 성능 모두 기준에 부합 시</p> <p>(0점) 보유 냉장/냉동시설 성능 중 하나 이상 기준에 미 부합 시</p> <p>※ 복수의 시설 또는 보유용량으로 가점이 적용된 시설은 모두 평가에 포함됨</p>				
증빙자료 (예시)	A-1-5-1 A-1-5-2	비품대장, 구매확인서(모델명, 규격 등 사양표기), 양도증명서, 관련 증빙 자료 등				

구분	A-1. 법적기준 - 시설/장비		전국	속 성	정량	
			○	배 점	8점(가점 1점)	
지표명 (지표번호)	A-2-6. 전담인력 보유 및 관리	A-2-6-1	○ 전담 인력 보유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A-2-6-2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유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인력 확보 및 관리를 평가함 					
평가내용	A-2-6-1	<p>○ 전담 인력 보유</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인력은 정규직 또는 계약직 모두 포함하며 예산항목상 기부식품등 사업에 대한 인건비 확보가 되어 실 지급 되는지를 확인(계약직 경우 업무분장표에 명시된 업무를 주 40시간 이상 근무 & 4대 보험 가입 & 1년 이상 계약인 경우), 운영자가 전담총괄 또는 운영주체 내 관리자 등 직원이 겸직형태로 전담 시는 미인정됨 전담인력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인력들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업무 수행비율의 합이 100% 이상이어야 인정됨(업무분장표 상의 업무 비율)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 공문에 역할 및 인건비가 포함되어야 하고, 보조금을 안 받는 경우에는 총회자료집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인정됨 				
	A-2-6-2	<p>○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유</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 인력별 재직기간 중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가를 확인함(중앙물류센터 인력에만 적용됨) ※ 재직(근무)기간 중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유란 근무기간이 2021. 12.1. ~ 2023. 6.30. 까지 근무 때에는 21년, 22년, 23년 총 3개를 보유하는 것이 아닌 2021.12.1. ~ 2022.11.30./1개, 2022.12.1. ~ 2023.6.30. /1개 총 2개를 보유 때에는 인정 재직기간 중 보유하면 인정함. 				
배점기준	A-2-6-1 (6점) (가점 1점)	<p>(6점) 3개년 모두 전담인력 8인 보유 시</p> <p>(4점) 2개년 전담인력 8인 보유 시</p> <p>(2점) 1개년 전담인력 8인 보유 시</p> <p>(1점) 3개년 모두 전담인력 8인 미보유 시</p> <p>(가점 1점) 1개년 이상 전담인력 10인 이상 보유 시</p>				
	A-2-6-2 (2점)	<p>(2점) 중앙물류센터 종사자 모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유 시</p> <p>(0점) 중앙물류센터 종사자 중 1인 이상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비 보유(미 확인 포함) 시</p>				
증빙자료 (예시)	A-2-6-1	인건비 지급명세서, 지자체 공문, 4대보험 납부 내역, 계약서, 업무분장표, 직원 인터뷰,				
	A-2-6-2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구분	A-2. 법적기준 - 인적자원		전국	속 성	정량	
			○	배 점	1점(가점 1점)	
지표명 (지표번호)	A-2-7. 교육이수	A-2-7-1	○ 필수교육 수료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A-2-7-2	○ 권장교육 수료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인력 필수교육 수료 및 권장교육 수료를 평가함 					
평가내용	A-2-7-1	<p>○ 필수교육 수료</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전담인력의 3개년간 필수교육(식품위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교육, 개인정보교육, 자살예방교육) 수료여부를 평가함 종사인력의 변동에 관계없이 인원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A-2-7-2	<p>○ 권장교육 수료</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장교육은 업무수행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직무능력 향상 및 정보화 교육을 포함하여 외부전문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초빙 교육 및 외부 세미나/워크숍 참석 포함) 수료증, 수료확인서, 확인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확인함 				
배점기준	A-2-7-1 (1점)	<p>(1점) 평가 적용 기간('21~'23년) 동안 모든 종사자가 전체 필수교육을 수료 시</p> <p>(0점) 위 기준 이외 해당 시</p>				
	A-2-7-2 (가점 1점)	<p>(가점 1점) 평가 적용 기간('21~'23년) 동안 모든 종사자가 권장교육을 1개 이상 수료 시</p>				
증빙자료 (예시)	A-2-7-1 A-2-7-2	교육훈련 수료증, 수료 확인증, 수료대장, 확인 공문 등				

구분	A-2. 법적기준 - 인적자원		전국	속 성	정량	
			○	배 점	6점	
지표명 (지표번호)	A-2-8. 근무여건	A-2-8-1	○ 전담인력 인건비 수준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A-2-8-2	○ 근무 여건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인력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근무환경을 평가함 					
평가내용	A-2-8-1	○ 전담직원 인건비 수준 【해설】 - 연도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자료를 통해 해당 연도별 인건비 지급 자료를 확인함(전담인력은 정규직 또는 계약직 형태를 모두 포함하고, 사업장의 예산부족 등으로 인한 인건비와 4대보험이 별도 재원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인정함)				
	A-2-8-2	○ 근무 여건(복리후생제도, 대체인력 확보 등) 【해설】 - 전담인력 대상 복리후생 제도를 1개 이상 운영하고 있고, 전담인력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통해 전담직원의 휴가, 경조사 등의 상황발생 시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가를(업무분장표 등 확인) 확인함 - 인센티브, 복지포인트, 외부수상 추천, 시간외 수당 추가지급, 직급수당, 장기근속수당, 문화프로그램 등의 관련 제도나 프로그램 운영을 확인함 - 단순 회식은 포함되지 않고, 워크숍이나 외부교육은 제외됨(권장교육 수료에서 평가됨)				
배점기준	A-2-8-1 (3점)	(3점) 3개년도 전담인력 모두 가이드라인 준수 시 (2점) 2개년도 전담직원 모두 가이드라인 준수 또는 3개년도 모두 가이드라인 90% 이상 준수 시 (1점) 1개년도 전담직원 모두 가이드라인 준수 또는 3개년도 모두 가이드라인 80% 이상 준수 시 (0점) 위 기준 이외 해당 시				
	A-2-8-2 (3점)	(3점) 평가적용 기간 내 1개 이상 복리후생 제도나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 시 (1.5점) 평가적용 기간 내 1개 이상 복리후생 제도나 프로그램 중 한 가지를 운영하지 않을 시 (0점) 위 기준 이외 해당 시				
증빙자료 (예시)	A-2-8-3 A-2-8-4	교육훈련 수료증, 수료 확인증, 수료대장, 확인 공문, 직원 급여(인건비) 명세서, 급여대장, 복리후생제도 규정이나 지침, 지원 내역서, 직원 인터뷰 등 등				

구분	B-1. 운영성과 - 경영관리			전국	속 성	정성
				○	배 점	4점
지표명 (지표번호)	B-1-9. 사업계획 및 운영 관리	B-1-9-1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관리 적절성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붙임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계획서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계획수립 여부 및 실행 활동과 성과점검 개선관리 활동을 평가함 					
평가내용	B-1-9-1	<p>○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관리 적절성 【해설】 아래의 3가지 현황을 확인함</p> <p>① 사업계획 수립 여부 및 구체성 :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사업계획서 별도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서 내용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핵심적 역할과 활동, 기능 등에 대해 구체성, 타당성, 실행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함(운영법인의 '총회 자료집' 등에 일부 포함 계획서는 미인정)</p> <p>예시 1) 기관소개 : 설립목적, 주요사업, 조직체계등 2) 사업의 필요성(사업의 당위성 및 운영의지 기술) 3) 전국지역 및 사업현황 분석(환경분석, 사업특징, 실적현황 등) 4)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핵심 업무/기능별 해당사업 부문별 계획 - 기부식품등의 전국적인 모집 및 조정, 배분 - 사업운영 인력의 운용계획(업무분장 포함)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종사자 교육훈련 - 중앙물류센터 운영관리 계획 -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구축 및 운영계획 - 전국 사업장 네트워크 교류 및 활성화 계획 - 기부식품 이용자 보호 상해보험 가입 - 전국단위 운영개선 방안 - 실태조사, 통계관리(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연계) - 운영위원회 구성 및 계획 - 기부문화 활성화 운영계획 - 실적성과 목표계획</p> <p>5) 사업예산 계획 6) 기타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및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p> <p>※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중 정부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의 사전 논의 또는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함</p> <p>② 사업계획의 적절한 실행 :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실행(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함</p> <p>③ 사업성과 점검 및 환류 : 사업(운영)계획에 내용은 사업진척 및 성과관리 등을 통해 점검/관리하고 있는가를 확인함(연도별 사업계획 내 추진활동, 실적성과, 목표계획 등 확인)</p>				
배점기준	B-1-9-1 (4점)	<p>우수(4점) 사업(운영)계획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도록 수립되어 있고, 년 1회 이상 사업기간 중 진도 및 성과관리를 양호하게 하고 있음(결산관리 제외)</p> <p>양호(3점) 사업(운영)계획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도록 수립되어 있고, 년 1회 이상 사업기간 중 진도 및 성과관리를 하고 있으나 미흡함(결산관리 제외)</p> <p>보통(2점) 사업(운영)계획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도록 수립되어 있으나, 사업기간 중 진도 및 성과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결산관리 제외)</p> <p>개선(1점) 사업(운영)계획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도록 수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년 1회 이상 사업기간 중 진도 및 성과관리를 하고 있음(결산관리 제외)</p> <p>미흡(0점) 사업(운영)계획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도록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기간 중 진도 및 성과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결산관리 제외)</p>				
증빙자료 (예시)	B-1-9-1	연도별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구분	B-1. 운영성과 - 경영관리			전국	속 성	정성
				○	배 점	3점
지표명 (지표번호)	B-1-10. 사업장 지원	B-1-10-1	○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성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단위 기부식품 제공사업장(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기초푸드뱅크·마켓)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업무 활동 적정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B-1-10-1	<p>○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의 적정성</p> <p>【해설】 아래의 3가지 현황을 확인함</p> <p>①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원 교류협력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의 정기적, 부정기적 회의체 운영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와 확대를 위한 주요 이슈사항의 파악 및 개선책 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함</p> <p>② 기초푸드뱅크·마켓 활동지원 :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의 역량강화, 운영관리 내실화, 사업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한 기초푸드뱅크·마켓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사업 지원 방안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함</p> <p>※ 권역별 워크숍(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건의사항 수렴 및 사업협력체계 구축)</p> <p>③ 사업장 지원관리 : 기초푸드뱅크·마켓의 운영활동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한 지원/관리 체계(인센티브, 하위사업장 지원, 우수사례 공유 등) 마련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사업 운영 및 관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지를 확인함</p>				
배점기준	B-1-10-1 (3점)	<p>우수(3점)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사업장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관리 활동이 매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p> <p>양호(2점)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사업장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관리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p> <p>보통(1점)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사업장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관리 활동이 보통 수준으로 일부 개선할 점이 있음</p> <p>미흡(0점)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사업장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관리 활동이 미흡 또는 저조함</p>				
증빙자료 (예시)	B-1-10-1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초푸드뱅크·마켓과의 연계활동실적 자료 및 관련자료(회의자료, 문서, 의견수렴 및 환류관련 문서 등)				

구분	B-1. 운영성과 - 경영관리			전국	속 성	정성
				○	배 점	3점
지표명 (지표번호)	B-1-11. 운영 위원회	B-1-11-1	○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관리 적정성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운영관리 활동의 적정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B-1-11-1	<p>○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관리 적정성</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내실화, 운영 투명성 확보, 교육 등을 위한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함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내실화, 운영 투명성 확보, 교육 등을 위한 운영(자문)위원회가 아래에 예시된 바와 같이 적절하게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가를 평가함 <p>※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은 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 내실화, 운영 투명성 확보,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3인 이상(23년 5인구성)의 구성시 인정되며,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명칭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과 관련되어 운영될 경우 인정되며, 시설 등의 운영주체의 다른 사업의 운영위원회와 중복으로 구성되는 것은 인정되나, 별도의 안건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문서(결과보고서 등)를 제시해야 함 <p>※ 운영(자문)위원회 활동 및 관리 내용 예시</p> <p>①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및 운영 여부 확인</p> <p>② 운영(자문)위원회 지침 및 기준 마련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 지침이나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를 운영위원회 규정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함</p> <p>③ 운영(자문)위원회의 활동 내용 : 운영(자문)위원회가 운영(자문)위원회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해당되는 사항이 회의 내용이나 안건(사업계획, 예산계획, 교육계획 등)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운영회의록 및 관련자료 등을 통해 확인함</p> <p>④ 운영(자문)위원회 결과의 활용 : 운영(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제 사업에 반영되었거나 반영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함</p>				
배점기준	B-1-11-1 (3점)	<p>우수(3점)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규정이 잘 마련되어 있으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p> <p>양호(2점)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규정이 적정하며,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p> <p>보통(1점)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규정 마련 및 활동 중 일부가 미흡함</p> <p>미흡(0점)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규정 마련 및 활동이 상당히 미흡함</p>				
증빙자료 (예시)	B-1-11-1	운영위원회 명단, 운영위원회 규정, 운영위원회 운영(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회의록)				

구분	B-2. 운영성과 - 위생/안전			전국	속 성	정성
				○	배 점	2점
지표명 (지표번호)	B-2-12.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B-2-12-1	○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위생점검관리, 기부식품등 보관관리 적정성, 배분기한 준수를 평가함 					
평가내용	B-2-12-1	<p>○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p> <p>【해설】</p> <p>- 기부식품등 제공사업과 관련된 보관창고, 매장, 운반차량, 냉동·냉장시설 등 시설, 장비, 기자재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실제 현장에서 관련 시설, 장비, 기자재 등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함(먼지, 환기여부, 냄새, 곰팡이 등 육안으로 확인하여 평가하고, 광역자치단체 위생 점검 시 규정위반 개선이행 조치 사례, 행정조치 사항 유무 확인)</p>				
배점기준 (7점)	B-2-12-1 (2점)	<p>우수(2점)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관리와 위생청결 관리 상태가 매우 좋음</p> <p>보통(1점) 점검관리 체계가 있으나 일부 개선이 필요 또는 청결수준은 보통 수준임</p> <p>미흡(0점) 점검관리 체계 미흡 및 청결수준이 불량함</p>				
증빙자료 (예시)	B-2-12-1	<p>시설창고 점검표, 점검일지, 현장 사진, 방역업체(세스코 등)의 소독증명서 및 서비스 결과보고서 등</p>				

구분	B-2. 운영성과 - 위생/안전			전국	속 성	정성	정량
				○	배 점	4점	1점
지표명 (지표번호)	B-2-13 식품등 위생관리	B-2-13-1	○ 기부식품등 위생/안전 관리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B-2-13-2	○ 기부식품등 배분기한 준수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위생점검관리, 기부식품등 보관관리 적정성, 배분기한 준수를 평가함 						
평가내용	B-2-13-1	<p>○ 기부식품등 위생/안전 관리</p> <p>【해설】</p> <p>- 기부식품등 보관이 식품유형별 또는 기부식품등 이용기한(유통기한 임박 제품 구분 등)이 적절하게 보관/관리되고 있고, 창고보관 상품의 진열이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함(보관중인 식품 3개와 생활용품 2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표시관리 현황을 확인함)</p>					
	B-2-13-2	<p>○ 기부식품등 배분기한 준수</p> <p>【해설】</p> <p>- 보관중인 식품/생활용품의 배분기한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함(보관 중인 식품 3개와 생활용품 2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배분기한 준수 및 변색/부패 여부 등을 확인함)</p>					
배점기준 (7점)	B-2-13-1 (4점)	<p>우수(4점) 기부식품등 위생/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짐</p> <p>보통(2점) 기부식품등 위생/안전관리가 일부 미흡함(식품/생활용품 중 1개)</p> <p>미흡(0점) 기부식품등 위생/안전관리가 미흡함(식품/생활용품 중 2개 이상)</p>					
	B-2-13-2 (1점)	<p>(1점) 임의 추출 식품/생활용품 모두 배분기한 준수 시</p> <p>(0점) 임의 추출 식품/생활용품 중 1개라도 배분기한 경과 시 또는 부패/상함/변색 경우</p>					
증빙자료 (예시)	B-2-13-1	현장사진, 관련서류, 직원인터뷰					
	B-2-13-2	표본 확인					

구분	B-2. 운영성과 - 위생/안전			전국	속 성	정성
				○	배 점	1점
지표명 (지표번호)	B-2-14. 식품사고 관리	B-2-14-1	○ 식품사고 대처관리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현장기준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보호 상해보험 가입 및 식품사고 비상상황 관리체계 수준을 평가함 					
평가내용	B-2-14-1	<p>○ 식품사고 대처관리</p> <p>【해설】 아래의 2가지 현황을 확인함</p> <p>① 이용자 보호 상해보험 가입 및 관리 : 기부식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관련 보험가입증서를 제공사업장(광역, 기초)에게 적절하게 제공 및 안내하고 있는가를 확인함</p> <p>※ 법률 제3조1항,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p> <p>② 식품사고 비상연락망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식품사고 발생 시 지침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응방법(지침, 매뉴얼 등)을 갖추고 있고, 관련된 비상연락망(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이 비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함(실제사례가 있을 경우 지침에 부합한 대응 여부 확인)</p>				
배점기준	B-2-14-1 (1점)	<p>우수(1점)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관리와 식품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음</p> <p>개선(0점)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관리와 식품사고 발생 시 대처관리가 미흡함</p>				
증빙자료 (예시)	B-2-14-1	사고발생 보고 자료(공문 등), 비상연락망, 매뉴얼, 보험가입 증서				

구분	B-2. 운영성과 - 위생/안전			전국	속 성	정성												
				○	배 점	2점												
지표명 (지표번호)	B-2-14. 식품사고 관리	B-2-14-2	○ 시설·설비 안전관리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현장기준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설비 및 근로자 보호 관리체계 수준을 평가함 																	
평가내용	B-2-14-2	<p>○ 시설·설비 안전관리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물류센터의 근로자 및 기부식품등의 보호를 위한 시설·설비 관리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며,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노력도 등을 평가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작업내용</th> <th>위치</th> <th>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th> </tr> </thead> <tbody> <tr> <td>기부식품 입고 출고</td> <td>물품 상하차</td> <td>작업장 내·외</td> <td>- 지게차 운전 시 시야 불량, 운전미숙, 과속으로 인한 사고</td> </tr> <tr> <td>기부식품 보관</td> <td>적재(랙)</td> <td>작업장 내</td> <td>- 보관랙, 파레트 등 무너짐으로 인한 사고</td> </tr> </tbody> </table>					구분	작업내용	위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기부식품 입고 출고	물품 상하차	작업장 내·외	- 지게차 운전 시 시야 불량, 운전미숙, 과속으로 인한 사고	기부식품 보관	적재(랙)	작업장 내	- 보관랙, 파레트 등 무너짐으로 인한 사고
구분	작업내용	위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기부식품 입고 출고	물품 상하차	작업장 내·외	- 지게차 운전 시 시야 불량, 운전미숙, 과속으로 인한 사고															
기부식품 보관	적재(랙)	작업장 내	- 보관랙, 파레트 등 무너짐으로 인한 사고															
배점기준	B-2-14-2 (2점)	<p>우수(2점) 근로자 및 기부식품등의 시설·설비 관리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관리 방안과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p> <p>보통(1점) 근로자 및 기부식품등의 시설·설비 관리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관리 및 활동 사항에 일부 개선이 필요함</p> <p>미흡(0점) 근로자 및 기부식품등의 시설·설비 관리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관리 및 활동 사항이 미흡함</p>																
증빙자료 (예시)	B-2-14-2	위험성 평가 계획, 안전관리일지, 장비 점검리스트 등																

구분	B-3. 운영성과 - 모집/이관			전국	속 성	정성
				○	배 점	4점
지표명 (지표번호)	B-3-15. 기부자(처) 관리	B-3-15-1	○ 기부자(처) 관리의 적정성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 수급과 양질의 배분물품 활동을 위한 기부처(자) 발굴 계획 및 활동수준을 평가함 					
평가내용	B-3-15-1	<p>○ 기부자(처) 관리의 적정성</p> <p>【해설】</p> <p>- 아래의 3가지 현황을 확인함</p> <p>① 관리계획서 보유 : 기부자(처) 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가를 확인함</p> <p>② 관리계획 실행 : 기부자(처) 관리계획에 근거한 관리의 실행여부 및 정도와 실제 실행사례(기부협약, 감사서신, 시상 및 수상추천 등)를 확인함</p> <p>③ 의견수렴 제도 : 기부자(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나 절차가 있는가를 확인함</p>				
배점기준	B-3-15-1 (4점)	<p>우수(4점) 관리계획서 보유, 관리계획 실행, 의견수렴 제도가 모두 양호한 경우</p> <p>보통(2점) 관리계획서 보유, 관리계획 실행, 의견수렴 제도 중 1가지 이상이 미흡한 경우</p> <p>미흡(0점) 관리계획서 보유, 관리계획 실행, 의견수렴 제도 모두 미흡한 경우</p>				
증빙자료	B-3-15-1	해당 실적자료확인(문서, 사진 등)				

구분	B-3. 운영성과 - 모집/이관			전국	속 성	정성																				
				○	배 점	4점																				
지표명 (지표번호)	B-3-16. 기부식품등 조정· 이관 관리	B-3-16-1	○ 이관 관리의 적정성 및 공정성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의 전국지역 조정·이관의 적정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B-3-16-1	<p>○ 이관 관리의 적정성 및 공정성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및 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2가지 현황을 확인함 <p>① 조정/배분 기준이행 적정성 : 조정/배분 기준과 운영계획에 근거한 실제 실행여부 및 정도를 확인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조정배분 기준 사업내용</th> <th>배분규모</th> <th>배분주기</th> </tr> </thead> <tbody> <tr> <td>즉시 배분</td> <td>기부물품 중 유통기한 30일 이내의 식품 등으로 신선도 등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미검수 하에 인근 지역 광역(사업자포함) 즉시배분</td> <td>연간 광역 배분 계획규모 준용</td> <td>연중 수시</td> </tr> <tr> <td>정기 배분</td> <td>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중앙물류센터에서 전국의 푸드마켓(또는 이동 마켓 등 프로그램 사업)의 물품 수급조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배분</td> <td>-</td> <td>2개월 마다</td> </tr> <tr> <td>지정 기탁배분</td> <td>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물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취지에 따라 배분</td> <td>-</td> <td>연중 수시</td> </tr> <tr> <td>긴급 배분</td> <td>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저소득층에게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 *연간 광역 배분계획 규모에서 제외</td> <td>별도</td> <td></td> </tr> </tbody> </table> <p>② 조정/배분 점검 및 개선 : 전국적 조정/배분 업무의 효율적 실행 및 관리를 위해 운영위 점검 등을 통해 조정/배분의 효율화와 균형화가 관리 및 개선되고 있는지를 평가함</p> <p>※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및 사업자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수립</p>					구분	조정배분 기준 사업내용	배분규모	배분주기	즉시 배분	기부물품 중 유통기한 30일 이내의 식품 등으로 신선도 등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미검수 하에 인근 지역 광역(사업자포함) 즉시배분	연간 광역 배분 계획규모 준용	연중 수시	정기 배분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중앙물류센터에서 전국의 푸드마켓(또는 이동 마켓 등 프로그램 사업)의 물품 수급조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배분	-	2개월 마다	지정 기탁배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물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취지에 따라 배분	-	연중 수시	긴급 배분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저소득층에게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 *연간 광역 배분계획 규모에서 제외	별도	
구분	조정배분 기준 사업내용	배분규모	배분주기																							
즉시 배분	기부물품 중 유통기한 30일 이내의 식품 등으로 신선도 등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미검수 하에 인근 지역 광역(사업자포함) 즉시배분	연간 광역 배분 계획규모 준용	연중 수시																							
정기 배분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중앙물류센터에서 전국의 푸드마켓(또는 이동 마켓 등 프로그램 사업)의 물품 수급조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배분	-	2개월 마다																							
지정 기탁배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물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취지에 따라 배분	-	연중 수시																							
긴급 배분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저소득층에게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 *연간 광역 배분계획 규모에서 제외	별도																								
배점기준	B-3-16-1 (4점)	<p>우수(4점) 이관 관리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양호한 경우</p> <p>보통(2점) 이관 관리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일부 미흡한 경우</p> <p>미흡(0점) 이관 관리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매우 미흡한 경우</p>																								
증빙자료 (예시)	B-3-16-1	해당 실적자료확인(문서, 사진 등)																								

구분	B-4. 운영성과 - 행정관리			전국	속 성	정성	정량
				○	배 점	2점	2점
지표명 (지표번호)	B-4-17. 기부물품 관리시스템 (FMS) 활용	B-4-17-1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활용 및 관리 적절성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B-4-17-2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능력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및 관리수준을 평가함 						
평가내용	B-4-17-1	<p>○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및 관리 적절성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및 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2가지 현황을 확인함 ①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발급 영수증 증빙관리 : FMS를 활용한 영수증 증빙을 적절하게 발급 및 관리(기부식품등 접수 및 배분, 이용자 정보입력 등)하고 있는지를 확인함(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 영수증 미발급 경우에는 FMS 접수 기부내역 관리시 인정) 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과 실제 접수 및 배분현황 비교(샘플 3개를 선정하여 평가) 					
	B-4-17-2	<p>○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능력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직원이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입력 자료/정보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고 오류가 없는지를 직접 시연 및 인터뷰를 통해 확인함(접수, 배분, 기부자, 이용자 각 1개씩 총 4개 샘플을 선정하여 평가)하여 평가함 					
배점기준	B-4-17-1 (2점)	<p>우수(2점)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발급 영수증 증빙관리가 우수하고 장부가액 발행을 준수함</p> <p>보통(1점)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발급 영수증 증빙관리나 장부가액 발행 준수 중 한 가지가 미흡함</p> <p>미흡(0점)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발급 영수증 증빙관리와 장부가액 발행 준수가 모두 미흡함</p>					
	B-4-17-2 (2점)	<p>(2점) 예시상황에 대한 4개 샘플추출 확인 및 인터뷰를 통한 직무이해 적합 시</p> <p>(0점) 잘 모르거나 틀리는 경우(1개라도 접수 및 배분, 기부자 및 이용자 정보누락 또는 오류 시)</p>					
증빙자료 (예시)	B-4-17-1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증빙영수증,(전표, 거래명세서) 등록관리 자료 현황					
	B-4-17-2	직원 인터뷰 및 4개 현장 샘플 확인					

구분	B-4. 운영성과 - 행정관리			전국	속 성	정성
				○	배 점	3점
지표명 (지표번호)	B-4-18. 행정문서 관리	B-4-18-1	○ 행정문서 관리 적정성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행정문서 작성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B-4-18-1	<p>○ 행정문서 관리 적정성</p> <p>【해설】</p> <p>- 행정문서 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3가지 항목을 확인함</p> <p>① 문서관리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모집 및 제공에 관한 내용이 문서유형별로 모두 작성 및 보관·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함(기부식품 접수문서대장, 기부식품 배분문서내역, 기부자 관리내역, 이용자 문서 수발신 대장 등 보유해야하는 문서들의 과일철이 되어 있는가?, 문서가 연도별로 잘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는가?)</p> <p>② 관련 문서철 보관관리 : 관련 장부 등을 보관하는 장소 또는 가구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주요 개인정보자료 등의 비밀 보안이 필요한 문서 등을 위한 시건장치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함.</p> <p>③ 전산 문서에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문서들은 보안(비밀번호, 폐기 등)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함.</p>				
배점기준	B-4-18-1 (3점)	<p>우수(3점) 행정문서의 관리의 적정성이 우수함</p> <p>양호(2점) 행정문서의 관리의 적정성이 양호함</p> <p>보통(1점) 행정문서의 관리의 적정성이 보통임</p> <p>개선(0점) 행정문서의 관리의 적정성이 매우 미흡함</p>				
증빙자료 (예시)	B-4-18-1	증빙문서(인수확인서,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명세서 등), 기부자/이용자 관리 내역, 일반 사업문서 등				

구분	B-4. 운영성과 - 행정관리			전국	속 성	정량
				○	배 점	2점
지표명 (지표번호)	B-4-19. 정보공개 관리	B-4-19-1	○ 정보공개 관리 적정성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관련 정보 공개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B-4-19-1	<p>○ 정보공개 관리 적정성</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공개 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2가지 현황을 확인함 <p>① 정보제공 관리 : 기부식품 희망기업 또는 개인발굴을 위한 전국 대표전화 (1688-1377) 및 전국푸드뱅크(홈페이지, 02-713-1377)를 통해 적절히 안내되고 있는가를 확인함</p> <p>② 정보공개 관리 : 기부식품등 사업 및 실적정보(접수, 배분, 기부자, 이용자), 생산 물배상 책임보험 등을 홈페이지나 자료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고 있는가를 확인함</p> <p>※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개(사업자 명칭 과 사업장 소재지, 기부식품등의 종류, 품목, 수량, 가액 및 모집일자, 기부식품등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의 종류, 품목, 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제공 및 이용자 유형(개인, 단체 구분)</p> <p>※ 기부식품등 이용자 보호: 푸드뱅크(마켓) 관련 기부식품 취식 및 생필품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내용을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www.foodbank1377.org)</p>				
배점기준	B-4-19-1 (2점)	<p>우수(2점) 정보제공과 정보공개 적정성 우수</p> <p>보통(1점) 정보제공과 정보공개 적정성 양호</p> <p>개선(0점) 정보제공과 정보공개 적정성 미흡</p>				
증빙자료 (예시)	B-4-19-1	전화 모니터링(대표전화,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관련 자료 공개내용				

구분	B-4. 운영성과 - 행정관리			전국	속 성	정성
				○	배 점	3점
지표명 (지표번호)	B-4-20. 예산관리	B-4-20-1	○ 예산편성 및 관리의 적정성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 내 예산 편성 및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B-4-20-1	<p>○ 예산편성 및 관리의 적정성</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편성 및 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3가지 현황을 확인함 <p>① 예산편성 및 소요예산 적정 : 사업계획서 내 예산편성 항목 및 내용이 적정한지를 평가함으로써 전국 기부식품등 사업의 내실화와 운영활성화 정도를 확인함</p> <p>② 사업비 및 운영비 적정 : 사업비의 편성내용(인건비, 사업비, 기타 등) 비율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함</p> <p>③ 사업비 관리내용 적정 : 예산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규정한 기준에 부합되게 회계관리 되고 있고, 관련 영수증 및 증빙자료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함</p> <p>※ 보조금등의 회계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p>				
배점기준	B-4-20-1 (3점)	<p>우수(3점) 사업계획서의 예산편성 항목 및 내용과 증빙관리가 매우 적절함</p> <p>양호(2점) 사업계획서의 예산편성 항목 및 내용과 증빙관리가 비교적 적절함</p> <p>보통(1점) 사업계획서의 예산편성 항목 및 내용과 증빙관리가 일부 미흡함</p> <p>미흡(0점) 사업계획서의 예산편성 항목 및 내용과 증빙관리가 매우 부적절함</p>				
증빙자료 (예시)	B-4-20-1	사업계획서, 예산결산서, 증비서류철				

구분	C-1. 사업성과 - 접수실적			전국	속 성	정량
				○	배 점	7점
지표명 (지표번호)	C-1-21. 접수 환가액	C-1-21-1	○ 직전 3년 평균 대비 최근 3년 평균 기부식 품등 접수 환가액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자체접수 실적금액(3년 평균 대비)을 평가함 					
평가내용	C-1-21-1	<p>○ 직전 3년 평균 대비 최근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접수 환가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 평가 3개년('18~'20년) 평균 접수 환가액 대비 평가대상기간('21~'23년)의 접수 환가액 평균을 비교 평가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3년간의 기부 식품등 접수량을 비교 				
배점기준	C-1-21-1 (7점)	$\text{평점} = \frac{\text{최근 3년간('18~'20년) 해당 기부식품등 접수 환가액 평균}}{\text{직전 평가 3개년('21~'23년) 기부식품등 접수 환가액 평균}} \times 110\%$ <p>득점 = 7 × 평점</p> <p>☞ 단, 득점이 7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 기준 적용</p>				
증빙자료 (예시)	C-1-21-1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부식품등관리시스템(FMS) 데이터 활용 * 기부식품등관리시스템(FMS) → 기부물품 관리 → 기부물품 접수현황				

구분	C-1. 사업성과 - 접수실적			전국	속 성	정량
				○	배 점	3점
지표명 (지표번호)	C-1-22. 기부자(처) 수	C-1-22-1	○ 직전 3년 평균 대비 최근 3년 평균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수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자체접수 기부자(처) 수(3년 평균 대비)을 평가함 					
평가내용	C-1-22-1	<p>○ 직전 3년 평균 대비 최근 3년 평균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 평가 3개년('18~'20년) 평균 기부자(처)수 대비 평가대상기간('21~'23년)의 기부자(처) 수 평균을 비교 평가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3년간의 기부 식품등 기부자(처) 수 비교 				
배점기준	C-1-22-1 (3점)	$\text{평점} = \frac{\text{최근 3년간('21~'23년) 해당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수 평균}}{\text{직전 평가 3개년('18~'20년)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수 평균}} * 110\%$ <p>득점 = 3 × 평점</p> <p>☞ 단, 배점이 3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 기준 적용</p>				
증빙자료 (예시)	C-1-22-1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데이터 활용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 기부물품 관리 → 기부물품 접수현황				

구분	C-2. 사업성과 - 이관실적			전국	속 성	정량
				○	배 점	7점
지표명 (지표번호)	C-2-23. 이관 환가액	C-2-23-1	○ 직전 3년 평균 대비 최근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이관 환가액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 기부식품등 이관 환가액(3년 평균 대비)을 평가함					
평가내용	C-2-23-1	<p>○ 직전 3년 평균 대비 최근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이관 환가액</p> <p>- 직전 평가 3개년('18~'21년) 평균 이관 환가액 대비 평가대상기간('21~'23년)의 이관 환가액 평균을 비교 평가</p> <p>【해설】</p> <p>-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3년간의 기부 식품등 이관 환가액 비교</p>				
배점기준	C-2-23-1 (7점)	<p>최근 3년간('21~'23년) 해당 기부식품등 이관 환가액 평 평 점 균 = 직전 평가 3개년('18~'20년) 기부식품등 이관 환가액 평 균 * 110%</p> <p>득점 = 7 × 평점</p> <p>☞ 단, 배점이 7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 기준 적용</p>				
증빙자료 (예시)	C-2-23-1	<p>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데이터 활용</p> <p>*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 기부물품 관리 → 기부물품 이관현황</p>				

구분	C-2. 사업성과 - 이관실적			전국	속 성	정량
				○	배 점	3점
지표명 (지표번호)	C-2-24. 이관 건수	C-2-24-1	○ 직전 3년 평균 대비 최근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이관 건수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이관 건수(3년 평균 대비)를 평가함 					
평가내용	C-2-24-1	<p>○ 직전 3년 평균 대비 최근 3년 평균 기부식품등 이관 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 평가 3개년('18~'20년) 평균 이관 건수 대비 평가대상기간('21~'23년)의 이관 건수 평균을 비교 평가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3년간의 기부 식품등 이관 건수 비교 				
배점기준	C-2-24-1 (3점)	$\text{평점} = \frac{\text{최근 3년간('21~'23년) 해당 기부식품등 이관 건수 평균}}{\text{직전 평가 3개년('18~'20년) 기부식품등 이관 건수 평균}} * 110\%$ <p>득점 = 3 × 평점</p> <p>☞ 단, 배점이 3점을 초과할 경우라도 해당 지표의 가중치 배점 기준 적용</p>				
증빙자료 (예시)	C-2-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데이터 활용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 기부물품 관리 → 기부물품 이관현황 				

구분	C-3. 사업성과 - 운영성과			전국	속 성	정성																																															
				○	배 점	3점																																															
지표명 (지표번호)	C-3-25. 운영지원 만족도	C-3-25-1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만족도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기부식품등 지원센터에 대한 광역기부식품등 지원센터의 운영지원 만족도를 평가함 																																																				
평가내용	C-3-25-1	<p>○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평가</p> <p>【해설】</p> <p>- 평가적용 기간 기준으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시행했던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한 업무운영 지원활동과 노력정도에 대하여 만족도 수준을 5점 척도로 평가(3개 문항)</p>																																																			
배점기준	C-3-25-1 (3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운영지원 만족도</th> <th colspan="5">평가점수(5점 척도)</th> </tr> <tr> <th>매우 불만 (1)</th> <th>불만 (2)</th> <th>보통 (3)</th> <th>만족 (4)</th> <th>매우 만족 (5)</th> </tr> </thead> <tbody> <tr> <td>문1. 정기적 네트워크 활동</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문2.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 관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문3. 지원활동 전반적 만족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평점 =</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17개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운영지원만족도 평균</td> </tr> <tr> <td></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득점 = 3 × 평점</td> <td colspan="5"></td> </tr> </tbody> </table> <p>※ 상위 15% 하위 15% 점수 제외 소수점 이하 올림 처리</p>					운영지원 만족도	평가점수(5점 척도)					매우 불만 (1)	불만 (2)	보통 (3)	만족 (4)	매우 만족 (5)	문1. 정기적 네트워크 활동						문2.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 관리						문3. 지원활동 전반적 만족도						평점 =	17개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운영지원만족도 평균						5					득점 = 3 × 평점					
운영지원 만족도	평가점수(5점 척도)																																																				
	매우 불만 (1)	불만 (2)	보통 (3)	만족 (4)	매우 만족 (5)																																																
문1. 정기적 네트워크 활동																																																					
문2.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 관리																																																					
문3. 지원활동 전반적 만족도																																																					
평점 =	17개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운영지원만족도 평균																																																				
	5																																																				
득점 = 3 × 평점																																																					
증빙자료 (예시)	C-3-25-1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정보																																																			

구분	C-3. 사업성과 - 운영성과			전국	속 성	정성																	
				○	배 점	2점																	
지표명 (지표번호)	C-3-26.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평가	C-3-26-1	○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평가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를 평가함 																						
평가내용	C-3-26-1	<p>○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평가 3개년 평균</p> <p>【해설】</p> <p>- 평가적용 기간 기준으로 체감만족도 수준을 평가(별도 Sheet 활용 만족도 평가)</p>																					
배점기준	C-3-26-1 (2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고객만족도</th> <th colspan="5">만족도 점수</th> </tr> <tr> <th>75점 미만</th> <th>75점 이상</th> <th>80점 이상</th> <th>85점 이상</th> <th>90점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평가 3개년 평균</td> <td>0</td> <td>0.5</td> <td>1</td> <td>1.5</td> <td>2</td> </tr> </tbody> </table>					고객만족도	만족도 점수					75점 미만	75점 이상	80점 이상	85점 이상	90점 이상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평가 3개년 평균	0	0.5	1	1.5	2
고객만족도	만족도 점수																						
	75점 미만	75점 이상	80점 이상	85점 이상	90점 이상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평가 3개년 평균	0	0.5	1	1.5	2																		
증빙자료 (예시)	C-3-26-1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정보																					

구분	C-3. 사업성과 - 운영성과			전국	속 성	정성
					○	배 점
지표명 (지표번호)	C-3-27. 고유역할 및 활동	C-3-27-1	○ 교육운영 관리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주관 교육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C-3-27-1	<p>○ (인적역량 교육계획) 연간 교육 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교육의 질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가?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3조2에 따라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간 업무협력을 통해 연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 지원센터간 업무분장을 통해 교육의 중복, 예산낭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교육의 질적 효율성을 제고하는지를 평가함 ※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종사자가 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17개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교육일정 등을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www.foodbank1377.org)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 등 권장 <p>○ (교육 주관 운영)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주관 교육(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종사자, 푸드뱅크, 민관합동 워크숍, 권역별 워크숍, 기타 사업운영 필요인정 교육)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주관 교육사항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함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교육: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안내, 식품위생, 자살예방* 및 역량강화교육 * 소외계층 자살위험 예방위한 필수교육 추가,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PDF활용 및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교육 포함) ☞ 푸드뱅크 민관합동 워크숍: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무원 대상 사업안내 및 의견수렴(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기초푸드뱅크·마켓) 및 지자체 담당자 사업협력 체계 구축 ☞ 권역별 워크숍: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건의사항 수렴 및 사업협력 체계 구축 ☞ 기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p>○ (교육 개선 활동)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교육효과 및 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교육효과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지를 평가함(ex.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등) 				
배점기준	C-3-27-1 (2점)	우수(2점) 교육계획, 교육운영, 개선활동 우수 양호(1.5점) 교육계획, 교육운영, 개선활동 양호 보통(1점) 교육계획, 교육운영, 개선활동 보통 미흡(0점) 교육계획, 교육운영, 개선활동 미흡				
증빙자료 (예시)	C-3-27-1	연간교육 계획서, 회의록, 교육실적, 워크숍 참석명단, 교육운영 프로그램				

구분	C-3. 사업성과 - 운영성과			전국	속 성	정성
				○	배 점	1점
지표명 (지표번호)	C-3-27. 고유역할 및 활동	C-3-27-2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구축·운영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의 안정적 운용 및 관리 정도 평가 					
평가내용	C-3-27-2	<p>○ (시스템 정보관리)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용 및 유지 관리되고 있는가?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업무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 관리되며 유지보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함 * 전산장애, 입력/조회, 자료보안, 업데이트 등 <p>○ (시스템 개선관리)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개선(성능, 기능 등)을 위해 시스템 점검 및 개선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가?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업무 및 기능개선을 위해 사용자 및 제공사업장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 점검 및 개선관리 노력도를 평가함 <p>※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능개선 및 만족도 조사 등</p>				
배점기준	C-3-27-2 (1점)	<p>우수(1점)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의 안정적 운용 및 관리 정도 우수</p> <p>양호(0.75점)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의 안정적 운용 및 관리 정도 양호</p> <p>보통(0.5점)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의 안정적 운용 및 관리 정도 보통</p> <p>미흡(0점)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의 안정적 운용 및 관리 정도 미흡</p>				
증빙자료 (예시)	C-3-27-2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구분	C-3. 사업성과 - 운영성과			전국	속 성	정성
				○	배 점	1점
지표명 (지표번호)	C-3-27. 고유역할 및 활동	C-3-27-3	○ 기부문화 확산 활동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과 활동의 적정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C-3-27-3	<p>○ (기부문화 확산 활동) 기부문화 활성화 및 인식확대를 위한 사업 활동 및 현장 실천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p> <p>【해설】</p> <p>- 계획된 사업활동(홍보광고, 캠페인, 이벤트, 팸플릿, 전단지 등)의 적극 이행과 사업참여의 확대 및 시너지(성과) 확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연계를 통해 실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함</p> <p>☞ 정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 시설단체 등과의 기부식품 문화확산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p>				
배점기준	C-3-27-3 (1점)	<p>우수(1점) 기부문화 활성화 및 인식확대를 위한 사업 활동이 우수</p> <p>양호(0.75점) 기부문화 활성화 및 인식확대를 위한 사업 활동이 양호</p> <p>보통(0.5점) 기부문화 활성화 및 인식확대를 위한 사업 활동이 보통</p> <p>미흡(0점) 기부문화 활성화 및 인식확대를 위한 사업 활동이 미흡</p>				
증빙자료	C-3-27-3	기부문화 활성화 및 인식 확대를 위한 사업 활동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구분	C-3. 사업성과 - 운영성과			전국	속 성	정성
					○	배 점
지표명 (지표번호)	C-3-27. 고유역할 및 활동	C-3-27-4	○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활동의 적정성		평가 적용	2021.1.1.~ 2023.12.31.
지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1년, `22년, `23년) 					
지표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관련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활동 활동의 적정성을 평가 					
평가내용	C-3-27-4	<p>○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있는가? 【해설】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의 노력도를 평가함</p> <p>○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활동은 적정한가? 【해설】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연구 활동의 노력도를 평가함</p>				
배점기준	C-3-27-4 (1점)	<p>우수(1점)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활동 우수</p> <p>양호(0.75점)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활동 양호</p> <p>보통(0.5점)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활동 미흡</p> <p>개선(0점)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활동 매우 미흡</p>				
증빙자료	C-3-27-4	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2024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지표 및 정의서

2024. 12.

보건복지부 ·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